



김해 시

공보는 공문서로서의 효력을 갖는다.



제 457호 2020. 02. 21(금)

선 람	기 관 의 장
--------	------------------

조 례

제 1479호	김해시 소셜네트워크서비스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	25933
제 1480호	김해시 일자리 창출 지원 조례	25934
제 1481호	김해시 비정규직 노동자 지원센터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25936
제 1482호	김해시 읍·면·동·리 명칭구역획정 및 읍·면·동장 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	25939
제 1483호	김해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	25942
제 1484호	김해시 교통영향평가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25955
제 1485호	김해시 경관 조례 일부개정조례	25957
제 1486호	김해시 임산부 전용주차구역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25959
제 1487호	김해시 교육발전협의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	25960
제 1488호	김해시 미래인재장학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25961

고 시

제2020-27호	김해도시계획시설(구산제4공원) 조성계획 결정(변경) 및 지형도면 고시	25963
제2020-28호	도로구간 변경(중점변경) 고시	25966
제2020-30호	김해도시관리계획(시설:대학) 결정(변경) · 조성계획 결정(변경) · 지형도면 및 도시계획시설사업 실시계획인가(변경) 고시	25967
제2020-33호	김해도시관리계획(구산지구 지구단위계획) 결정(변경) 및 지형도면 고시	25975
제2020-34호	김해도시관리계획(안막지구 지구단위계획) 결정(변경) 및 지형도면 고시	25978
제2020-35호	김해도시계획시설(울하체육공원) 조성계획 결정(변경) 및 지형도면 고시	25980
제2020-36호	김해울하2지구 택지개발사업 지구지정 변경(4차), 개발계획 변경(7차) 및 실시계획 변경(6차)승인에 따른 지형도면 고시	25984
제2020-37호	김해 북봉지구 도시개발사업 개발계획(변경)수립 및 실시계획(변경)인가 고시	25997
제2020-38호	김해도시계획시설(완충녹지:3-2)사업 시행자(변경) 지정 및 실시계획 변경인가 고시	26000

공 고

제2020-692호	김해도시계획시설(여래공원) 조성계획 결정(변경)(안) 열람 공고	26002
제2020-728호	도로명주소 변경 의견수렴 공고	26009

회 람										
--------	--	--	--	--	--	--	--	--	--	--

발행 : 김 해 시 편집 : 공 보 관 (330-3011, 행정 3011)

제225회 김해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의결된 김해시 소셜네트워크서비스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를 이에 공포한다.

김해시장 허성곤

2020년 2월 21일

김해시 조례 제1479호

김해시 소셜네트워크서비스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

김해시 소셜네트워크서비스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2호 중 “위하여”를 “위한”으로 한다.

제5조제2항 단서 중 “「민원사무 처리에 관한 법률」”을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로 하고, 같은 조 제3항제8호를 제9호로 하며, 같은 항에 제8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8. 성역할 고정관념 및 편견, 성차별적 요소 등을 포함하는 내용의 경우

제8조의 제목 “(SNS 서포터즈의 운영)”을 “(SNS 서포터즈의 운영 등)”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5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⑤ 시장은 SNS 서포터즈에게 원고료 등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급할 수 있다.

제9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9조(경비의 지원) ① 시장은 시정홍보에 필요한 콘텐츠를 제작하거나 시정소식 공유 및 홍보활동 등을 한 사람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소속 공무원에게는 지급하지 아니한다.

② 시장은 SNS 서포터즈의 전문성 향상을 위하여 교육, 연수 및 취재 등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제10조를 삭제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제안이유

- 시정홍보에 필요한 활동 및 다양한 콘텐츠를 제공한 사람에 대하여 보상할 수 있는 근거조항을 마련함으로써 시민과 소통을 강화하고 시정홍보에 만전을 기하고자 함

◇ 주요내용

- 시정홍보에 필요한 콘텐츠를 제작하거나 시정소식 공유 및 홍보활동 등을 한 사람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경비를 지급(제9조)

제225회 김해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의결된 김해시 일자리 창출 지원 조례를 이에 공포한다.

김해시장 허성곤

2020년 2월 21일

김해시 조례 제1480호

김해시 일자리 창출 지원 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일자리 창출과 고용의 질 개선을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지역경제 활성화와 시민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일자리 창출”이란 미취업자의 능력과 적성에 맞는 다양한 일자리를 개발하거나 취업을 지원하는 것을 말한다.
2. “취업취약계층”이란 「고용정책 기본법」 제6조제1항제6호에 따른 노동시장의 통상적인 조건에서 취업이 특히 곤란한 사람과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권자 등을 말한다.

제3조(시장의 책무) 김해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지역 실정에 맞는 일자리 정책 방향을 수립하고, 효과적인 일자리 창출을 위하여 행정적·재정적 지원 대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제4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일자리 창출 지원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5조(계획의 수립·시행) ① 시장은 일자리 창출 촉진을 위한 종합계획(이하 “종합계획”이라 한다)을 4년마다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② 종합계획을 수립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반영하여야 한다.

1. 일자리 창출을 위한 정책의 목표와 방향
2. 일자리 창출 사업 및 취업 지원 사업에 관한 사항
3. 일자리 창출을 위한 지원 및 홍보에 관한 사항
4. 일자리 창출 관련 교육 훈련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시장이 일자리 창출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시장은 종합계획을 토대로 매년 시행계획을 수립하고 시행하여야 한다.

제6조(일자리 창출 사업) 시장은 일자리 창출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하거나 지원할 수 있다.

1. 국내·외 기업유치와 지역산업 육성을 통한 일자리 창출 사업
2. 창업기업 육성 및 지원을 통한 일자리 창출 사업
3. 취업취약계층을 위한 일자리 창출 사업
4. 사회적기업, 마을기업, 협동조합, 자활기업 등 사회적경제 일자리 창출 사업
5. 관내 기업, 대학, 연구기관 등과 상호 협력하는 일자리 창출 사업
6. 그 밖에 일자리 창출에 필요한 사업

제7조(취업지원 사업) 시장은 기업의 인력난을 해소하고, 취업 희망자를 지원하기 위해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하거나 지원할 수 있다.

1. 일자리지원센터 운영 등 구인·구직 취업지원서비스 제공 사업
2. 직업능력개발 훈련 및 전문인력 양성 사업
3. 채용박람회, 취업설명회 등 정보제공을 통한 맞춤형 취업지원 사업
4. 그 밖에 취업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

제8조(일자리 우수기업 인증) ① 시장은 일자리 창출 및 고용안정에 우수한 실적이 있는 기업을 발굴하여 일자리 우수기업으로 인증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인증 기업 수를 연간 10개 이하로 하고, 상황에 따라 조정할 수 있다.

③ 시장은 인증된 일자리 우수기업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지원할 수 있다.

1. 일자리 우수기업 인증서 및 현판 교부
2. 기업홍보
3. 「지방세기본법」 제140조에 따른 세무 조사의 일정기간 유예

4. 근로환경개선, 근로자 복지향상과 관련된 필요 경비의 지원

5.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④ 시장은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 등으로 일자리 우수기업으로 인증된 사실이 확인되면 그 인증을 취소할 수 있다. 이 경우 시장은 제3항에 따른 지원의 환수에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⑤ 일자리 우수기업 인증의 평가기준 및 절차 등 세부적인 사항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

제9조(일자리위원회 설치 및 기능) 시장은 일자리 창출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김해시 일자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1. 종합계획 및 시행계획의 수립·시행에 관한 사항

2. 일자리 창출 사업 및 취업지원 사업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일자리 창출 지원을 위하여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10조(일자리 영향평가) 시장은 김해시(이하 “시”라 한다)의 각종 정책이 고용 및 일자리 증감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평가하여 그 결과를 정책의 수립 및 시행에 반영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11조(관계기관·단체와의 협력 등) ① 시장은 일자리 창출 지원서비스 제공 및 고용촉진을 위하여 중앙행정기관이나 다른 지방자치단체 및 일자리 관련 기관·단체 등과 협력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기관 또는 단체 등과 일자리 창출을 위한 협약 등을 체결할 수 있다.

③ 시장은 투자유치사업, 공공기관 유치 등으로 창출되는 일자리에 지역주민이 우선 채용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12조(업무의 위탁) ① 시장은 이 조례에 따른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일자리 관련 업무를 수행하는 관련 기관, 비영리단체 또는 시 출자·출연 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업무를 위탁하는 경우에는 「김해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 등에 따른다.

제13조(행정·재정적 지원) ① 시장은 일자리를 창출하거나 고용안정 및 고용확대에 기여한 기관이나 단체 등에 대하여 행정·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지원방법 및 지원절차,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김해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제14조(포상) 시장은 일자리 창출, 고용안정 및 고용확대에 기여한 개인 및 기관·단체 등에 대하여 「김해시 포상 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

제15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김해시 기업 활동 지원 및 우수 기업인 예우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의2를 삭제한다.

◇ 제안이유

○ 다양한 계층의 일자리 창출과 취업지원 사업 등에 대한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여 시민에게 사회참여와 근로 소득의 기회를 제공함으로써 삶의 질을 향상하고,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함

◇ 주요내용

○ 목적 및 정의에 관한 사항(제1조, 제2조)

○ 일자리 창출 종합계획의 수립 및 시행에 관한 사항(제5조)

○ 일자리 창출 및 취업지원 사업에 관한 사항(제6조, 제7조)

○ 일자리 우수기업 인증에 관한 사항(제8조)

○ 업무의 위탁 및 행정·재정적 지원에 관한 사항(제11조, 제12조)

제225회 김해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의결된 김해시 비정규직 노동자 지원센터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를 이에 공포한다.

김해시장 허성곤

2020년 2월 21일

김해시 조례 제1481호

김해시 비정규직 노동자 지원센터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비정규직 노동자에 대한 노동기본권과 관련한 고충상담 등으로 근로조건 향상을 도모하고, 근로 의욕 고취를 위한 교육사업 등을 위하여 김해시 비정규직 노동자 지원센터의 설립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비정규직 노동자”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1.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와 제2호에 해당하는 근로자
2. 「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5호에 해당하는 근로자
3. 그 밖에 고용계약, 노동시간, 노동제공 방식, 노동제공 장소, 부가급여 등에 있어 불안정적 고용형태인 임시직, 일용직, 용역·도급 노동자

제3조(지원센터의 설립) 김해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김해시 비정규직 노동자 지원센터(이하 “지원센터”라 한다)를 설립할 수 있다.

제4조(사업) 지원센터는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한다.

1. 비정규직 노동자 실태조사 및 연구
2. 비정규직 노동자에 대한 법률지원 및 상담
3. 비정규직 노동자의 고용촉진을 위한 취업정보 제공과 무료 직업소개 등
4. 비정규직 노동자를 위한 취업교육
5. 그 밖에 비정규직 노동자의 복리향상을 위하여 시장이 인정하는 사업

제5조(위탁운영 등) ① 시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제4조의 사업을 원활하게 수행할 수 있다고 판단되는 비영리법인 및 그 산하단체 또는 전문가 단체에 지원센터의 운영을 위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위탁할 때에는 그 기간을 2년으로 한다.

③ 위탁 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의 김해시 비정규직 노동자 지원센터 운영수탁 신청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④ 위탁계약의 체결은 별지 제2호서식의 김해시 비정규직 노동자 지원센터 운영위탁 계약서에 따른다.

⑤ 시장은 지원센터를 운영 위탁한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제6조(수탁자의 선정) 지원센터 운영을 위한 수탁자를 선정할 때에는 「김해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에 따른다.

제7조(수탁기간의 연장) ① 위탁기간은 1회에 한하여 연장할 수 있으며, 연장 받고자 할 때에는 수탁기간 만료일 90일 전까지 별지 제3호서식의 김해시 비정규직 노동자 지원센터 운영수탁 연장신청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수탁기간 연장 신청을 받은 때에는 이를 검토하여 그 결과를 수탁기간 만료일 30일 전까지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③ 위탁기간을 연장할 경우에는 제6조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제8조(위탁계약의 해지) ① 시장은 수탁자에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을 경우에는 위탁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1. 제9조, 제10조 및 위탁계약 내용을 위반하였을 때
2. 제4조의 사업 이외의 사업을 하였을 때
3. 그 밖에 위탁계약을 유지하는 것이 공익상 부적합하다고 시장이 인정할 때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위탁계약을 해지하고자 할 때에는 그 사유 및 해지일자를 기재하여 해지 예정일 30일 전까지 서면으로 수탁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이 경우 「김해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 제10조제3항을 준용한다.

제9조(수탁자의 의무) ① 수탁자는 시장에게 매분기 말일까지 지원센터 운영에 관한 보고를 하여야 하고, 매년 회계연도 종료 후 1개월 이내에 예산운영 상황에 대하여 보고하여야 한다.

② 수탁자는 위탁계약이 취소·해지되거나 위탁기간이 만료되고 재계약이 없을 경우에는 김해시에서 지원한 시설과 장비 및 비품 등 물품 전부를 반환하여야 한다.

③ 수탁자는 위탁사무를 처리함에 있어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의무를 다하여야 하며, 시장의 승인 없이 지원센터 운영을 재위탁할 수 없다.

제10조(감독) ① 시장은 필요한 경우 관계 공무원으로 하여금 수탁자의 운영 상황을 조사하거나 장부 또는 그 밖의 서류를 검사하게 할 수 있으며, 수탁자는 이에 응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보고를 받거나 조사 또는 검사 결과 시정하여야 할 사항이 있는 경우에는 필요한 조치를 명하여야 한다.

제11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지 제1호서식]

김해시 비정규직 노동자 지원센터 운영수탁 신청서

성명(법인, 단체명)		(전화번호 :)			
소재지					
대표자	성명	생년월일	성별	남,여	
	주소				
「김해시 비정규직 노동자 지원센터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5조제3항에 따라 김해시 비정규직 노동자 지원센터의 운영을 위탁받고자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법인, 단체명) :			(서명또는날인)		
김해시장 귀하					
첨부서류	1. 법인 등기부등본(기타 단체인 경우에는 증명서류 사본) 1부. 2. 법인(기타 단체인 경우에는 대표자) 인감증명서 1통. 3. 사업계획서 1부.				

[별지 제2호서식]

김해시 비정규직 노동자 지원센터 운영위탁 계약서

김해시 비정규직 노동자 지원센터의 운영위탁에 관한 계약을 체결함에 있어 위탁자인 김해시장(이하 “갑”이라 한다)과 수탁자 000(이하 “을”이라 한다)은 다음과 같이 운영위탁 계약을 체결한다.

제1조(운영위탁) “갑”은 김해시 비정규직 노동자 지원센터의 운영을 “을”에게 위탁하며, 위탁기간 중 “을”에게 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한다.

제2조(조례준수) “을”은 「김해시 비정규직 노동자 지원센터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를 준수하여야 한다.

제3조(위탁기간) 위탁기간은 ○○년 ○○월 ○○일부터 ○○년 ○○월 ○○일까지 2년으로 한다.

제4조(수탁조건) “을”은 수탁사무를 원활하게 추진할 수 있는 사무실과 사무집기를 갖추어야 하며, 기존의 시설물을 사용하고자 할 경우에는 “갑”과 협의한다.

제5조(수탁자의 의무) “을”은 김해시 비정규직 노동자 지원센터를 운영함에 있어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성실히 수행한다.

1.
2.
3.

제6조(계약해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갑”은 이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1. “을”이 계약 후 2개월이 경과하여도 사업을 착수하지 아니한 때
 2. 위탁기간 만료일까지 사업목적을 달성할 수 없다고 “갑”이 인정한 때
 3. “을”이 제5조의 사업을 타인에게 양도한 때
 4. 조례 제8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을 때
- ② 제1항에 따라 계약을 해지하는 경우 “을”에게 손해가 있을지라도 “갑”은 이를 배상하지 아니한다.
③ “을”이 해지를 요구할 때에는 90일 전에 “갑”에게 그 사유를 통보하여야 하며, 지급 받은 운영비(이자 포함) 중 이미 적정한 용도로 사용된 것을 제외하고 나머지는 10일 이내에 반납한다.

제7조(손해배상) ① “을”은 이 계약에 정한 의무를 위반하여 “갑”에게 손해를 끼친 경우 그 배상책임을 진다.

제8조(계약연장) 계약기간이 만료된 경우에는 “을”은 “갑”에게 1회에 한하여 연장 요청할 수 있으며, “갑”은 연장여부를 검토하여 “을”에게 통보한다.

제9조(사업계획 제출) “을”은 다음 연도 사업계획서를 회계연도 개시 90일 전까지 “갑”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10조(운영실적 보고 등) “을”은 “갑”에게 운영실적을 분기별로 보고하여야 하며, 매년 예산운영 상황에 대하여 회계연도 종료 후 1개월 이내에 보고하여야 한다.

제11조(계약의 해석 등) ① 본 계약에 대한 해석상 이의가 있을 때에는 “갑”과 “을”이 합의하여 처리하며, 다툼이 있는 경우 「민법」, 관련 법령 및 조례에 따른다.

② 법률상 분쟁이 발생하였을 경우 그 관할법원은 창원지방법원으로 한다.

위와 같이 본 계약이 체결되었음을 증명하기 위하여 계약서 2통을 작성하고, “갑”과 “을”은 서명·날인하여 각각 1통씩 보관한다.

년 월 일

위탁자(갑) : 김해시
대표자 시장 ○○○ (인)

수탁자(을) : ○○○
대표자 ○○○ (인)

제225회 김해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의결된 김해시 읍·면·동·리 명칭구역획정 및 읍·면·동장 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를 이에 공포한다.

김해시장 허성곤

2020년 2월 21일

김해시 조례 제1482호

김해시 읍·면·동·리 명칭구역획정 및 읍·면·동장 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

김해시 읍·면·동·리 명칭구역획정 및 읍·면·동장 정수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1, 2를 별지와 같이 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표 1]

읍·면·리의 명칭과 구역획정 및 읍·면장 정수

읍·면 명칭	읍·면장 정수	리명칭	구역
진영읍	1	우동리	우동리 일원
		하계리	하계리 일원
		방동리	방동리 일원
		사산리	사산리 일원
		좌곶리	좌곶리 일원
		진영리	진영리 일원
		여래리	여래리 일원
		본산리	본산리 일원
		신용리	신용리 일원
		설창리	설창리 일원
		내룡리	내룡리 일원
		죽곡리	죽곡리 일원
의전리	의전리 일원		
주촌면	1	선지리	선지리 일원
		원지리	원지리 일원
		덕암리	덕암리 일원
		천곡리	천곡리 일원
		내삼리	내삼리 일원
		양동리	양동리 일원
		망덕리	망덕리 일원
		농소리	농소리 일원

읍·면 명칭	읍·면장 정수	리명칭	구역
진례면	1	청천리	청천리 일원
		시례리	시례리 일원
		송정리	송정리 일원
		초전리	초전리 일원
		신안리	신안리 일원
		산본리	산본리 일원
		신월리	신월리 일원
		송현리	송현리 일원
		담안리	담안리 일원
		고모리	고모리 일원
한림면	1	명동리	명동리 일원
		퇴래리	퇴래리 일원
		병동리	병동리 일원
		신천리	신천리 일원
		용덕리	용덕리 일원
		안곡리	안곡리 일원
		안하리	안하리 일원
		장방리	장방리 일원
		시산리	시산리 일원
		가동리	가동리 일원[가산리 일부(186-4, 186-5, 186-6, 186-10, 187-3, 187-4 총 6필지)를 가동리로 편입
		가산리	가산리 일원
		금곡리	금곡리 일원
생림면	1	나전리	나전리 일원
		사촌리	사촌리 일원
		봉림리	봉림리 일원
		생림리	생림리 일원
		마사리	마사리 일원
		생철리	생철리 일원
		안양리	안양리 일원
		도요리	도요리 일원
상동면	1	대감리	대감리 일원
		매 리	매 리 일원
		감노리	감노리 일원
		여차리	여차리 일원
		우계리	우계리 일원
		묵방리	묵방리 일원
대동면	1	수안리	수안리 일원
		주중리	주중리 일원
		주동리	주동리 일원
		예안리	예안리 일원
		초정리	초정리 일원
		괴정리	괴정리 일원
		대감리	대감리 일원
		덕산리	덕산리 일원
		월촌리	월촌리 일원
		조눌리	조눌리 일원

[별표 2]

동 명칭과 구역획정 및 동장 정수

행정동 명칭	동장 정수	구역
동상동	1	동상동 일원
회현동	1	서상동, 봉황동 일원
부원동	1	부원동 일원
내외동	1	내동, 외동 일원
북부동	1	대성동, 삼계동, 구산동 일원
칠산서부동	1	흥동, 풍유동, 명법동, 이동, 화목동, 전하동, 강동 일원
활천동	1	어방동, 삼정동 일원
삼안동	1	안동, 삼방동 일원
불암동	1	지내동, 불암동 일원
장유1동	1	유하동, 내덕동, 부곡동, 무계동, 신문동 일원[유하동 일부(686-1, 686-2, 686-3, 686-4, 686-5, 686-17, 686-21, 686-22, 686-28, 686-29, 686-30, 686-31, 686-48, 686-49, 687, 705-1, 705-2, 705-5, 705-24, 705-25, 706, 707-1, 708-6, 708-17, 708-18, 708-19, 708-20, 715-6, 715-7, 715-9, 715-10, 716-2, 717-1, 717-2, 718, 719, 719-1, 720, 721-5, 721-6, 722-4, 727-1, 727-2, 730-1, 739-2, 739-3, 740-2, 740-3, 740-4, 740-5, 740-6, 740-7, 740-8, 744-3, 745-1, 745-2, 745-3, 746-1, 746-2, 746-3, 747-1, 747-2, 747-3, 748, 749, 750-2, 751-1, 752-1, 752-2, 752-3, 753-3, 754-1, 754-2, 754-23, 754-37, 754-38, 754-39, 754-40, 754-41, 754-42, 754-43, 755-2, 755-3, 715-3, 756-12, 775-6, 776-1, 776-5, 776-6, 776-7, 777, 778-1, 778-2, 779-1, 779-2, 780-1, 780-2, 780-6, 780-7, 781-1, 781-2, 781-3, 781-7, 782-2, 782-3, 783-4, 848-13, 848-14, 850-2, 850-6, 851-1, 870-62, 872-6, 872-28, 872-29, 872-31, 872-34, 872-35, 872-36, 883-1 총 120필지) 및 주촌면 농소리 일부(409-5, 412-8, 412-9, 412-10, 412-11, 413-3, 498-3, 499-3, 500-5, 503-3, 504-4, 510-100, 510-101 총 13필지) 등 총 133필지를 내덕동으로 편입
장유2동	1	삼문동, 대청동 일원
장유3동	1	장유동, 응달동, 수가동, 관동동, 율하동 일원

◇ 제안이유

- 도시개발사업과 지적재조사사업 시행에 따라 행정구역 경계를 현실에 맞게 조정함으로써 법정동·리 간의 경계를 명확히 하여 주민생활 편의제공 및 행정업무의 효율성을 제고하고자 함

◇ 주요내용

- 김해 내덕지구 도시개발사업이 행정구역 경계구역인 장유 내덕동, 유하동, 주촌 농소리에 걸쳐 조성되어 동일 행정구역으로 조정(별표 2)
 - 장유 유하동 120필지(54,112㎡) ⇒ 장유 내덕동으로 편입
 - 주촌 농소리 13필지(811㎡) ⇒ 장유 내덕동으로 편입
- 지적재조사사업 결과 한림면 가산리와 가동리의 경계가 불분명하여 도로를 기준으로 합리적으로 경계를 조정(별표 1)
 - 한림면 가산리 6필지(867.6㎡) ⇒ 한림면 가동리로 편입

제225회 김해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의결된 김해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를 이에 공포한다.

김해시장 허성곤

2020년 2월 21일

김해시 조례 제1483호

김해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

김해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전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김해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주차장법」, 같은 법 시행령 및 같은 법 시행규칙에서 조례에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공영주차장”이란 김해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설치하는 노상주차장 및 노외주차장을 말한다.
2. “민영주차장”이란 시장 이외의 자가 「주차장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2조제1항에 따라 설치한 노외주차장을 말한다.
3. “주거지전용주차장”이란 지역주민에게 주차공간을 제공하고 긴급차량의 통행을 원활하게 하기 위하여 주택가 이면 도로에 설치한 공영노상주차장을 말한다.
4. “소규모공동주차장”이란 공영노외주차장 중 주차면수 30면 이내의 주차장을 말한다.

제3조(주차장 수급실태 조사) 「주차장법 시행규칙」(이하 “시행규칙”이라 한다) 제1조의2제3항에 따른 주차장 수급실태의 조사 방법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조사구역은 법 제3조제1항 및 시행규칙 제1조의2제1항을 기준으로 도로의 중앙 등 그 경계를 명확하게 하여 중복되거나 누락되지 아니하도록 설정한다.
2. 주차수요는 조사구역에 주차된 모든 자동차를 대상으로 자동차의 종류별로 나누고, 조사구역을 자동차사용본거지로 하여 등록된 자동차와 그 밖의 자동차로 나누어 조사한다.
3. 주차시설은 노상주차장·노외주차장 및 부설주차장을 대상으로 공영과 민영으로 나누어 조사한다. 이 경우 부설주차장은 「건축법」 제2조제2항에 따른 건축물의 용도에 따라 조사한다.
4. 조사기간은 주간과 야간으로 나누어 조사한다.
5. 조사를 하는 때에는 조사요원의 안전사고에 대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4조(주차환경개선지구의 지정) 법 제4조제1항에 따른 주차환경개선지구 지정은 법 제3조에 따라 실시한 수급실태조사 결과에 따라 야간시간대의 주차장 확보율(주차단위구획의 수를 자동차의 등록대수로 나눈 비율을 말한다)이 70퍼센트 미만인 조사구역을 대상으로 지정할 수 있다.

제5조(주차요금 및 가산금) ① 공영주차장의 주차요금은 별표 1과 같이 하고, 민영주차장의 주차요금은 해당 주차장 설치자가 관리규정으로 정한다.

② 공영주차장을 이용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동차에 대하여는 주차요금을 면제할 수 있다.

1. 「도로교통법」 제2조제22호에 따른 긴급자동차
2.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소유의 공무용 자동차
3. 그 밖에 시장이 특별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자동차

③ 노상주차장 관리자는 법 제8조의2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 법 제9조제3항에 따라 별표 1의 구분에 따른 해당요금의 두배를 가산하여 부과한다. 다만, 법 제8조의2제1항제1호에 따른 하역주차구획에 화물자동차 외의 자동차가 1시간을 초과하여 주차하는 경우에는 별표 1에서 정한 시간제 주차요금의 50퍼센트에 해당하는 금액을 가산하여 부과한다.

④ 제1항에 따른 주차요금이나 제3항에 따른 가산금은 다음 각 호에 따라 자동차를 주차한 사람으로부터 받는다. 다만, 주차한 사람을 알 수 없는 경우에는 자동차 소유자에게 부과하여 받을 수 있다.

1. 자동차가 들어 온 때를 알 수 없는 경우에는 주차를 발견한 때를 들어 온 시간으로 본다.
2. 요금을 납부하지 아니하고 자동차가 나간 경우에는 요금을 납부하지 아니한 주차시간에 해당하는 주차요금을 적용하며, 자동차가 나간 때가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자동차가 나간 것을 발견한 때까지를 주차시간으로 본다.
3. 주차장을 주차 외의 목적으로 일시 사용하는 경우 그 사용료는 별표 1의 주차요금을 적용한다.
4. 도난당한 차량이 주차된 경우 주차시간은 관할 경찰서에 도난신고를 접수한 날의 전날까지의 주차장 운영 종료시간까지로 한다. 이 경우 주차요금은 시간제 주차요금과 1일 주차요금 중 자동차 소유자에게 유리한 요금을 적용한다.

제6조(주차거부 금지) 주차장 관리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정당한 사유 없이 그 이용을 거부할 수 없다.

1. 자동차의 구조상 주차가 불가능하거나 곤란한 경우
2. 발화성 또는 인화성 물질을 적재한 차량
3. 주차장의 구조 설비를 손상할 우려가 있는 차량
4. 환경오염 및 악취를 유발하는 차량
5. 주차장 안에서 자동차를 이용하여 영업행위를 하는 경우
6. 그 밖에 주차장 관리자의 정당한 지시를 위반하는 경우

제7조(공영주차장의 표지) ① 노상주차장의 표지는 「도로교통법」 제4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8조에 따른 교통안전표지를 따르되, 이용에 관한 안내표지는 다음 각 호의 내용을 기재하여 이용자가 알아보기 쉬운 장소에 설치하여야 하며, 그 규격은 별표 2에 따른다.

1. 주차요금 및 그 징수방법에 관한 사항
2. 가산금 징수에 관한 사항
3. 주차장의 이용시간

4. 그 밖에 필요한 사항(관리자 주소, 성명, 주차제한 차량 등)
- ② 공영노외주차장의 표지의 규격은 별표 3에 따르고, 이용에 관한 안내표지에 기재하여야 할 사항은 제1항을 준용한다.
- ③ 노외주차장 설치자는 주차장 이용자가 해당 주차장의 위치를 쉽게 알 수 있도록 주차장의 위치 안내표지를 설치하여야 한다.
- ④ 주차장의 위치, 안내표지의 규격, 표기방법, 설치위치 등에 관한 기준은 별표 4에 따른다.

제8조(공영주차장의 위탁관리 등) ① 시장이 공영주차장의 관리를 법 제8조제1항 및 제13조제2항에 따라 제3자에게 위탁하여 관리하는 경우 수탁자(이하 "관리수탁자"라 한다)의 자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시가 설립한 공공시설물의 관리를 전문으로 하는 법인
 2. 공공시설물의 관리 능력이 있는 법인 또는 개인
- ② 제1항에 따른 관리수탁자의 선정방법은 일반입찰을 원칙으로 하되,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수의계약을 할 수 있다.
1.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제19조제2항에 따른 상인회 또는 시장관리자, 대규모점포개설자 또는 대규모점포개설자의 업무를 수행하는 자. 다만, 대상자가 2인 이상일 경우에는 일반입찰에 의한다.
 2.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도시재생활성화지역 내 공영주차장의 경우 해당 지역 도시재생활성화계획에 지정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역주민 단체
 - 가.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1항제9호에 따른 마을기업
 - 나. 「사회적기업 육성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사회적기업
 - 다. 「협동조합 기본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사회적협동조합
 3. 다른 법령에 따라 위탁하는 경우
- ③ 관리수탁자는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의무를 다하여 주차장을 성실히 관리·운영하여야 하며, 위탁받은 주차장의 관리·운영을 제3자에게 다시 위탁할 수 없다. 다만, 다른 법령의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 법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9조(수탁재산의 위탁료) ① 시장은 제8조에 따라 공영주차장을 위탁하여 위탁료를 징수하려는 경우에는 매년 위탁료를 산출하여야 한다. 다만, 2년 단위로 입찰한 주차장에 대하여는 입찰금액으로 한다.

- ② 제1항에 따라 산출하는 위탁료는 다음 각 호의 수입과 지출을 기준으로 하여 산정한 예상수익을 고려하여 시장이 결정한다.
1. 수입항목
 - 가. 주차요금(원/분), 주차면수, 운영일수, 운영시간, 실제 주차비율 등
 - 나. 위탁재산을 관리운영하면서 발생하는 수입으로서 시장이 정하는 수입
 2. 지출항목
 - 가. 위탁재산의 관리와 관련된 인건비, 경상경비 또는 수선유지비
 - 나. 위탁재산의 관리와 관련된 세금, 공과금 또는 보험료 등
- ③ 관리수탁자가 납부하여야 할 금액은 매년 산출한 위탁료 또는 입찰금액으로 하고, 수의계약할 경우에는 시장이 정하는 금액으로 하며, 1년 단위로 선납한다. 다만, 사용료 전액을 한꺼번에 내는 것이 곤란할 경우에는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22조에 따라 이자를 붙여 분할납부하게 할 수 있다.
- ④ 시장은 관리수탁자가 제3항에 따른 기한까지 위탁료를 납부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위탁료를 납부할 것을 독촉하여야 한다.
- ⑤ 시장은 주차장의 규모가 작아 제1항 및 제2항을 따르기가 적절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공영노외주차장에 대하여는 제19조를 준용할 수 있다.

제10조(관리·감독 등) ① 시장은 관리수탁자에 대하여 관리·감독상 필요한 때에는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그 사무소에 출입하여 장부·서류 등을 조사하게 할 수 있으며, 관리수탁자는 이에 따라야 한다.

- ② 제1항에 따른 조사 시 위탁운영과 관련하여 필요한 명령을 할 수 있으며, 관리수탁자는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에 따라야 한다.
- ③ 제1항에 따라 출입·조사를 하는 공무원은 그 권한을 표시하는 증표를 지니고 이를 관계인에게 내보여야 한다.

제11조(관리상황의 보고 등) 관리수탁자는 위·수탁계약서에서 정한 사항, 수입 및 지출 내역 등 관리·운영에 관한 현황을 시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시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12조(계약의 해지 등) ① 시장은 관리수탁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탁계약을 해지 또는 해제할 수 있다.

1. 제10조제1항에 따른 출입·조사를 거부하는 경우
 2. 제10조제2항에 따른 조치 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3. 제11조에 따른 관리·운영 현황에 대한 보고를 거부하거나 거짓으로 보고한 경우
 4. 관리수탁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제9조제4항의 위탁료 납부 독촉에 따르지 아니한 경우
 5. 다른 법령에 따라 위탁계약의 해지 또는 해제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6. 그 밖에 위탁계약 내용에 포함된 계약의 해지 또는 해제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 ② 제1항에 따라 위탁계약을 해지 또는 해제하려는 경우에는 그 사유를 문서로 관리수탁자에게 통보하고 의견진술의 기회를 주어야 한다.

제13조(관리수탁자의 행위제한) 관리수탁자의 공무 수행에 관하여는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제5조부터 제9조까지를 적용한다.

제14조(청렴서약 위반자의 입찰 참가자격 제한)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6조의2에 따른 청렴서약서의 내용을 위반한 자의 입찰 참가자격 제한에 대해서는 같은 법 제31조를 적용한다.

제15조(주차장의 설치) 도시계획 결정을 받아 설치하여야 할 노외주차장은 도시계획 결정 후 실시계획 인가 또는 사업시행 허가를 받아 설치하여야 한다.

제2장 노상 및 노외주차장

제16조(노상·노외주차장의 설치기준 등) ① 법 제7조제1항에 따라 시장이 설치하는 노상주차장은 도로폭 20

미터 미만의 도로에 설치함을 원칙으로 한다.

② 너비 6미터 미만의 도로로서 보행자의 통행 등 도로의 가장자리 이용에 지장이 없고, 노상주차장 설치 후 너비 3.3미터 이상의 차로가 확보되는 경우에는 노상주차장을 설치할 수 있다.

③ 노상·노외주차장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장애인 전용주차구획을 설치하여야 한다. 이 경우 산정한 장애인 전용주차구획의 주차대수 중 소수점 이하의 끝수는 이를 한 대로 본다.

1. 노상주차장

가. 주차대수 규모가 20대 이상 50대 미만인 경우 : 한 면 이상

나. 주차대수 규모가 50대 이상인 경우 : 주차대수의 2퍼센트 이상

2. 노외주차장 : 주차대수 규모가 50대 이상인 경우에는 주차대수의 2퍼센트 이상

④ 제3항의 장애인 전용주차구획의 세부설치 기준은 제26조를 따른다.

제17조(주차요금 징수방법) ① 공영주차장의 주차요금 징수방법은 다음 각 호의 방법을 따르되, 관리수탁자가 관리할 경우에는 따로 징수방법을 정할 수 있다.

1. 주차시간 측정계기에 의한 방법
2. 주차카드를 차창에 부착하는 방법
3. 주차표를 교부하는 방법
4. 금융기관 등 발급카드에 의한 방법

② 주차권을 발행한 후 주차장 이용을 중지 또는 폐지하거나 그 밖에 주차장 관리자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주차할 수 없을 때에는 다음 기준에 따라 환불한다.

1. 회수 주차권: 잔여 매수에 대한 요금
2. 정기 주차권: 잔여 기간에 대한 요금

③ 제1항제3호에 따라 주차표를 교부하여 주차요금을 징수하는 주차장에 대해서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미리 주차요금을 징수할 수 있다.

1. 주차장 운영종료 1시간 이내에 입장하는 자동차일 때
2. 주차예정시간이 주차장 운영종료시간 이후까지 연장될 때
3. 노상주차장의 기본요금

제18조(주거지전용주차장 설치 등) ① 시장은 시행규칙 제6조의2제1항제1호에 따라 주택가 이면도로 노상 등에 주거지전용주차장을 설치할 수 있다.

② 주거지전용주차장은 해당 지역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고 실제 거주하는 주민 중 희망자에게 먼저 제공하며, 제5조에 따른 주차요금을 징수할 수 있다.

③ 주거지전용주차장은 지역여건에 따라 종일, 주간, 야간으로 구분하여 운영할 수 있으며, 비전용면이나 전용시간대 외에는 일반이용자에게 무료로 제공한다.

④ 주거지전용주차장의 사용배정을 받지 아니한 자가 무단주차한 경우 이동을 명하거나 견인조치 후 견인 소용비용을 징수할 수 있다. 다만, 견인이 어려운 경우에는 제5조에 따른 주차요금 외에 주차요금의 2배에 해당하는 가산금을 징수할 수 있다.

⑤ 시장은 제4항에 따른 주차요금과 가산금을 납부하지 아니한 자에 대하여는 지방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이를 징수한다.

제19조(소규모공동주차장 설치 등) ① 시장은 주거지역의 소규모 나대지·공공용지 등을 활용하여 주차면수 소규모공동주차장을 설치하여 지역주민에게 제공할 수 있다.

② 소규모공동주차장의 관리·운영에 관하여는 제18조를 준용한다.

제20조(주차구획선의 표시 등) ① 주차방법 및 배치기준은 별표 5를 기준으로 하되, 도로의 너비, 해당 주차장의 여건 및 주차장 이용차량의 특성에 따라 따로 정할 수 있다.

② 주차구획의 1대당 표준규격에 관하여는 시행규칙 제3조를 따른다.

③ 노상주차장은 평행주차방식으로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주차장 설치로 인하여 도로의 정상적인 교통소통에 지장을 초래하지 않을 경우에는 다른 주차방식으로 설치할 수 있다.

제21조(단지조성사업 등의 종류와 노외주차장의 규모 등) ① 법 제12조의3에 따라 단지조성사업 등의 종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택지개발사업
2. 주택지조성사업
3. 아파트지구개발사업
4. 도시재개발사업
5. 산업단지개발사업
6. 도시철도건설사업(「철도의 건설 및 철도시설 유지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제7호에 따른 철도건설사업 중 「도시철도법」 제2조제2호에 따른 도시철도에 준하여 도시교통의 원활한 소통을 목적으로 「도시철도법」 제2조제1호에 따른 도시교통 권역에서 철도를 건설하는 철도건설사업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
7. 도시개발사업

② 법 제12조의3제2항에 따라 노외주차장의 규모는 단지조성사업 등에 관하여 「도시교통정비 촉진법」 제15조에 따라 교통영향평가를 실시하여야 하는 경우에는 같은 법 제16조제4항(같은 법 제21조제2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라 사업자가 통보받은 개선 필요사항 등에 기재된 주차장의 연면적에서 부설주차장의 면적을 뺀 면적으로 하되, 다음 각 호에서 정한 면적 이상이어야 한다.

1. 도시철도건설사업(철도의 연장이 20킬로미터 이상인 경우에 한정한다)의 경우: 다음 산식에 따라 산출한 주차 대수를 수용할 수 있는 면적

$$\text{철도개설 5년 후 1개역의 1일 평균승차인원} / 210 \times \text{철도연장(km)} / 8$$

2. 도시철도건설사업 외의 단지조성사업 등의 경우: 사업부지면적의 1.0퍼센트

③ 단지조성사업 등에 관하여 「도시교통정비 촉진법」 제15조에 따라 교통영향평가를 실시하지 아니할 경우의 노외주차장의 규모는 해당 사업부지면적의 1.0퍼센트 이상의 면적으로 한다.

제3장 건축물 부설주차장

제22조(부설주차장의 설치기준) ① 법 제19조제3항 및 같은 법 시행령(이하 "령"이라 한다) 제6조제1항에서 제

3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설치하여야 할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도시지역, 비도시지역 내 지구단위계획구역 및 관리지역에서의 부설주차장의 설치기준은 별표 6와 같다.

- ② 영 제6조제1항제4호에 따라 부설주차장에 기계식주차장치를 설치할 수 있는 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기계식주차장은 단독주택 및 공동주택을 제외한 모든 건축물에 설치할 수 있다.
 2. 업무시설 중 오피스텔은 별표 6의 설치기준에 따라 산정된 주차대수의 50퍼센트 이하로 설치한다. 다만, 별표 6에 따른 주차대수를 초과하는 주차대수에 대해서는 기계식주차장 주차대수 비율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3. 제1호에도 불구하고 「건축법」 제22조의 사용승인 또는 「주택법」 제49조의 사용검사를 받은 건축물은 별표 6에 따른 주차대수를 초과하는 주차대수에 대해서는 기계식주차장치를 추가로 설치할 수 있다.
 4. 영 별표 1의 비고 제13호가목 또는 나목의 기계식주차장치(동일방식의 2단식 이상의 주차시설을 포함한다)를 설치할 경우에는 1기당 주차대수는 1대로 인정한다.

③ 시행규칙 제16조의2제2항에 따라 부설주차장에 설치할 수 있는 기계식주차장치의 최소규모는 20대로 한다.

제23조(부설주차장의 인근설치) 법 제19조제4항에 따라 시설물의 택지 인근에 단독 또는 공동으로 부설주차장을 설치하는 경우 시설물의 대지 경계선으로부터 인근에 설치하는 부설주차장의 경계선까지의 직선거리는 200미터 이내 또는 도보거리 300미터 이내로 한다.

제24조(비용납부로 인한 부설주차장 설치의무 면제) ① 시장은 법 제19조제5항 및 영 제8조, 제9조에 따라 주차장의 설치비용을 납부한 자에게 해당 시설물 준공과 동시에 별표 7의 공영주차장 무상사용증을 교부하여야 한다.

② 영 제9조에 따른 주차장 설치비용 납부자의 공영주차장 무상사용기간은 공영주차장 무상사용권을 교부받은 날부터 납부비용을 별표 1의 급지 구분에 따라 월정기 주차권(주, 야간)요금으로 나누어서 산정한 기간의 만료일까지이다. 다만, 공영주차장의 무상사용기간은 20년 이내로 한다.

제25조(부설주차장의 설치비용 산정기준) ① 법 제19조제6항 본문에 따라 공영노외주차장 무상사용권을 부여하는 경우에는 부설주차장의 설치비용은 다음 각 호의 방법으로 산정한다.

1. 부설주차장의 설치비용의 총액은 무상사용 공영노외주차장의 주차 구획 1면당 설치비용에 설치의무가 면제되는 부설주차장 주차대수를 곱하여 산정한다.
2. 무상사용 공영노외주차장의 주차구획 1면당 설치비용은 해당 노외주차장 중 주차에 사용되는 총 설치비용(토지가액과 건축비를 포함한다)을 총 주차구획수로 나누어 산정한다.
3. 토지가액은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 제3조제7항에 따른 토지가격비준표에 따라 산정한 가액으로 하되,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 제3조에 따라서 감정평가업자가 6개월 이내에 평가한 가액으로 할 수 있다.
4. 건축비는 해당 공영노외주차장의 설치에 드는 건축비(설계비와 감리비를 포함한다)로 하되, 해당 공영노외주차장이 준공된 후 1년 이상 경과한 경우에는 「한국은행법」 제86조에 따라 한국은행이 조사·발표하는 생산자물가지수로 보정하여 산정한다.

② 법 제19조제6항 단서에 따라 공영노외주차장 무상사용권을 부여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부설주차장의 설치비용은 다음 각 호의 방법으로 산정한 금액에 2분의 1을 감액한다.

1. 부설주차장 설치비용의 총액은 건축물부지의 주차구획 1면당 설치비용에 설치의무가 면제된 부설주차장의 주차대수를 곱하여 산정한다.
2. 건축물부지의 주차구획 1면당 설치비용은 건축물부지의 단위면적당 토지가액에 주차구획 1면의 면적을 곱하여 산정한다.
3. 토지가액은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 제3조제7항에 따른 토지가격비준표에 따라 산정한 가액으로 하되,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 제3조에 따라 감정평가업자가 6개월 이내에 평가한 가액으로 할 수 있다.
4. 주차구획 1면의 면적은 18제곱미터로 하되, 총 주차대수 규모가 8대 이하인 경우에는 12제곱미터로 한다.

제26조(장애인 전용주차장 설치기준) ① 장애인 전용주차장은 다음 각 호의 기준에 적합한 위치에 설치하여야 한다.

1. 시설물의 주요 출입구에 가장 가까운 장소
 2. 옥내주차장의 경우 승강기 또는 계단에서 가장 가까운 장소
 3. 장애인 경사로에 가장 가까운 장소
- ② 장애인 전용주차장의 바닥은 다음 각 호의 기준에 적합하게 설치하여야 한다.
1. 주차장의 바닥면은 미끄러지지 않는 재료로 마감하고 평탄하게 하여야 한다.
 2. 주차장 바닥면에는 장애인 전용표시를 하여야 한다.
- ③ 장애인 전용주차장에는 다음 각 호의 표지를 설치하여야 한다.
1. 주차장 입구에는 장애인 전용주차장 표지를 식별이 용이한 장소에 부착 또는 설치하여야 한다.
 2. 주차장 입구에서 장애인 전용주차장에 이르는 적절한 장소에 필요할 경우 유도 표지를 설치하도록 한다.
- ④ 장애인 전용표지는 별표 8의 기준에 따른다.

제4장 내 집 주차장 만들기 사업

제27조(보조 및 보조대상) ① 시장은 기존 주택에 내 집 주차장(이하 이 장에서 “주차장”이라 한다)을 설치하려는 자가 설치비용의 보조를 신청할 경우 지장물 철거비용 및 주차장 설치비용을 보조할 수 있다.

- ② 제1항에 따라 주차장 설치비용을 보조받을 수 있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로 한다.
1. 기존 단독주택 및 다세대주택의 대문, 담장 및 화단 등을 철거하여 주차장을 설치하려는 건축물의 소유자
 2. 기존 단독주택 및 다세대주택의 이웃 간 경계담장을 철거하고 공동으로 주차장을 설치하려는 건축물의 소유자
 3. 자기 소유의 주택 안 여유공간을 주차장으로 변경하려는 자

제28조(보조의 방법) ① 주차장 설치 보조금(이하 “보조금”이라 한다)을 받으려는 자의 보조신청이 있는 경우 시장은 현장 확인 후 주차시설의 확보가능 여부 및 설치유형을 검토하여 별표 9의 보조금 지급기준에 따라 지급여부를 결정하여 신청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보조금 지급대상자로 결정통지를 받은 자는 사업을 완료한 후 보조금 교부 청구를 하여야

하며, 시장은 현장 확인 후 보조금 지급에 이상이 없다고 판단될 경우에 보조금을 지급한다.

제29조(보조금의 반환 등) ① 보조금을 지급받은 자가 5년 이내에 건축물 철거 및 신축 등의 특별한 사유 없이 주차장 용도를 변경 또는 폐지하거나 「김해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제26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시장은 지방보조금 교부결정의 전부 또는 일부를 취소할 수 있으며, 교부결정을 취소한 경우 이미 교부된 보조금의 전부 또는 일부의 반환을 명하여야 한다.

② 그 밖에 지방보조금 관리에 필요한 사항은 「김해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를 준용한다.

제5장 주차장 무료개방 지원

제30조(지원대상 범위와 기간) ① 시장은 주차수급 실태조사 등에 따라 주차난이 심각하다고 인정되는 지역 내 공공기관, 학교, 종교시설, 대형 상가 및 공동주택 등의 주차장을 무료개방하는 경우에는 제31조에 따라 지원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지원대상 주차장은 다음 각 호의 조건을 모두 충족하여야 한다.

1. 주간 또는 야간에 주차장의 20면 이상을 2년 이상 무료제공하여야 한다. 다만, 공동주택 부설주차장의 경우에는 주차장의 무료제공 기간은 1년 이상으로 할 수 있다.
2. 하루 8시간 이상, 한 주 40시간 이상 무료개방하여야 한다. 다만, 무료개방 시간을 조정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사전에 시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3. 무료개방 구역은 외부인의 이용이 편리한 장소로 하며, 공동주택의 경우 일반주차구역과 구별되어야 한다.

제31조(지원대상 사업) 시장은 주차장 무료개방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업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직접 지원할 수 있다.

1. 무료개방에 따른 옥외보안등, CCTV 등 방범시설의 설치
2. 무료개방을 위한 주차장 내 주차면 도색, 포장 및 시설 보수
3. 무료개방 관련 입간판 및 표지판 설치
4. 주차편의시설 보수
5. 그 밖에 시장이 주차장의 무료개방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시설 설치

제32조(지원대상 순위 및 지원결정 등) ① 시장은 주차장 무료개방 사업을 지원하기 위하여 수요조사 또는 공모를 통해 사업신청을 받아야 한다.

② 시장은 사업의 우선순위평가 기준을 작성하여야 하고, 제1항에 따른 사업신청이 있는 경우에는 평가를 통해 우선순위를 정하여야 하며,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대상과 지원시설을 결정한다.

제33조(방치차량에 대한 조치) ① 주차장 관리자는 특별한 사유 없이 장기 방치된 차량이 발생하는 경우에는 별표 10의 방치차량 이동 사유서를 해당 차량에 부착하고 시장에게 통보하여야 하며, 시장은 견인 차량을 이용하여 견인사무소로 이동시켜야 한다.

② 차량 소유자(소유자 또는 그 소유자로부터 차량의 관리에 관한 위임을 받은 사람을 말한다)가 이동된 차량을 찾고자 할 때에는 견인요금 및 보관요금을 납부하여야 한다.

제34조(피해 보상) 무료개방 주차장 내에서 이용자가 고의 또는 과실로 주차장 시설물이나 다른 차량을 훼손하거나 다른 사람에게 재산상의 손해를 입혔을 경우에는 그 피해를 원상복구하거나 그에 상당하는 금액을 배상하여야 한다.

제35조(무료개방 주차장 이용자 준수사항) ① 무료개방 주차장 이용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1. 주차장 내에 인화물질 또는 위험물의 반입을 금지한다.
2. 영업을 목적으로 한 주차장 내 활동을 금지한다.
3. 주차장 내 질서를 문란하게 하는 행위를 금지한다.
4. 주차장의 구조 및 설치에 손상이 없도록 주차하여야 한다.
5. 대형차량 등 자동차 구조상 주차장 이용에 부적합하다고 판단되는 차량의 주차를 금지한다.
6. 그 밖에 관리자가 주차장 관리상 요구한 지시사항을 따라야 한다.

② 주차장 관리자는 이용자가 제1항의 준수사항을 위반할 경우에는 주차를 거부하거나 출차를 요구할 수 있다.

제36조(무료개방 주차장의 표지 설치) ① 주차장의 무료개방 표지 설치비용은 시가 부담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② 무료개방 주차장의 표지는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제8조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하여 이용자가 쉽게 볼 수 있는 장소에 설치하여야 하며, 그 규격 등은 식별의 편리성, 주차장의 위치·규모·형태 및 주변 시설물의 배치상태 등을 고려하여 주차장을 설치하는 자 또는 그 관리의 책임이 있는 자가 정한다.

1. 주차장의 이용시간
2. 주차의 방법 및 이용시간의 제한에 관한 사항
3. 주차장 이용자의 준수사항
4. 방치차량에 대한 조치사항, 피해보상 및 손해배상책임 사항
5. 그 밖의 주의사항

제6장 보칙

제37조(과징금의 처분) ① 법 제24조의2제1항에 따라 과징금을 부과하는 위반행위의 종류와 과징금의 금액은 별표 11과 같다.

② 시장이 과징금을 부과하고자 할 때에는 과징금 징수결정과 동시에 납부의무자에게 위반행위의 종별, 과징금의 금액, 납부기한 및 장소를 명시한 납부통지서를 발부하여야 하며, 이 경우 납부기한은 납부통지서 발부일부 20일 이내로 한다.

③ 시장은 제1항에 따라 과징금을 부과하고자 할 때에는 과징금 처분 대상자에게 구술 또는 서면으로 의견진술의 기회를 주어야 한다. 이 경우 지정된 기일까지 의견진술이 없을 때에는 의견이 없는 것으로 본다.

④ 제1항에 따라 부과된 과징금을 지정 기일까지 납부하지 않았을 때에는 지방세 징수의 예에 따라 징수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단지조성사업 등의 노외주차장 규모에 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단지조성사업을 제안 또는 신청하였거나 단지조성사업의 승인·인가·허가를 받은 사항에 대하여는 종전의 규정을 따른다.

제3조(건축물 부설주차장에 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건축허가(건축허가를 신청하기 위하여 「건축법」 제4조에 따른 건축위원회에 심의를 신청한 경우를 포함한다)를 신청하였거나 건축허가를 받은 사항에 대하여는 종전의 규정을 따른다.

제4조(행정처분에 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전의 행위에 대한 행정처분은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제5조(기존 건축물에 대한 특례) 이 조례 시행 전에 사용 승인된 건축물의 증축 또는 용도변경(표시변경 등을 포함한다)으로 부설주차장이 변경되는 경우에는 증설되는 부설주차장에 한정하여 개정규정을 적용한다.

제6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김해시 청사의 부설주차장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3조 중 “제18조”를 “제26조”로, 제15조제2항 중 “제6조”를 “제8조”로 한다.

② 김해시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8조제1항제2호 중 “제15조의2”를 “제25조”로 한다.

③ 김해시 교통유발부담금 경감 등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4호라목 중 “「김해시 주차장설치 및 관리조례」”를 “「김해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로 한다.

[별표 1]

공영주차장 주차요금표(제5조제1항 관련)

(단위 : 원)

구 분	기본 주차요금 (1시간)	추가 주차요금 (30분당)	1일	월 정기주차요금			
				주 간	야 간	주·야간	
1급지	소 형	1,000	500	5,000	50,000	40,000	70,000
	대 형	2,000	1,000	10,000	80,000	70,000	100,000
2급지	소 형	600	300	3,000	30,000	25,000	40,000
	대 형	1000	500	6,000	50,000	40,000	70,000

- 비 고 -

1. 이 주차요금은 공영주차장에 적용하되, 상기금액을 상한선으로 따로 시장이 조정할 수 있으며, 해당 지역의 주차요금을 감안하여 작성하여야 한다.

※ 다만, 노상주차장(주거지전용주차장은 제외)은 1일 주차요금과 월 정기주차요금은 받지 않는다.

2. 주간의 시간구분을 다음과 같이 하고, 나머지 시간은 야간으로 한다.

가. 4월~10월 - 08:00 ~ 20:00

나. 11월~3월 - 09:00 ~ 19:30

3. 소형은 승용자동차, 승차정원 15인승 이하 승합자동차 및 적재중량 1톤 이하의 화물자동차를 말하며, 나머지는 대형으로 본다.

4. 급지구분은 다음과 같다.

가. 1급지 : 동지역, 진영읍

나. 2급지 : 면지역

5. 1구획은 제20조에 따른 표준규격을 기준으로 하되, 1구획을 초과하는 자동차에 대해서는 그 점용구획 수에 따라 징수한다.

6. 다음의 경우 주차요금을 50% 경감한다.

가.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별표 1에 따른 경형 승용자동차

나. 「장애인복지법」 제32조에 따른 장애인등록증을 소지한 사람이 본인 소유의 비사업용 승용자동차를 직접 운전하거나 그 차에 동승한 경우

다.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에 따른 국가유공자 및 같은 법 제73조에 따른 상이자로서 같은 법 시행령 제101조에 따라 국가보훈처장이 발행한 국가유공자증을 소지한 사람

라. 「경남다누리카드」 소지자가 직접 운전하고 신분증을 제시하는 경우

마. 「김해시 장기기증등록 장려에 관한 조례」 제11조에 따라 장기기증자 및 장기기증등록자 본인 소유의 비사업용 승용자동차

바.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제19조제1항에 따라 시장이 지정하는 공영주차장을 이용하는 자로서 재래시장의 이용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를 제출하는 경우

사. 「김해시 자원봉사활동 지원 조례」 제24조에 따른 자원봉사증 소지자

아.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전기자동차, 태양광자동차, 하이브리드자동차, 수소전기자동차. 다만, 전기자동차를 충전할 경우에는 대기시간 및 충전시간을 포함하여 최대 1시간까지 주차요금을 면제.

자. 「대기환경보전법」 제58조제11항에 따른 표지를 부착한 차량

차. 「김해시 병역명문가 예우에 관한 조례」에 따른 예우대상자가 본인 소유의 사업용 또는 비사업용 자동차 1대에 대하여 본인 탑승하는 경우

카.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독립유공자(「주민등록법」에 따른 세대원 소유의 자동차로서 독립유공자가 승차한 경우를 포함한다)

타. 「5·18민주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5·18민주화운동부상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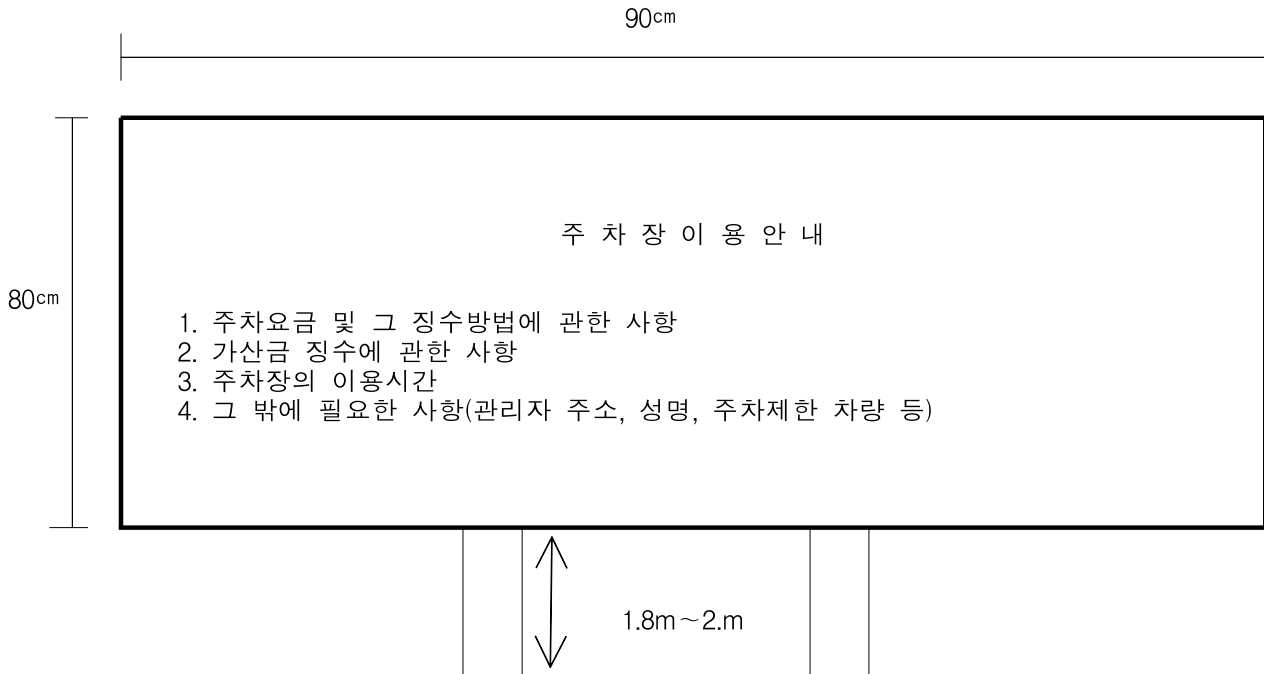
파.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3조에 따른 적용 대상자

하. 「김해시 의로운 시민 등에 대한 예우 및 지원 조례」에 따른 위로금 지급 대상자

7. 김해시의 다른 조례에서 주차요금 징수 등에 관하여 별도의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김해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의 공영주차장 주차요금표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별표 2]

주차장의 이용안내표지판(제7조제1항 관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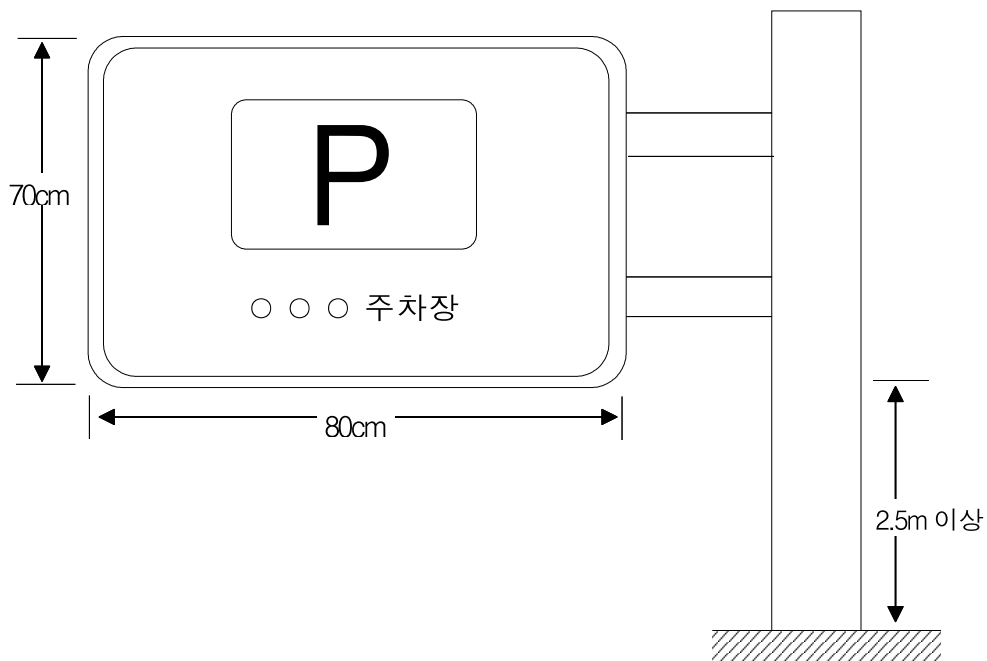
- 비 고 -

구 분	재 료	색 채	
		바 탕	글 씨(고딕)
노 상 주 차 장	알 미 늄 판	파란색	흰색
공영노외주차장	알 미 늄 판	파란색	흰색
민영노외주차장	알 미 늄 판	파란색	흰색

※ 색채의 기준색 허용오차는 도로표지규격에 준함.

[별표 3]

노외주차장 표지판(제7조제2항 관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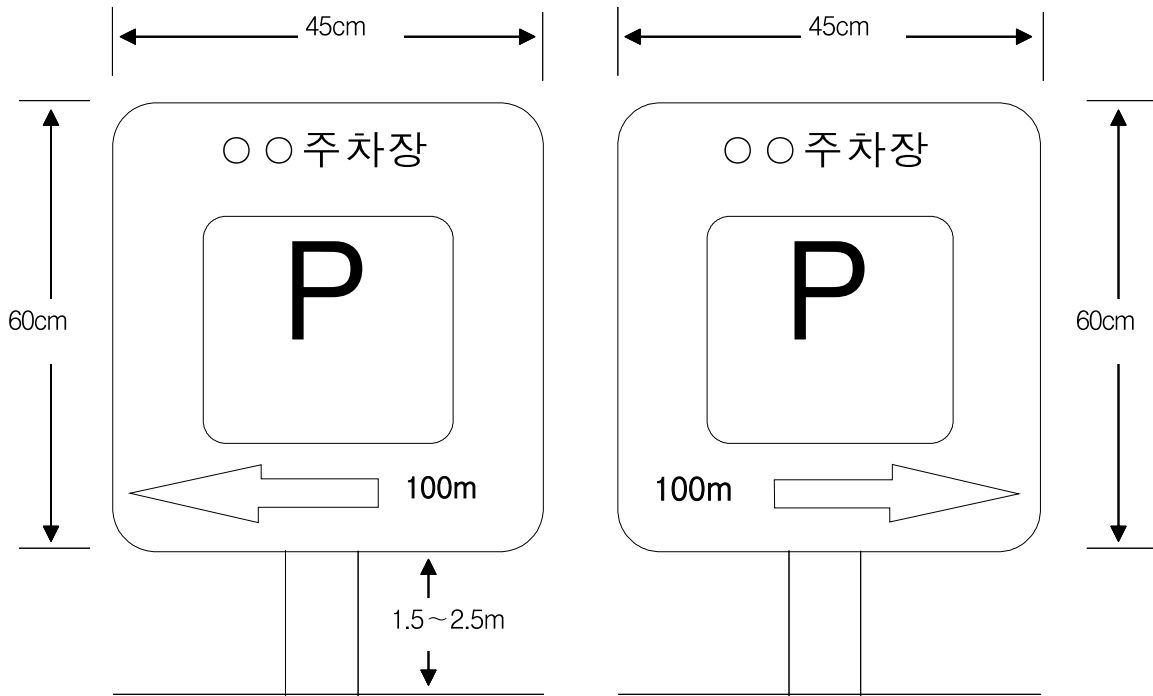


비 고

- 재 료 : 알루미늄 또는 아크릴
- 색 채
 - 외부표지판 바탕(파란색)
문자(흰색)
 - 내부표지판 바탕(흰색)
문자 및 기호(파란색)
- 규격 - 내부표지판(가로 45cm×세로 40cm)
- 외부표지판(가로 80cm×세로 70cm)
- 주차장표지판은 견고하게 설치해야 하며, 야간에 주차장 위치의 식별이 쉽도록 하여야 함.

[별표 4]

노외주차장 위치 안내표지(제7조제4항 관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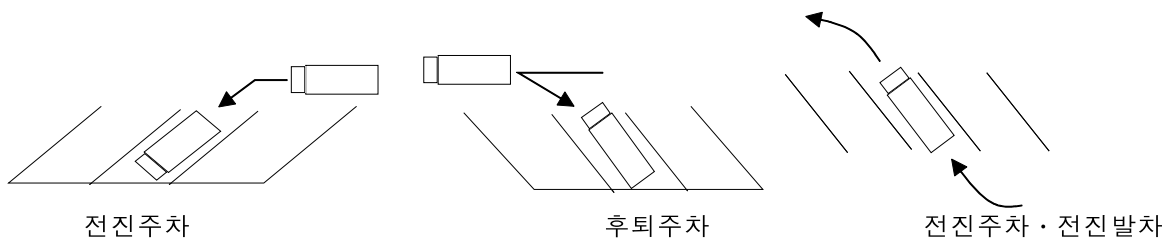
비 고

- 재 료 : 알루미늄 또는 아크릴
- 규격(내부표지판) 가로 45cm × 세로 60cm
- 색 채
 - 외부표지판 바탕 : 파란색
문자 및 기호 : 흰색
 - 내부표지판 바탕 : 흰색
문자 및 기호 : 파란색
- 설치위치 : 노외주차장으로부터 300m이내로서 주차장 이용자가 쉽게 식별할 수 있는 장소(이용 가능한 벽면에 부착할 수 있음)

[별표 5]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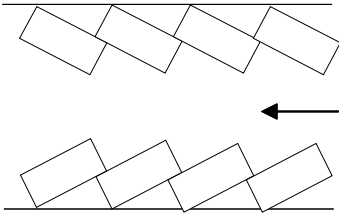
주차방법 및 배치기준(제20조제1항 관련)

1. 주차방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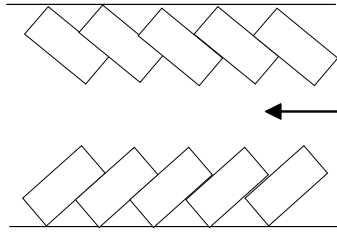


2. 배치기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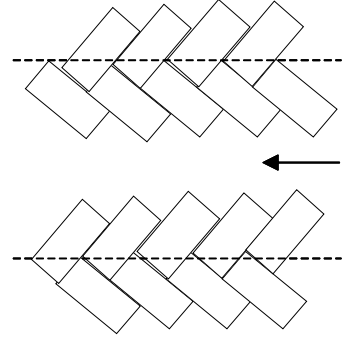
가. 30° 전진주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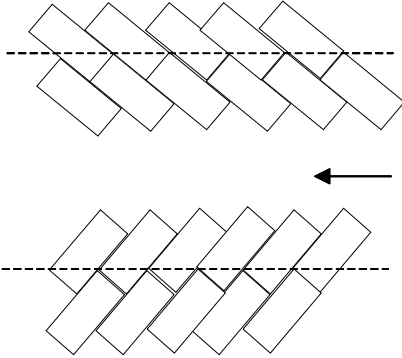
나. 45° 전진주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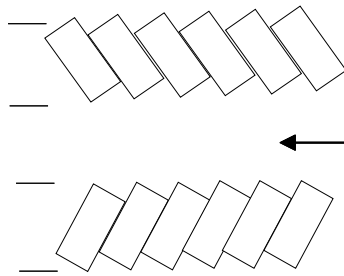
다. 45° 교차주차(A)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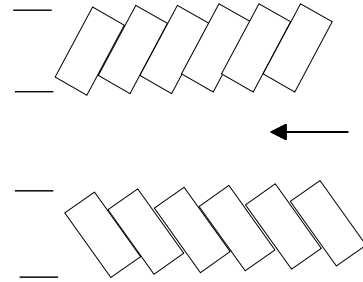
라. 45° 교차주차(B)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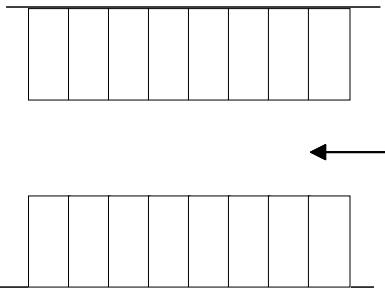
마. 60° 전진주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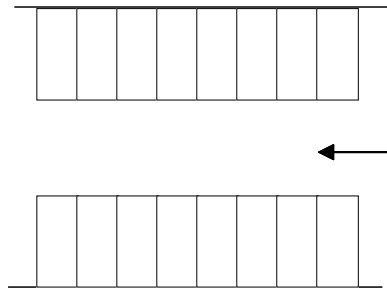
바. 60° 후퇴주차



사. 90° 전진주차



아. 90° 후퇴주차



부설주차장의 설치대상 시설물 종류 및 설치기준(제22조제1항 관련)

시 설 물	설 치 기 준
1. 위락시설	○ 시설면적 100㎡ 당 1대
2. 문화 및 집회시설(관람장은 제외한다), 종교시설, 판매시설, 운수시설, 의료시설(정신병원·요양병원 및 격리병원은 제외한다), 운동시설(골프장·골프연습장 및 옥외수영장은 제외한다), 업무시설(외국공관 및 오피스텔은 제외한다), 방송통신 시설 중 방송국, 장례식장	○ 시설면적 100㎡ 당 1대
3. 제1종 근린생활시설(「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3호 바목 및 사목(공중화장실, 대피소, 지역아동센터는 제외한다)은 제외한다), 제2종 근린생활시설, 숙박시설	○ 시설면적 150㎡ 당 1대 ○ 숙박시설 중 생활숙박 시설은 세대(호실)당 1대 이상
4. 단독주택(다가구주택은 제외한다)	○ 시설면적 50㎡ 초과 150㎡ 이하 : 1대 ○ 시설면적 150㎡ 초과 : 1대에 150㎡를 초과하는 100㎡당 1대를 더한 대수 $[1 + \{(시설면적 - 150㎡) / 100㎡\}]$
5. 다가구주택, 공동주택(기숙사는 제외한다), 업무시설 중 오피스텔	○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27조제1항에 따라 산정된 주차대수. 이 경우 다가구주택 및 오피스텔의 전용면적은 공동주택의 전용면적 산정방법을 따른다. 다만, 주차대수가 세대(호실)당 1대에 미달되는 경우에는 세대(호실)당 1대 이상
6. 「주택법 시행령」 제10조제1항제1호에 따른 원룸형 주택	○ 세대당 주차대수가 0.9대(세대당 전용면적이 30㎡ 미만인 경우에는 0.75대) 이상으로 한다. 다만, 「건축법」 제11조 또는 제14조에 따른 건축허가 또는 건축신고 대상 공동주택 중 「주택법 시행령」 제10조제1항제1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건축물은 세대(호실)당 1대 이상으로 한다.
7. 골프장, 골프연습장, 옥외수영장, 관람장	○ 골프장 : 1홀당 10대 ○ 골프연습장 : 1타석당 1대 ○ 옥외수영장 : 정원 15명당 1대 ○ 관람장 : 정원 100명당 1대
8. 수련시설, 공장(아파트형은 제외한다), 발전시설	○ 시설면적 350㎡ 당 1대
9. 창고시설	○ 시설면적 400㎡ 당 1대
10. 학생용 기숙사	○ 시설면적 400㎡ 당 1대
11. 그 밖의 건축물	○ 시설면적 300㎡ 당 1대

[비 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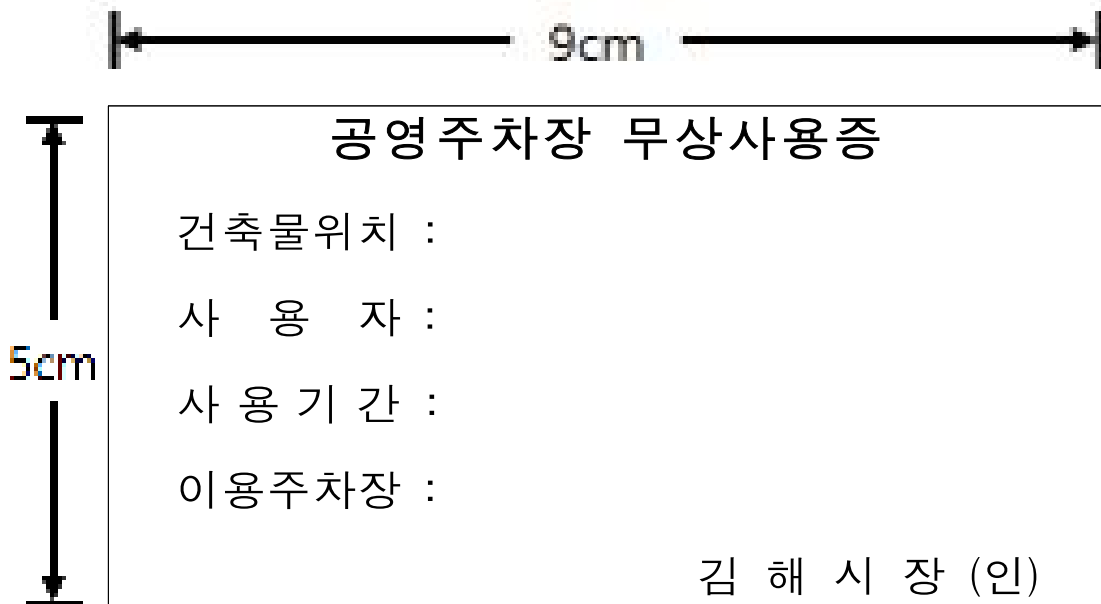
- 시설물의 종류는 다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없으면 「건축법 시행령」 별표 1에 따르되,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물을 건축하거나 설치하려는 경우에는 부설주차장을 설치하지 않을 수 있다.
 - 제1종 근린생활시설 중 변전소·양수장·정수장·대피소·공중화장실, 그 밖의 이와 유사한 시설
 - 종교시설 중 수도원·수녀원·제실 및 사당
 - 동물 및 식물 관련 시설(도축장 및 도계장은 제외한다)
 - 방송통신시설(방송국·전신전화국·통신용시설 및 촬영소만을 말한다) 중 송신·수신·중계시설
 - 주차전용건축물(노외주차장인 주차전용건축물만을 말한다)에 주차장 외의 용도로 설치하는 시설물(판매시설 중 백화점·쇼핑센터·대형점과 문화 및 집회시설 중 영화관·전시장·예식장은 제외한다)
 - 「도시철도법」에 따른 역사(「철도의 건설 및 철도시설 유지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제7호에 따른 철도건설사업으로 건설되는 역사를 포함한다)
 - 「건축법 시행령」 제6조제1항제4호에 따른 전통한옥 밀집지역에 있는 전통한옥
- 시설물의 시설면적은 공용면적을 포함한 바닥면적의 합계를 말하되, 하나의 부지 안에 둘 이상의 시설물이 있는 경우에는 각 시설물의 시설면적을 합한 면적을 시설면적으로 하며, 시설물 안의 주차를 위한 시설의 바닥면적은 해당 시설물의 시설면적에서 제외한다.
- 시설물의 소유자는 부설주차장(해당 시설물의 부지에 설치하는 부설주차장은 제외한다)의 부지의 소유권을 취득하여 이를 주차장전용으로 제공하여야 한다. 다만, 주차전용건축물에 부설주차장을 설치하는 경우에는 그 건축물의 소유권을 취득해야 한다.
- 용도가 다른 시설물이 복합된 시설물에 설치해야 하는 부설주차장의 주차대수는 용도가 다른 시설물별 설치기준에 따라 산정(위 표 제5호 또는 제6호의 시설물은 주차대수의 산정대상에서 제외하되, 비고 제8호에서 정한 기준을 적용하여 산정된 주차대수는 따로 합산한다)한 소수점 이하 첫째자리까지의 주차대수를 합하여 산정한다. 다만, 단독주택(다가구주택은 제외한다. 이하 이 호에서 같다)의 용도로 사용되는 시설의 면적이 50제곱미터 이하인 경우 단독주택의 용도로 사용되는 시설의 면적에 대한 부설주차장의 주차대수는 단독주택의 용도로 사용되는 시설의 면적을 100제곱미터로 나눈 대수로 한다.
- 시설물을 용도변경하거나 증축함에 따라 추가로 설치하여야 하는 부설주차장의 주차대수는 용도변경하는 부분 또는 증축으로 인하여 면적이 증가하는 부분(이하 “증축하는 부분”이라 한다)에 대해서만 설치기준을 적용하여 산정한다. 다만, 위 표 제5호 또는 제6호에 따른 시설물을 증축하는 경우에는 증축 후 시설물의 전체 면적에 대하여 위 표 제5호 또는 제6호에 따른 설치기준을 적용하여 산정한 주차대수에서 증축 전 시설물의 면적에 대하여 증축 시점의 위 표 제5호 또는 제6호에 따른 설치기준을 적용하여 산정한 주차대수를 뺀 대수로 한다.

6. 설치기준(위 표 제5호 또는 제6호에 따른 설치기준은 제외한다. 이하 이 호에서 같다)에 따라 주차대수를 산정할 때 소수점 이하의 수(시설물을 증축하는 경우 먼저 증축하는 부분에 대하여 설치기준을 적용하여 산정한 수가 0.5 미만인 때에는 그 수와 나중에 증축하는 부분들에 대하여 설치기준을 적용하여 산정한 수를 합산한 수의 소수점 이하의 수. 이 경우 합산한 수가 0.5 미만인 때에는 0.5 이상이 될 때까지 합산하여야 한다)가 0.5 이상인 경우에는 이를 1로 본다. 다만, 해당 시설물 전체에 대하여 설치기준(시설물을 설치한 후 법령·조례의 개정 등으로 설치기준 또는 설치제한기준이 변경된 경우에는 변경된 설치기준 또는 설치제한기준을 말한다)을 적용하여 산정한 총 주차대수가 1대 미만인 경우에는 주차대수를 0으로 본다.
7. 용도변경되는 부분에 대하여 설치기준을 적용하여 산정한 주차대수가 1대 미만인 경우에는 주차대수를 0으로 본다. 다만, 용도변경되는 부분에 대하여 설치기준을 적용하여 산정한 주차대수의 합(2회 이상 나누어 용도 변경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이 1대 이상인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
8. 단독주택 및 공동주택 중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이 적용되는 주택에 대해서는 같은 규정에 따른 기준을 적용한다.
9. 승용차와 승용차 외의 자동차가 함께 주차하는 부설주차장의 경우에는 승용차 외의 자동차의 주차가 가능하도록 하여야 하며, 승용차 외의 자동차를 더 많이 주차하는 부설주차장의 경우에는 그 이용 빈도에 따라 승용차 외의 자동차의 주차에 적합하도록 승용차 외의 자동차를 주차할 주차장을 승용차용 주차장과 구분하여 설치해야 한다. 이 경우 주차대수의 산정은 승용차를 기준으로 한다.
10.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조 또는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시행령」 제12조에 따라 장애인전용 주차구역을 설치해야 하는 시설물에는 부설주차장 설치기준에 따른 부설주차장 주차대수의 4퍼센트 이상을 장애인전용 주차구획으로 구분·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부설주차장의 설치기준에 따른 주차대수가 10대 미만인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
11. 경형자동차의 전용주차구획으로 설치된 주차단위구획은 전체 주차단위구획 수의 10퍼센트까지 부설주차장의 설치기준에 따라 설치된 것으로 본다.
12. 2008년 1월 1일 전에 설치된 기계식주차장치로서 다음 각 목에 열거된 형태의 기계식주차장치를 설치한 주차장을 다른 형태의 주차장으로 변경하여 설치하는 경우에는 변경 전의 주차대수의 2분의 1에 해당하는 주차대수를 설치하더라도 변경 전의 주차대수로 인정한다.
 - 가. 2단 단순승강 기계식주차장치: 주차구획이 2층으로 되어 있고 위층에 주차된 자동차를 출고하기 위하여는 반드시 아래층에 주차되어 있는 자동차를 출고하여야 하는 형태로서, 주차구획 안에 있는 평평한 운반기구를 위·아래로만 이동하여 자동차를 주차하는 기계식주차장치
 - 나. 2단 경사승강 기계식주차장치: 주차구획이 2층으로 되어 있고 주차구획 안에 있는 경사진 운반기구를 위·아래로만 이동하여 자동차를 주차하는 기계식주차장치
13. 비고 제12호에 따라 기계식주차장치를 설치한 주차장을 변경하여 변경 전의 주차대수로 인정받은 후 해당 시설물의 용도변경 또는 증축 등으로 인하여 주차장을 추가로 설치하여야 하는 경우에는 비고 제13호 각 목의 기계식주차장치를 설치한 주차장을 변경하면서 줄어든 주차대수도 포함하여 설치하여야 한다.
14. “학생용 기숙사”란 기숙사 중 「초·중등교육법」 제2조 및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에 재학 중인 학생을 위한 기숙사를 말한다.

[별표 7]

공영주차장 무상사용증(제24조제1항 관련)

(앞면)



비 고

- 바 탕 : 파란색
- 글 씨 : 검정색

(뒷면)

주 의 사 항

1. 앞면의 기재사항은 임의로 변경할 수 없습니다.
2. 이 사용증의 분실 등으로 인한 손해에 대하여는 보상하지 않습니다.
3. 이 사용증이 훼손된 경우에는 재교부해 드립니다.

[별표 8]

장애인 전용표지(제26조제4항 관련)

장애인 전용 주차구역

Disabled parking sector



-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주차표지가 붙어있는 자동차로서 보행에 장애가 있는 사람이 타고 있는 자동차만 주차할 수 있습니다. 이를 위반한 사람에 대해서는 **1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합니다.
- 장애인전용주차구역에 물건을 쌓거나 그 통행로를 가로막는 등 주차를 방해하는 행위를 한 사람에 대해서는 **5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합니다.
- 위반사항을 발견하신 분은 신고전화번호 ☎(055-330-0968)로 신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비 고

- 규 격
 - 표지판 : 가로70cm × 세로60cm
- 색
 - 표지의 색은 파란색(바탕)과 흰색(휠체어 그림)을 사용한다.
- 방 향
 - 휠체어그림은 원칙적으로 오른쪽 방향으로 향하여야 한다.
- 설치위치
 - 지면에서 표지판까지의 높이는 1.5미터로 한다.

[별표 9]

보조금 지급기준 (제28조제1항 관련)

□ 지급기준

사업구분	지급기준
계	가구당 5백만원 한도
주차장 조성비	○ 주차 면수에 따라 차등 지원(3~4백만원) - 1면 3백만원 (추가 1면당 50만원씩 상향)
대문(담장) 철거비	○ 50만원 지원 - 폐기물 처리 확인서 제출 시 지원 - 당초, 대문(담장)이 없을 경우는 지원 제외
방법시스템 설치비	○ 100만원 지원 - 시스템 도입 시 지원

[별표 10]

방치차량 이동 사유서

- 귀하 차량은 김해시 무료개방 주차장에 장기 방치되어 「김해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제33조에 따라 강제견인 처리될 예정입니다.
- 차량 보유자께서는 20 년 월 일까지 이동조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위 기일까지 이동조치하지 않을 시에는 관련 조례에 따라 김해시장이 견인차량을 이용하여 견인사무소로 이동조치 함을 알려드립니다.
- 상기 내용과 관련한 궁금한 사항은 김해시 교통정책과(055-330-)으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 . . .

김 해 시 장

[별표 11]

과징금을 부과하는 위반행위의 종류와 과징금의 금액 (제37조제1항 관련)

위 반 행 위	근거 법조문	과징금 금액
1. 법 제6조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주차장의 구조·설비기준 등을 위반한 경우	법 제24조제1호	50만원
2. 법 제17조제2항(법 제19조의3에서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주차장에 대한 일반의 이용을 거절한 경우	법 제24조제2호	50만원
3. 법 제23조제3항에 따른 시장의 명령에 따르지 않은 경우(노외주차장 관리자만 해당한다)	법 제24조제3호	50만원
4. 법 제25조제1항에 따른 검사를 거부·기피 또는 방해한 경우(노외주차장관리자만 해당한다)	법 제24조제4호	50만원

비고: 위 표에 따라 과징금을 부과할 위반행위로서 이미 과태료가 부과된 위반행위에 대해서는 같은 사유로 과징금을 부과하지 않는다.

◇ 제안이유

- 주차장의 설치 및 운영 시 나타난 문제점을 개선하여 효율적으로 주차장을 관리·운영하고자 함

◇ 주요내용

- 주차장 수급실태조사(제3조)
- 주차환경개선지구의 지정(제4조)
- 주차요금 및 가산금(제5조)
- 공영주차장의 위탁관리 등(제8조)
- 주차요금 징수방법(제17조)
- 주거지전용주차장의 설치 등(제18조)
- 소규모공동주차장 설치 등(제19조)
- 단지조성사업 등의 종류와 노외주차장의 규모 등(제21조)
- 부설주차장의 설치기준(제22조)
- 부설주차장의 설치비용 산정기준(제25조)
- 장애인 전용주차장 설치기준(제26조)

제225회 김해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의결된 김해시 교통영향평가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를 이에 공포한다.

김해시장 허성곤

2020년 2월 21일

김해시 조례 제1484호

김해시 교통영향평가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도시교통정비 촉진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 따라 교통혼잡이 우려되는 지역에 위치하고 교통유발량이 많을 것으로 예상되는 대규모 건축물에 대하여 보다 전문적이고 심도 있는 교통영향평가를 하기 위하여 김해시 교통영향평가심의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교통영향평가”란 「도시교통정비 촉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5호에 따른다.

제3조(위원회 설치) 김해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법 제19조에 따라 김해시 교통영향평가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제4조(심의대상 사업) 위원회의 심의대상 사업은 법 제15조에 따른다.

제5조(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의결한다.

1. 법 제17조에 따라 제출된 교통영향평가서
2. 김해시 교통영향평가에 관한 주요정책
3. 그 밖에 법령에 따라 회의에 부치는 사항

제6조(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10명 이상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회의 위원장 및 부위원장은 공무원이 아닌 위원 중에서 각각 호선한다.

③ 당연직 위원은 교통·도로업무 담당 과장으로 하고,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을 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1. 도시계획과장
 2. 한국교통기술사협회 전문가
 3. 도로교통공단 전문가
 4. 김해교육지원청 시설 담당
 5. 관할 경찰서 교통정책담당
 6. 김해시의회 의원
 7. 그 밖에 교통관련 단체 등에 소속된 교통안전에 관한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 ④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와 서기 각 1명을 둘 수 있다. 이 경우 간사는 교통안전업무 담당 팀장이 되고, 서기는 교통안전업무 담당자로 한다.

제7조(임기) ① 공무원인 위원의 임기는 그 직에 재직하고 있는 기간으로 한다.

② 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8조(위원의 의무) ① 위원은 공정하고 객관적인 자세로 교통영향평가서 등을 심의하여야 한다.

② 위원은 회의 및 업무 등의 수행과정에서 알게 된 사실을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9조(위원의 해촉) 시장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임하거나 해촉할 수 있다.

1. 심신장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2.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위원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3.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를 받은 경우
4. 제10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데에도 불구하고 회피하지 아니한 경우
5. 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는 것이 곤란하다고 의사를 밝히는 경우
6. 제8조를 위반한 경우

제10조(위원의 제척·기피·회피) ① 위원회의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안건의 심의·의결에서 제척된다.

1. 위원 또는 그 배우자나 배우자이었던 사람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당사자가 법인·단체 등인 경우에는 그 임원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이거나 그 안건의 당사자와 공동권리자 또는 공동의무자인 경우
2. 위원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와 친족이거나 친족이었던 경우
3. 위원이 해당 안건에 대하여 자문, 연구, 용역(하도급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 감정 또는 조사를 한 경우
4. 위원이나 위원이 속한 법인·단체 등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의 대리인이거나 대리인이었던 경우
5. 위원이 임원 또는 직원으로 재직하거나 최근 3년 이내에 재직하였던 기업 등이 해당 안건에 관하여 자문, 연구, 용역, 감정 또는 조사를 한 경우

② 해당 안건의 당사자는 위원에게 공정한 심의·의결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위원회에 기피 신청을 할 수 있으며, 위원회는 의결로 이를 결정하여야 한다. 이 경우 기피 신청을 받은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할 수 없다.

③ 위원이 제1항 각 호에 따른 제척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의결에서 회피하여야 한다.

제11조(회의) ①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 또는 시장이 소집하되, 회의 때마다 추첨 등 무작위 선정방법으로 선정하는 9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 또는 시장이 회의를 소집하려면 회의 개최 7일 전까지 회의의 일시, 장소 및 회의에 올릴 안건 등 구체적인 회의 일정을 그 회의에 참석하는 각 위원과 관계 사업자에게 알려야 한다. 다만, 긴급한 경우나 부득이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위원회의 회의는 제1항에 따른 구성 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12조(의견 청취) 위원회는 교통영향평가서의 심의사항과 관련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또는 시장이 요구한 경우에는 해당 사업자 및 관계인을 출석하게 하여 의견을 듣거나 설명하게 할 수 있다.

제13조(수당 지급) 위원회에 출석한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김해시 위원회 실비변상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14조(운영세칙) 이 조례에서 정하는 사항 외에 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이전에 임명 또는 위촉된 위원은 이 조례에 따라 임명 또는 위촉된 위원으로 본다.

◇ 제안이유

- 교통혼잡이 우려되는 지역에 위치하고 교통유발량이 많을 것으로 예상되는 대규모 건축물에 대하여 보다 전문적이고 심도 있는 교통영향평가를 하기 위하여 교통영향평가심의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자 함

◇ 주요내용

- 목적 및 기능(제1조, 제5조)
- 위원회의 구성(제6조)
- 위원의 해촉 및 위원의 제척·기피·회피(제8조, 제9조)
- 회의 및 의견청취(제10조, 제11조)

제225회 김해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의결된 김해시 경관 조례 일부개정조례를 이에 공포한다.

김해시장 허성곤

2020년 2월 21일

김해시 조례 제1485호

김해시 경관 조례 일부개정조례

김해시 경관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제3항 중 “시 홈페이지”를 “시 인터넷 홈페이지”로 한다.

제20조제2호 중 “증빙서류”를 “증명서류”로 한다.

제32조제2항을 제3항으로 한다.

제8장(제35조부터 제39조까지)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8장 민간전문가

제35조(민간전문가의 참여) ① 시장은 도시공간·경관 및 공공건축물 업무에 민간전문가를 참여하게 할 수 있다.

② 민간전문가는 「건축기본법 시행령」 제21조제1항에서 정하는 자격요건을 갖춘 사람으로 위촉한다.

③ 민간전문가는 총괄건축가와 공공건축가로 구분하고, 총괄건축가 1명을 포함하여 5명 이상 10명 이하로 위촉한다.

제36조(총괄건축가) ① 시장은 공간정책 및 건축정책의 수립에 대한 자문을 하고, 건축·도시·경관·디자인 관련 주요 공공사업의 총괄·조정 등 지역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하여 지역 현황에 부합하는 방향으로 의견을 제시할 수 있는 총괄건축가를 위촉할 수 있다.

② 총괄건축가의 업무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도시디자인 및 건축 관련 정책수립에 대한 검토 및 자문
2. 시장이 발주하는 총사업비 100억원 이상 또는 설계비 1억원 이상의 건축물 및 공간환경사업의 기획이나 기본설계에 대한 총괄·조정 및 자문
3. 시장 등이 시행하는 택지개발사업·도시개발사업 등의 기획 및 기본설계에 대한 자문
4. 도시계획시설 또는 공공시설 이전 부지를 개발하는 사업의 기획 및 기본설계에 대한 자문
5. 건축디자인 시범사업의 지정 및 사업시행에 대한 사전 자문
6.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요청하는 사항

③ 총괄건축가는 직무상 알게 된 정보 또는 자료를 제3자에게 제공하거나 해당 목적 외의 용도로 이용할 수 없으며, 개인 또는 개인이 소속된 법인의 자격으로 시의 공공사업에 참여할 수 없다.

제37조(공공건축가) ① 시장은 개별 공공사업 등에 대하여 기획단계부터 설계·시공·유지·관리단계에 이르는 사업 전 과정에 걸쳐 계획의 일관성을 유지하기 위하여 기획, 설계, 조정 및 관리 등을 하는 공공건축가를 위촉할 수 있다.

② 공공건축가의 업무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시장 등이 발주하는 공공건축물의 기획·설계 또는 공공건축물의 기획·설계에 대한 조정 및 자문
2. 시장이 결정하는 정비계획(「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도시개발법」·「도시재정비 촉진을 위한 특별법」에 따른 주거환경개선사업·재개발사업·재건축사업·도시개발사업 등)의 수립 자문
3. 건축디자인 시범사업의 기획·설계에 대한 조정 및 자문
4.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공공건축에 대한 기획 및 설계에 대한 자문

③ 공공건축가는 직무상 알게 된 정보 또는 자료를 제3자에게 제공하거나 해당 목적 외의 용도로 이용할 수 없다.

제38조(업무협의 등) ① 공공사업을 추진하는 부서(이하 “사업부서”라 한다)는 총괄건축가 및 공공건축가의 업무를 총괄하는 주무부서와 사전에 협의를 하여야 한다.

② 사업부서는 해당 사업의 규모 및 특성을 고려하여 자문에 필요한 최소한의 협의서류를 갖추어야 한다.

③ 사업부서는 특별한 사항을 제외하고는 총괄건축가 및 공공건축가의 의견을 최대한 반영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39조(민간전문가의 수당 등) ① 시장은 예산의 범위에서 총괄건축가 및 공공건축가의 수당 등을 지급할 수 있다.

② 민간전문가의 업무 방법 및 절차 등 필요한 사항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

별지 서식을 별지와 같이 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지 서식]

경관협의 신청서

신청인	상 호(명 칭)		사업자등록번호	
	성 명(대표자)	(남/여)		
	주 소(사무실)	(전화 :)		
사업구분	구 분	<input type="checkbox"/> 신규 <input type="checkbox"/> 변경		
	사 업 명			
	사 업 위 치			
	사 업 량			
	사 업 기 간			
	총 사 업 비			
협의내용				

「김해시 경관 조례」 제34조에 따라 경관협의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자 : (서명 또는 인)

김해시장 귀하

구비서류

- 1. 경관 협의 도서 1부
- 2. 경관체크리스트(공공디자인 또는 경관가이드라인 적용)
- 3. 그 밖에 협의에 필요한 자료(필요한 경우에 한정함)

◇ 제안이유

- 도시공간·경관 및 공공건축물 업무에 민간전문가를 참여하게 하여 특색있는 지역 경관과 품격있는 도시 이미지를 형성하고자 함

◇ 주요내용

- 민간전문가의 참여에 관한 사항(제35조)
- 총괄건축가에 관한 사항(제36조)
- 공공건축가에 관한 사항(제37조)
- 업무협의 등에 관한 사항(제38조)
- 민간전문가의 수당 등에 관한 사항(제39조)

제225회 김해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의결된 김해시 임산부 전용주차구역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를 이에 공포한다.

김해시장 허성곤

2020년 2월 21일

김해시 조례 제1486호

김해시 임산부 전용주차구역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라 공공시설 및 다중이용시설을 방문하는 임산부가 탑승한 자동차에 대한 배려와 이용편의를 제공함으로써 출산을 장려하고 여성의 복지증진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임산부”란 「모자보건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임신 중이거나 분만 후 6개월 미만인 여성을 말한다.
2. “다중이용시설”이란 대형마트, 백화점, 병원, 은행 등 사람들이 많이 이용하는 시설을 말한다.
3. “공공시설”이란 김해시청 및 그 소속기관과 김해시가 출자·출연한 법인·단체의 청사를 말한다.
4. “임산부 전용주차구역”(이하 “전용주차구역”이라 한다)이란 임산부가 탑승한 자동차만 주차할 수 있도록 따로 설치된 주차구역을 말한다.

제3조(시장의 책무) ① 김해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출산을 장려하고 임산부를 우대하는 사회분위기를 조성하기 위하여 공공시설에 전용주차구역을 설치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다중이용시설에 전용주차구역을 설치하도록 권장하여야 한다.

제4조(전용주차구역 설치 등) ① 시장은 공공시설에 임산부의 이동 편의를 위하여 통행이 편리한 장소에 전용주차구역을 설치하여야 한다.

② 전용주차구역 바닥면에는 임산부 전용 표시를 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른 전용주차구역 설치가 어려운 경우 공공시설 관리자는 임산부가 자동차를 적절한 장소에 주차할 수 있도록 안내하여야 한다.

제5조(임산부 자동차표지 발급 등) ① 시장은 「모자보건법」 제8조제1항에 따라 임신 또는 분만 사실을 신고한 임산부로부터 신청을 받은 경우 임산부가 사용하는 자동차임을 알아볼 수 있도록 임산부 자동차표지(이하 “자동차표지”라 한다)를 발급하여야 한다.

② 누구든지 제1항에 따른 자동차표지가 부착되지 아니한 자동차를 전용주차구역에 주차해서는 아니 된다. 자동차표지가 부착된 자동차에 임산부가 탑승하지 아니한 경우에도 또한 같다.

제6조(임산부 자동차 주차안내 표지) 시장은 임산부 자동차의 주차 편의를 위해 식별이 용이한 장소에 전용주차구역 표지를 부착 또는 설치하여야 한다.

제7조(위반차량 조치) 해당 시설 관리자는 제5조제2항을 위반하여 자동차표지를 부착하지 아니한 자동차 또는 임산부가 탑승하지 아니한 자동차를 전용주차구역에 주차한 사람에게는 다른 장소로 이동하여 주차하게 하여야 한다.

제8조(시행 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제안이유

-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공공시설 및 다중이용시설의 부설주차장 등에 차량을 이용하여 방문하는 임산부에 대한 배려와 이용편의를 제공함으로써 출산을 장려하고 여성의 복지증진을 도모하고자 함

◇ 주요내용

- 목적 및 정의에 관한 사항(제1조, 제2조)
- 시장의 책무에 관한 사항(제3조)
- 임산부 전용주차구역 설치에 관한 사항(제4조)
- 임산부 자동차표지발급 및 자동차 주차안내 표지에 관한 사항(제5조, 제6조)
- 위반차량 조치에 관한 사항(제7조)

제225회 김해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의결된 김해시 교육발전협의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를 이에 공포한다.

김해시장 허성곤

2020년 2월 21일

김해시 조례 제1487호

김해시 교육발전협의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

김해시 교육발전협의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3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③ 당연직 위원은 인재육성사업소장이 되고,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한다.

1. 경상남도의회 의원, 김해시의회 의원
2. 교육청 및 교육지원청 관계 공무원
3. 대학 교수 등 교육전문가
4. 각급 학교별 교장, 학교운영위원장, 학부모 대표
5.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제10조 및 제11조를 각각 제11조 및 제12조로 하고, 제10조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0조(실무협의회 설치 등) ① 협의회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협의회에 실무협의회를 둘 수 있다.

② 실무협의회는 김해시청 및 교육지원청의 업무 담당과장을 포함하여 7명 이상 10명 이하로 구성한다. 이 경우 위원장은 협의내용의 특수성 등을 고려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위원수를 조정할 수 있다.

③ 실무협의회에서 심의한 안건은 필요한 경우에 협의회의 협의·조정·자문을 거친다.

④ 실무협의회의 설치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협의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제안이유

- 김해시 교육발전협의회 내 실무협의회 구성의 근거 규정을 마련하고, 그 밖에 관련 규정을 정비하기 위함

◇ 주요내용

- 당연직 위원 및 위촉직 위원의 정비(제3조제3항)
- 실무협의회 설치 등에 관한 조항 신설(제10조)

제225회 김해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의결된 김해시 미래인재장학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를 이에 공포한다.

김해시장 허성곤

2020년 2월 21일

김해시 조례 제1488호

김해시 미래인재장학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김해시 지역사회에 필요한 다양한 분야의 우수 인재를 발굴·양성하고 경제적 이유로 교육받기 곤란한 학생의 지속적 학업을 지원하기 위한 김해시 미래인재장학재단의 설립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김해시 미래인재장학재단(이하 “재단”이라 한다)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하여 「민법」,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공익법인의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 등 관계 법령에서 다르게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3조(설립) 재단은 「민법」에 따른 재단법인으로 한다.

제4조(정관) ① 재단의 정관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

1. 목적 및 명칭, 사무소의 소재지
2. 설립 당시의 자산의 종류·상태 및 평가액
3. 자산의 관리방법과 회계에 관한 사항
4. 이사 및 감사의 정수·임기 및 그 임면에 관한 사항
5. 이사의 결의권 행사 및 대표권에 관한 사항
6. 정관의 변경에 관한 사항
7. 사업 및 그 수행에 관한 사항
8. 공고 및 공고 방법에 관한 사항
9. 존립시기와 해산사유를 정한 경우에는 그 시기와 사유 및 잔여재산의 처리방법
10. 업무감사와 회계검사에 관한 사항
11. 직원의 임면 등에 관한 사항
12. 그 밖에 재단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

② 재단이 정관을 변경하고자 하는 때에는 주무관청에 정관변경 허가 신청을 하기 전에 이사회회의 의결을 거쳐 김해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제5조(이사회 및 임원) ① 재단의 운영 및 사업수행에 관한 중요사항을 심의·의결하기 위하여 이사회를 둔다.

② 재단에는 이사회장을 포함한 이사와 감사를 둔다.

③ 임원의 직무에 관한 사항은 정관으로 정한다.

제6조(사무국) ① 재단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사무국을 둘 수 있다.

② 사무국의 조직·정원 및 직원의 보수 등에 관한 사항은 재단의 정관 또는 내부규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7조(사업) 재단은 설립목적 실현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한다.

1. 장학생 선발 및 장학금 지급
2. 인재육성 및 교육경쟁력 강화를 위한 지원사업
3. 관내 대학생 및 초·중·고등학생 해외연수 지원사업
4. 지방자치단체 등에서 위임·위탁하는 교육지원사업
5. 그 밖에 재단의 설립목적 달성에 필요한 사업

제8조(장학생 선발) ① 장학생은 선발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선발한다.

② 장학생의 신청·선발을 위한 세부기준 및 선발심의위원회의 구성은 재단 정관으로 정한다.

제9조(중복지원의 방지) ① 재단은 장학생 선발 시 다른 장학금 수혜여부를 파악한 후 선발 여부를 결정한다.

② 제1항과 관련하여 대학생을 대상으로 하는 장학금의 경우 한국장학재단이 구축한 전자시스템을 활용하고, 중·고등학생을 대상으로 하는 장학금의 경우 대상자가 소속된 학교의 장에게 장학금 수혜여부를 파악하는 절차를 거쳐야 한다. 이 경우 장학재단은 제공받은 자료를 사업목적 이외의 용도로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10조(재산의 조성 및 운용) 재단의 재산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 및 운용한다.

1. 김해시(이하 “시”라 한다) 출연금
2. 자체 수익사업으로 인한 수익금
3. 법인·단체 또는 개인이 출연하는 현금·물품 및 그 밖의 재산
4. 그 밖의 수입금

제11조(재정지원) 시장은 재단의 설립·운영 및 사업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하며, 기본재산 확충과 재정 지원을 위해 최대한 노력하여야 한다.

제 12조(회계연도 등) ① 재단의 회계연도는 시 일반회계의 회계연도에 따른다.

② 재단은 매 회계연도의 사업계획 및 예산을 회계연도 개시 3개월 전까지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이를 변경하려는 때에도 또한 같다.

③ 재단은 매 회계연도의 사업실적 및 결산 보고서를 회계감사를 받아 회계연도 종료 후 3개월 이내에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 13조(수익사업) 재단은 정관에 따라 설립목적의 범위 안에서 수익사업을 할 수 있다. 이 경우 사전에 시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 14조(사업위탁 및 자료제공) ① 시장은 재단의 사업과 관련된 사무를 위탁하는 때에는 다른 법령의 규정에서 의한 경우 또는 그 밖의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그 사무를 다른 기관에 우선하여 재단에 위탁하여야 한다.

② 재단은 시와 그 산하기관에 대하여 재단의 사업과 관련하여 필요한 자료를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그 요청을 받은 기관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하여야 하며, 재단은 제공된 자료를 사업목적 이외의 용도로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 15조(사전협의 등) 재단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시장과 사전협의를 거친 후 주무관청에 허가 또는 승인을 요청하여야 한다.

1. 정관의 제정·변경에 관한 사항
2. 기본재산의 처분(매도, 증여, 교환, 용도변경, 담보제공, 장기차입 등)에 관한 사항
3. 기구 및 정원의 변동에 관한 사항
4. 임직원의 채용, 면직, 임원의 승진 등에 관한 사항
5. 임금, 성과급, 퇴직금 및 복리후생비 등 보수체계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재단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판단되는 사항

제 16조(지도·감독 등) ① 시장은 재단 소관업무에 대하여 지도·감독하며, 필요한 경우 관계 서류의 제출을 명하거나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확인·검사하게 할 수 있다.

② 시장은 확인·검사 결과 재단 운영에 문제점이 있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시정을 요구하고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 17조(재단에 대한 제재) 시장은 재단 운영에 있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한다고 인정할 때에는 출연금 등의 지원을 중지하거나 이미 지원한 출연금의 전부 또는 일부의 반환을 명할 수 있다.

1. 법령 또는 조례를 위반하여 기금을 사용하였을 경우
2. 정당한 사유 없이 사업계획을 변경하거나 사업을 중단하였을 경우
3.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출연금을 교부받았을 경우
4. 지도·감독의 거부 또는 거짓 보고를 하였을 경우
5. 그 밖에 재단 운영에 중대한 과실이 있는 경우

제 18조(공무원 파견 등) 시장은 재단 운영의 적정을 기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 소속 공무원을 파견하거나 겸임하게 할 수 있다.

제 19조(잔여재산의 귀속) 재단이 해산하는 경우 모든 재산은 시에 귀속된다.

제 20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제안이유

- 지역사회에 필요한 다양한 분야의 우수 인재를 발굴·양성하고 경제적 이유로 교육받기 곤란한 학생의 지속적 학업을 지원하기 위한 김해시 미래인재장학재단의 설립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함

◇ 주요내용

- 장학재단의 설립 및 정관(제3조, 제4조)
- 이사회 및 임원, 사무국(제5조, 제6조)
- 사업, 장학생 선발 및 중복지원의 방지(제7조 ~ 제9조)
- 재산의 조성 및 운용, 재정지원, 회계연도 등(제10조 ~ 제12조)
- 수익사업, 사업위탁 및 자료제공, 사전협의 등(제13조 ~ 제15조)
- 지도·감독 등, 재단에 대한 제재(제16조 ~ 제17조)
- 공무원 파견 등, 잔여재산의 귀속(제18조 ~ 제19조)

김해시 고시 제2020-27호

김해도시계획시설(구산제4공원) 조성계획 결정(변경) 및 지형도면 고시

1. 김해도시계획시설(구산제4공원)에 대하여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제16조의2,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0조 및 제32조,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8조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원조성계획을 결정(변경)하고, 지형도면을 고시합니다.
2. 관계도서는 김해시 도시계획과(055-330-6924)에 비치하여 일반인에게 보입니다.

2020년 02월 21일

김 해 시 장

1. 도시계획시설(공원) 결정조서

구분	도면 표시 번호	공원명	시설의 세 분	위 치	면 적(m ²)			최초결정일	비고
					기 정	변 경	변경후		
기정	55	구산제4공원	어린이 공 원	김해시 구산동 322	2,105	-	2,105	1993.8.20	구주공 공 원

2. 공원조성계획 총괄표

○ 변경내용

구 분	면 적(m ²)			비 고	
	기 정	변 경	변경후		
공원면적	2,105	-	2,105		
시설면적계	1,037	증) 10.68	1,047.68	기정시설율 : 49.26% 변경시설율 : 49.77%	
건축면적	바닥면적	94	증) 10.68	104.68	기정 건폐율 : 4.47% 변경 건폐율 : 4.97%
	연 면 적	94	증) 10.68	104.68	기정 용적율 : 4.47% 변경 용적율 : 4.97%

○ 변경사유

도면표시번호	공 원 명	변 경 내 용	변 경 사 유
55	구산제4공원 (구주공공원)	• 화장실 면적 증가 (13㎡ → 23.68㎡)	• 구산제4공원 내 위치한 기존의 화장실이 노후화되어 정비공사를 통해 개선시켜 공원을 이용하는 지역주민 삶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하여 공원조성계획을 결정(변경)코자 함.

3. 토지이용계획

○ 토지이용계획 총괄표(변경)

구 분	면 적(㎡)			비 고
	기 정	변 경	변 경 후	
총 계	2,105			
공 원 시 설	1,037	증) 10.68	1,047.68	
도로및광장	490			
휴 양 시 설	57			
유 희 시 설	243			
운 동 시 설	153			
편 익 시 설	13	증) 10.68	23.68	
관 리 시 설	81			
녹 지	1,068	감) 10.68	1,057.32	

4. 세부시설조서

○ 도로 및 광장

구분	번호	시설의 세분	위 치	부지면적 (㎡)	건축규모(㎡)		규모	비고
					바닥면적	연면적		
기정	소 계			490	-	-	-	
기정	1	도로	-	392	-	-	-	
기정	2	진입광장	322공	98	-	-	-	

○ 휴양시설(변경없음)

구분	번호	시설의 세분	위 치	부지면적 (㎡)	건축규모(㎡)		규모	비고
					바닥면적	연면적		
기정	소 계			57	-	-	-	
기정	3	휴게소1	322공	30	-	-	-	
기정	4	휴게소2	322공	27	-	-	-	

○ 유희시설(변경없음)

구분	번호	시설의 세분	위 치	부지면적 (㎡)	건축규모(㎡)		규모	비고
					바닥면적	연면적		
기정	소 계			243	-	-	-	
기정	5	어린이놀이터1	322공	243	-	-	-	

○ 운동시설(변경없음)

구분	번호	시설의 세분	위 치	부지면적 (㎡)	건축규모(㎡)		규모	비고
					바닥면적	연면적		
기정	소 계			153	-	-	-	
기정	7	체력단련장	322공	153	-	-	-	

○ 편익시설(변경)

구분	번호	시설의 세분	위 치	부지면적 (㎡)	건축규모(㎡)		규모	비고
					바닥면적	연면적		
기정	소 계			13	13	13	1층	
변경	소 계			23.68	23.68	23.68	1층	
기정	9	화장실	322공	13	13	13	1층	
변경	9	화장실	322공	23.68	23.68	23.68	1층	

○ 관리시설(변경없음)

구분	번호	시설의 세분	위 치	부지면적 (㎡)	건축규모(㎡)		규모	비고
					바닥면적	연면적		
기정	소 계			81	-	-	-	
기정	10	방범초소	322공	81	-	-	-	

○ 녹지(변경)

구분	번호	시설의 세분	위 치	부지면적 (㎡)	건축규모(㎡)		규모	비고
					바닥면적	연면적		
기정	소 계			1068.00	-	-	-	
변경	소 계			1057.32				
기정	-	녹지	-	1068.00	-	-	-	
변경	-	녹지	-	1057.32	-	-	-	

○ 세부도로조서(변경없음)

- 도로조서 총괄표

구 분	합 계		중 로		소 로		세 로	
	연장(m)	면적(㎡)	연장(m)	면적(㎡)	연장(m)	면적(㎡)	연장(m)	면적(㎡)
합계(기정)	190	392	-	-	190	392	-	-
1류	-	-	-	-	-	-	-	-
2류	-	-	-	-	-	-	-	-
3류(기정)	190	392	-	-	190	392	-	-

- 소로

구분	등급	류별	번호	폭원	연장(m)	면적(㎡)	기능	기점	종점	비고
기정	소 계				190	392	-	-	-	
기정	소로	3	1	2.1	142	299	산책로	진입광장	진입광장	
기정	소로	3	2	2.3	7	17	진입로	서측경계	산책로	
기정	소로	3	3	2.8	5	14	진입로	남측경계	산책로	
기정	소로	3	4	1.8	6	11	진입로	동측경계	산책로	
기정	소로	3	5	1.7	30	51	산책로	산책로	산책로	

5. 관계도면 : 실음생략

도로구간 변경(종점변경) 고시

도로명주소법 제1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의4, 제21조 규정에 의거 김해시 도로구간 변경에 관한 사항을 아래와 같이 변경 고시합니다.

2020년 2월 7일

김해시장

1. 고 시 일 : 2020년 2월 7일
2. 고시방법 : 공보, 시 홈페이지, 게시판
3. 고시내용 : 도로구간 종점 변경(인제로694번길)
4. 도로구간 변경 조서 및 도면

도로 위계	도로명	구분	도로구간		도로 연장 (m)	도로 폭 (m)	기초 간격 (m)	기초 번호	변경사유	관할행 정구역
			시작 지점	끝 지점						
길	인제로694번길	변경 전	생림면 나전리 162	생림면 나전리 191-1	746	3	20	1 → 76	주도로구간 종점 변경	생림면 나전리
		변경 후	생림면 나전리 162	생림면 나전리 184	1,037	3	20	1 → 104		



※ [도로명주소법 시행령]제6조의 4 제6항에 따른 종속구간에 관한 변경하는 경우로서 주민의견 수렴 및 도로명주소위원회 심의 등을 생략 할 수 있음.

5. 기타 자세한 내용은 김해시청 토지정보과 (055-330-2481)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김해도시관리계획(시설:대학) 결정(변경) · 조성계획 결정(변경) · 지형도면 및 도시계획시설사업 실시계획인가(변경) 고시

1. 도시관리계획(시설:대학) 결정(변경), 조성계획 결정(변경) 사항에 대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5조에 따라 아래와 같이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 및 조성계획 결정(변경) 고시 및 「토지이용규제기본법」 제8조에 따라 지형도면을 고시하고,
2.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88조, 「같은 법 시행령」 제97조에 따라 실시계획인가(변경) 사항을 「같은 법 시행령」 제100조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고시하며, 관계도서는 김해시청(도시계획과 ☎330-3594)에 비치하고 일반인에게 보입니다.

2020. 2. 21.

김 해 시 장

1. 김해도시관리계획(학교:가야대학교) 결정(변경) 조서: 변경

가. 도시계획시설(학교) 결정 변경(조서)

구분	도면표시 번호	시설명	시설의 세분	위치	면 적(m ²)			최초 결정일	비고
					기정	변경	변경후		
변경	1	학교	대학	삼계동 산79-1번지 일원	1,073,648	증) 6	1,073,654	-	자연녹지 지역

나. 도시계획시설(학교) 결정(변경) 사유

도면표시 번호	학교명	변 경 내 용	변 경 사 유
1	가야 대학교	•토지 분할 및 합병으로 인한 면적 변경 -면적 : 1,073,648m ² → 1,073,654m ² (증6m)	•도시계획시설 결정 구역계 변경 없이 토지 분할 및 합병에 따른 면적 증감 사항 반영

2. 조성계획 결정(변경) 조서: 변경

가. 조성계획결정(변경) 총괄표

구 분	부지면적(m ²)			연면적(m ²)			층 수	비 고	
	기 정	변 경	변경후	기 정	변 경	변경후			
교육 기본시설	강의동(1)				14,691.49	-	14,691.49	지상5층 지하1층	
	강의동(7)	16,347	감)1,156	15,191	5,232.00	감)5,232.00	-	지상5층 지하1층	폐지
	실습동(1)				1,629.08	-	1,629.08	지상5층	
	학생회관				4,209.52	증)10.80	4,220.32	지상4층 지하1층	
	강의동(6)	3,630	-	3,630	2,776.80	-	2,776.80	지상5층	
	도서관동	5,117	감)466	4,651	6,680.12	-	6,680.12	지상6층	
	강의동(3)	12,829	감)86	12,743	6,500.00	-	6,500.00	지상5층	
	대학본부				3,000.00	-	3,000.00	지상4층	
	교수연구실	8,909	-	8,909	5,000.00	-	5,000.00	지상4층	
	실습동(2)	7,051	증)294	7,345	3,965.23	증)10.50	3,975.73	지상4층 지하1층	
소 계	53,883	감)1,414	52,469	53,684.24	감)5210.70	48,473.54			

구 분		부지면적(m ²)			연면적(m ²)			층 수	비 고
		기 정	변 경	변경후	기 정	변 경	변경후		
지원시설	남자기숙사	4,573	-	4,573	3,216.80	-	3,216.80	지상5층	
	여자기숙사				3,367.76	-	3,367.76	지상5층	
	본부석	195	-	195	170.88	-	170.88	지상1층	
	강당동	13,574	증)107	13,681	1,901.22	-	1,901.22	지상2층	
	체육관동				1,402.24	-	1,402.24	지상2층 지하1층	
	야외무대				209.55	-	209.55	지상1층	
	식당B	3,325	감)849	2,476	1,000.00	-	1,000.00	지상1층	
	휴게소	3,153	감)399	2,754	1,000.00	-	1,000.00	지상1층	
	학생인력 개발센터	2,081	감)2,081	-	488.21	감)488.21	-	지상1층	폐지
	야외잔디광장	-	증)2,066	2,066	-	-	-		
소 계	26,901	감)1,156	25,745	12,756.66	감)488.21	12,268.45			
부속시설	평생교육원	-	-	-	40.00	-	40.00	지상1층	
	노인요양원	3,637	감)118	3,519	2,804.10	-	2,804.10	지상4층 지하1층	
	한의대병원	5,046	증)328	5,374	10,000.00	-	10,000.00	지상10층	
	교수아파트	3,746	감)3,746	-	6,000.00	-	6,000.00	지상9층	폐지
	소 계	12,429	감)3,536	8,893	18,844.10	-	18,844.10		
기타시설	교 문	-	-	-	430.65	-	430.65	지상1층	도로(중-1) 면적에포함
	경비실	-	-	-	9.00	-	9.00	지상1층	도로(중-1) 면적에포함
	화장실	-	-	-	17.42	감)17.42	-	지상1층	폐지
	소 계	-	-	-	457.07	감)17.42	439.65		
체육시설	축구장	8,713	-	8,713	-	-	-		
	소 계	8,713	-	8,713	-	-	-		
공급시설	배수지	77	-	77	-	-	-		
	가압장	32	-	32	-	-	-		가압장 위치 변경
	소 계	109	-	109	-	-	-		

구 분	부지면적(m ²)			연면적(m ²)			총 수	비 고
	기 정	변 경	변경후	기 정	변 경	변경후		
방재시설	저류지	9,801	증)377	10,178	-	-	-	
	소 계	9,801	증)377	10,178	-	-	-	
교통시설	주차장(I)	10,073	증)77	10,150	-	-	-	
	주차장(II)	8,016	-	8,016	-	-	-	
	도 로	48,185	감)5,666	42,519	-	-	-	
	소 계	66,274	감)5,589	60,685	-	-	-	
공간시설	녹 지	895,538	증)11,324	906,862	-	-	-	
	소 계	895,538	증)11,324	906,862	-	-	-	
합 계		1,073,648	증)6	1,073,654	85,742.07	감)5,716.33	80,025.74	

나. 관련 도면: 생략

다. 조성계획 결정 변경 사유서

도면 표시 번호	학교명	변경내용	변경사유
59	가 야 대 학 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학교부지 내 세부시설변경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학령인구 감소로 인한 교사시설의 보유 기준 충족에 따른 일부 시설의 폐지 및 세부시설인 조성계획 일부 변경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강의동(7) : 폐 지 - 연면적 A=5,232.00m²→0m², 감)5,232.00m²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교육기본시설인 강의동(7)시설을 당초 조성계획에 반영(수립)하였으나 학령인구 감소로 인한 교사시설의 보유 기준 충족에 따라 폐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학생인력개발센터 : 폐 지 - 건축면적 A=653.95m²→0m², 감)653.95m² - 연면적 A=488.21m²→0m², 감)488.21m²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대학 구조조정 및 학령인구 감소로 인한 교사시설의 보유 기준 충족에 따라 장기 미집행 시설인 세부시설 중 학생인력개발센터 폐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화장실 : 폐 지 - 건축면적 A=23.70m²→0m², 감)23.70m² - 연면적 A=17.42m² → 0m², 감)17.42m²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학생인력개발센터 폐지에 따른 부속시설물로서 폐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야외잔디광장: 신 설 - 부지면적 A=0m²→2,066m², 증)2,066m²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학생인력개발센터 폐지로 인해 기. 조성된 부지에 학생들의 휴식과 여유를 즐길 수 있는 자연친화적인 야외잔디광장 조성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도서관동: 변경 - 부지면적 A=5,117m²→4,651m², 감)466m²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도서관동 사업시행 구역계 변경으로 인한 부지면적 감소

도면 표시 번호	학교명	변경내용	변경사유
59	가 야 대 학 교	<ul style="list-style-type: none"> 실습동(2) 건축면적 및 연면적: 변경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건축면적 A=982.46㎡→988.16㎡, 증)5.70㎡ - 연면적 A=3,965.23㎡→3,975.73㎡, 증)10.50㎡ 	<ul style="list-style-type: none"> 2012년 10월 11일 사용승인되어 건축면적 및 연면적 변경
		<ul style="list-style-type: none"> 실습동(2) 부지면적: 변경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부지면적 A=7,051㎡→7,345㎡, 증)294㎡ 	<ul style="list-style-type: none"> 실습동 사업시행 구역계 변경으로 인한 부지면적 증가
		<ul style="list-style-type: none"> 학생회관 연면적: 변경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연면적 A=4,209.52㎡→4,220.32㎡, 증)10.80㎡ 	<ul style="list-style-type: none"> 2014년 03월 31일 사용승인되어 연면적 변경
		<ul style="list-style-type: none"> 강의동(1) · 실습동(1) · 학생회관 부지면적: 변경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부지면적 A=16,347㎡→15,191㎡, 감)1,156㎡ 	<ul style="list-style-type: none"> 강의동(7)폐지에 따른 조성계획변경 및 녹지원형보존으로 인한 부지면적 감소
		<ul style="list-style-type: none"> 노인요양원동 부지면적: 변경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부지면적 A=3,637㎡ → 3,519㎡, 감)118㎡ 	<ul style="list-style-type: none"> 노인요양원동 사업시행 구역계 변경으로 인한 부지면적 감소
		<ul style="list-style-type: none"> 강당동 · 체육관동 · 야외무대 부지면적: 변경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부지면적 A=13,574㎡→13,681㎡, 증)107㎡ 	<ul style="list-style-type: none"> 강당동 · 체육관동 · 야외무대 사업시행 구역계 변경으로 인한 부지면적 증가
		<ul style="list-style-type: none"> 강의동(3) · 대학본부 부지면적: 변경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부지면적 A=12,829㎡→12,743㎡, 감)86㎡ 	<ul style="list-style-type: none"> 주차장(1) 도로선형 및 주·출입구의 위치변동으로 인한 조성계획변경에 따른 부지면적 감소
		<ul style="list-style-type: none"> 저류지 부지면적: 변경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부지면적 A=9,801㎡→10,178㎡, 증)377㎡ 	<ul style="list-style-type: none"> 야외무대 · 도로(중로1-1호선) · 도서관동 등의 사업시행 구역계 변경으로 인한 부지면적 증가
		<ul style="list-style-type: none"> 주차장(1) 부지면적: 변경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부지면적 A=10,073㎡→10,150㎡, 증)77㎡ 	<ul style="list-style-type: none"> 주차장(1) 도로선형 및 주·출입구의 위치변동으로 인한 조성계획변경에 따른 부지면적 증가
		<ul style="list-style-type: none"> 식당B 부지면적: 변경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부지면적 A=3,325㎡ → 2,476㎡, 감)849㎡ 	<ul style="list-style-type: none"> 소유권 미확보에 따른 조성계획변경으로 인하여 부지면적 감소
		<ul style="list-style-type: none"> 휴게소 부지면적: 변경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부지면적 A=3,153㎡ → 2,754㎡, 감)399㎡ 	<ul style="list-style-type: none"> 소유권 미확보에 따른 조성계획변경으로 인하여 부지면적 감소
		<ul style="list-style-type: none"> 한의대병원 부지면적: 변경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부지면적 A=5,046㎡ → 5,374㎡, 증)328㎡ 	<ul style="list-style-type: none"> 소유권 미확보에 따른 조성계획변경으로 인하여 부지면적 감소
		<ul style="list-style-type: none"> 교수아파트 부지면적, 연면적: 폐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부지면적 A=3,746㎡ → 0㎡, 감)3,746㎡ - 연면적 A=6,000.00㎡ → 0㎡, 감)6,000.00㎡ 	<ul style="list-style-type: none"> 소유권 미확보에 따른 조성계획(변경)에서 폐지

도면 표시 번호	학교명	변경내용	변경사유
59	가 야 대 학 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도로(중로1-1호선) 부지면적:변경 - 부지면적 A=32,318㎡→26,664㎡,감)5,654㎡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소유권 미확보에 따른 도로노선의 축소 및 도로의 노폭 및 사업시행 구역계 변경으로 인한 부지면적 감소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도로(소로1-1호선) 부지면적: 변경 - 부지면적 A=1,578㎡→1,562㎡, 감)16㎡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노인요양원동의 사업시행 구역계 변경으로 인한 조성계획변경에 따른 부지면적 감소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도로(소로2-1호선) 부지면적:변경 - 부지면적 A=1,389㎡→1,413㎡, 증)24㎡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소로2-1호선의 도로 시점부의 선형변경으로 인한 조성계획변경에 따른 부지면적 증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녹지(Ⅰ) 부지면적: 변 경 - 부지면적 A=5,534㎡ → 5,226㎡, 감)308㎡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중로1-1호선의 도로선형변경으로 인한 부지면적 감소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녹지(Ⅱ) 부지면적: 변 경 - 부지면적 A=10,677㎡ → 10,444㎡, 감)233㎡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중로1-1호선의 도로선형변경 및 도서관동 사업시행 구역계 변경으로 인한 조성계획변경에 따른 부지면적 감소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녹지(Ⅲ) 부지면적: 변 경 - 부지면적 A=102,058㎡→100,485㎡,감)1,573㎡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중로1-1호선의 도로선형변경 및 실습동(2), 강의동(1)·학생회관·실습동(1)의 사업시행 구역계 변경으로 인한 조성계획변경에 따른부지면적 감소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녹지(Ⅶ) 부지면적: 변 경 - 부지면적 A=1,842㎡ → 1,778㎡, 감)64㎡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노인요양원동 사업시행 구역계 변경으로 인한 조성계획변경에 따른 부지면적 감소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녹지(Ⅷ) 부지면적: 변 경 - 부지면적 A=31,514㎡→756,227㎡,증)724,713㎡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노인요양원동 사업시행 구역계 변경 및 중로1-1호선 노선축소로 인한 녹지(Ⅷ)와 녹지(Ⅸ)의 병합 및 교수아파트 폐지 한의대병원, 휴게소, 식당B 등의 소유권 미확보에 따른 조성계획변경에 따른 부지면적 증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녹지(Ⅸ) 부지면적: 소 멸 - 부지면적 A=711,210㎡ → 0㎡, 감)711,210㎡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녹지(Ⅷ)와 녹지(Ⅸ)의 병합으로 인한 조성계획변경에 따른 녹지(Ⅸ)소멸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가압장 위치: 변 경 - 부지면적 A=32㎡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가압장 위치는 학교 주 진입로 우측편 녹지(1)부분에 위치한 것으로 결정되어 있었으나 실제 현황상 위치는 주진입로 좌측편 녹지(2)에 위치한 상태로 조성계획변경

3. 도시계획시설사업 실시계획인가(변경)

가. 위 치: 김해시 삼계동 산 79-1번지 일원(변경없음)

나. 사업의 종류 및 명칭(변경없음)

- 1) 사업의 종류 : 김해도시계획시설(학교: 가야대학교)사업
- 2) 사업의 명칭 : 가야대학교 조성사업(1,2단계)

다. 사업의 면적 및 규모(변경)

1) 사업의 면적

구 분	면 적(m ²)			비 고
	기 정	변 경	변 경 후	
도시계획시설결정면적	1,073,648	증) 6	1,073,654	
실시계획인가 면적	123,837	감) 316	123,521	1, 2단계
단계별 시행면적	1단계	-	66,555	
	2단계	감) 316	56,966	

2) 사업의 규모

구 분	기 정	변 경	변 경 후	비 고
건물 수(동)	18	감) 2	16	
건축 면적(m ²)	14,468.74	감) 671.95	13,796.79	
건축연면적(m ²)	48,010.07	감) 484.33	47,525.74	

라. 사업 시행자의 성명 및 주소 (변경없음)

- 1) 성명 : 학교법인 대구학원 이사장 문재천
- 2) 주소 : 대구광역시 남구 대명역2길 5-2

마. 사업 기간

당 초	변 경	비 고
2005. 3. 19. ~ 2019. 12. 31	2005. 3. 19. ~ 2020. 6. 30	1단계 준공: 2003.1.22

바. 사용 또는 수용할 토지 및 소유권이외의 권리자 조서: 붙임

사. 실시계획인가(변경) 사유: 조성계획 변경 결정에 따른 사업 시행구역 증감 사항 반영 및 사업기간 변경

아. 관계도면: 실음생략 [김해시청 도시계획과(T.330-3594)에 비치]

사용 또는 수용할 토지 및 소유권이외의 권리자 조서

연번	구분	소재지	지 번	지목	면적(m ²)		소유자		비 고
					지적	편입	성 명	주 소	
1	기정	삼계동	60	학	58,150	58,150	학교법인 대구학원	경북 고령군 고령읍 지산리 산120번지	1단계
2	기정	“	60-9	임	15,078	15,078	학교법인 대구학원	경북 고령군 고령읍 지산리 산120번지	
3	기정	“	60-10	임	777	777	학교법인 대구학원	경북 고령군 고령읍 지산리 산120번지	
4	기정	“	101-1	임	52	52	학교법인 대구학원	경북 고령군 고령읍 지산리 산120번지	
5	기정	“	101-2	구	36	36	학교법인 대구학원	경북 고령군 고령읍 지산리 산120번지	
6	기정	“	101-3	구	398	398	학교법인 대구학원	경북 고령군 고령읍 지산리 산120번지	
7	기정	“	101-4	임	6,569	6,569	학교법인 대구학원	경북 고령군 고령읍 지산리 산120번지	
8	기정	“	101-5	임	3,881	3,881	학교법인 대구학원	경북 고령군 고령읍 지산리 산120번지	
9	기정	“	101-6	임	4,328	4,328	학교법인 대구학원	경북 고령군 고령읍 지산리 산120번지	
10	기정	“	101-7	구	102	102	학교법인 대구학원	경북 고령군 고령읍 지산리 산120번지	
11	기정	“	101-8	임	719	719	학교법인 대구학원	경북 고령군 고령읍 지산리 산120번지	
12	기정	“	103-1	답	1,522	1,522	학교법인 대구학원	경북 고령군 고령읍 지산리 산120번지	
13	기정	“	103-2	임	433	433	학교법인 대구학원	경북 고령군 고령읍 지산리 산120번지	
14	기정	“	106-2	구	136	136	학교법인 대구학원	경북 고령군 고령읍 지산리 산120번지	
15	기정	“	125-2	전	46	46	학교법인 대구학원	경북 고령군 고령읍 지산리 산120번지	
16	기정	“	126-1	답	281	281	학교법인 대구학원	경북 고령군 고령읍 지산리 산120번지	
17	기정	“	126-2	유지	539	539	학교법인 대구학원	경북 고령군 고령읍 지산리 산120번지	
18	기정	“	126-3	답	662	662	학교법인 대구학원	경북 고령군 고령읍 지산리 산120번지	
19	기정	“	127-1	답	1,481	1,481	학교법인 대구학원	경북 고령군 고령읍 지산리 산120번지	
20	기정	“	127-2	구	149	149	학교법인 대구학원	경북 고령군 고령읍 지산리 산120번지	
21	기정	“	127-4	답	224	224	학교법인 대구학원	경북 고령군 고령읍 지산리 산120번지	
22	기정	“	132	잡	202	192	학교법인 대구학원	경북 고령군 고령읍 지산리 산120번지	
	변경	“	132	잡	202	165	학교법인 대구학원	경북 고령군 고령읍 지산리 산120번지	사업시행구역 축소로 인한 면적감소(-27m ²)

연번	구분	소재지	지 번	지목	면적(㎡)		소 유 자		비 고
					지적	편입	성 명	주 소	
23	기정	삼계동	133-1	유지	3,084	3,084	학교법인 대구학원	경북 고령군 고령읍 지산리 산120번지	
24	기정	“	133-2	답	73	73	학교법인 대구학원	경북 고령군 고령읍 지산리 산120번지	
25	기정	“	133-3	답	96	96	학교법인 대구학원	경북 고령군 고령읍 지산리 산120번지	
26	기정	“	134	잡	549	549	학교법인 대구학원	경북 고령군 고령읍 지산리 산120번지	
27	기정	“	134-4	구	586	64	학교법인 대구학원	경북 고령군 고령읍 지산리 산120번지	
	변경	“	134-4	구	586	145	학교법인 대구학원	경북 고령군 고령읍 지산리 산120번지	사업시행구역 증설로 인한 면적증가(81㎡)
28	기정	“	134-5	구	219	219	학교법인 대구학원	경북 고령군 고령읍 지산리 산120번지	
29	기정	“	134-6	임	10	10	학교법인 대구학원	경북 고령군 고령읍 지산리 산120번지	
30	기정	“	134-7	구	61	61	학교법인 대구학원	경북 고령군 고령읍 지산리 산120번지	
31	기정	“	135-1	유지	228	228	학교법인 대구학원	경북 고령군 고령읍 지산리 산120번지	
32	기정	“	135-2	잡	528	528	학교법인 대구학원	경북 고령군 고령읍 지산리 산120번지	
33	기정	“	135-3	잡	37	37	학교법인 대구학원	경북 고령군 고령읍 지산리 산120번지	
34	기정	“	136-1	유지	975	975	학교법인 대구학원	경북 고령군 고령읍 지산리 산120번지	
35	기정	“	136-2	유지	602	602	학교법인 대구학원	경북 고령군 고령읍 지산리 산120번지	
36	기정	“	136-4	전	43	43	학교법인 대구학원	경북 고령군 고령읍 지산리 산120번지	
37	기정	“	137	답	281	281	학교법인 대구학원	경북 고령군 고령읍 지산리 산120번지	
38	기정	“	138-1	유지	1,498	1,498	학교법인 대구학원	경북 고령군 고령읍 지산리 산120번지	
39	기정	“	139-1	유지	192	192	학교법인 대구학원	경북 고령군 고령읍 지산리 산120번지	
40	기정	“	1330-5	구	597	597	학교법인 대구학원	경북 고령군 고령읍 지산리 산120번지	
41	기정	“	1429-4	학	8,050	8,050	학교법인 대구학원	경북 고령군 고령읍 지산리 산120번지	1단계
42	기정	“	산38-28	임	109,865	355	학교법인 대구학원	경북 고령군 고령읍 지산리 산120번지	1단계
	변경	“	산38-28	임	109,865	392	학교법인 대구학원	경북 고령군 고령읍 지산리 산120번지	사업시행구역 증설로 인한 면적증가(37㎡)
43	기정	“	산53-4	임	123	123	학교법인 대구학원	경북 고령군 고령읍 지산리 산120번지	
44	기정	“	산67	임	109,178	7,506	학교법인 대구학원	경북 고령군 고령읍 지산리 산120번지	
	변경	“	산67	임	109,178	7,099	학교법인 대구학원	경북 고령군 고령읍 지산리 산120번지	사업시행구역 축소로 인한 면적감소(-407㎡)
45	기정	삼계동	산70-5	임	595	595	학교법인 대구학원	경북 고령군 고령읍 지산리 산120번지	
46	기정	“	산70-8	임	1,927	1,927	학교법인 대구학원	경북 고령군 고령읍 지산리 산120번지	
47	기정	“	산70-10	임	389	389	학교법인 대구학원	경북 고령군 고령읍 지산리 산120번지	
합 계	기 정		47필		335,551	123,837			
	변 경		47필		335,551	123,521			감)316

김해도시관리계획(구산지구 지구단위계획) 결정(변경) 및 지형도면 고시

1. 김해도시관리계획(구산지구 지구단위계획) 결정(변경) 사항에 대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0조, 제32조, 「같은 법 시행령」 제25조 및 「토지이용규제기본법」 제8조에 따라 아래와 같이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 및 지형도면을 고시합니다.
2. 관계도서는[지형도면은 토지이용규제정보시스템(<http://uris.mltm.go.kr>)에서 열람가능] 김해시청 도시계획과 (☎ 330-3594)에 비치하고 일반인 및 이해관계인에게 보입니다.

2020. 2. 21.

김 해 시 장

1. 도시관리계획(구산지구 지구단위계획) 결정 (변경) 조서

- 가. 지구단위계획구역 결정(변경) : 변경없음
- 나. 용도지역·용도지구에 관한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 : 변경없음
- 다. 토지이용에 관한 결정(변경) : 변경

구 분	면 적 (㎡)			구성비(%)	비고
	기정	변경	변경후		
계	171,207.0	-	171,207.0	100.0	
주거용지	99,538.6	-	99,538.6	58.1	
공동주택용지	85,749.4	-	85,749.4	50.0	
단독주택용지	13,789.2	-	13,789.2	8.1	
도시기반시설용지	71,668.4	-	71,668.4	41.9	
도로	49,919.6	증) 247.0	50,166.6	29.3	법면포함
보행자전용도로	237.4	-	237.4	0.1	1개소
초등학교	10,489.5	감) 10,489.5	-	-	-
공공청사	-	증) 10,242.5	10,242.5	6.0	1개소
공원	9,323.0	-	9,323.0	5.5	3개소
주차장	1,698.9	-	1,698.9	1.0	1개소

※ 기정은 김해도시관리계획(구산지구 지구단위계획) 경미한 결정(변경) 및 지형도면 고시 내용임 (2019.03.08. 김해시고시 제2019-38호)

라. 기반시설의 배치와 규모에 관한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 : 변경 부분에 한함

1) 학교 결정(변경) 조서

구분	도면표시 번호	시설명	시설의 종류	위치	면 적(㎡)			최초 결정일	비고
					기정	변경	변경후		
폐지	39	학교	초등학교	구산동 1075번지	10,489.5	감) 10,489.5	-	2008.1.24.	

2) 학교 결정(변경) 사유서

도면표시번호	시설명	변경내용	변경사유
39	학교	<ul style="list-style-type: none"> 폐지 - 위치 : 구산동 1075번지 - 면적 : 10,489.5㎡ → 0㎡, 감) 10,489.5㎡ 	<ul style="list-style-type: none"> 경상남도 김해교육지원청의 학교용지 폐지 및 김해교육지원청 이전 계획에 따라 지구단위계획구역내 공공청사를 결정하고자 지구단위계획으로 학교 폐지

3) 공공청사 결정 조서

구분	도면표시번호	시설명	시설의종류	위치	면적(㎡)			최초결정일	비고
					기정	변경	변경후		
신설	1-36	김해교육지원청	공공청사	구산동 1075	-	증) 10,242.5	10,242.5	-	

4) 공공청사 결정 사유서

도면표시번호	시설명	변경내용	변경사유
1-36	김해교육지원청	<ul style="list-style-type: none"> 신설 - 위치 : 구산동 1075번지 - 면적 : 0㎡ → 10,242.5㎡, 증) 10,242.5㎡ 	<ul style="list-style-type: none"> 국가지정문화재보호구역 정비 계획에 따라 김해교육지원청 이전 계획으로 지구단위계획으로 공공청사 결정

5) 도로 결정(변경) 조서

구분	규모				기능	연장(m)	기점	종점	사용형태	주요경과지	최초결정일	비고
	등급	류별	번호	폭원(m)								
기정	중로	3	28	12	집산도로	194	사업지구구역계	소로3-280	일반도로	-	2005. 10. 6	-
변경	중로	3	28	12~15.5	집산도로	194	사업지구구역계	소로3-280	일반도로	-	2005. 10. 6	일부구간 폭원확장

6) 도로 결정(변경) 사유서

변경전도로명	변경후도로명	변경내용	변경사유
중로 3-28	중로 3-28	<ul style="list-style-type: none"> 일부구간 폭원 확장 - 규모 : L=194m (변경없음) B=12m → 12~15.5m 	<ul style="list-style-type: none"> 공공청사 신설에 따라 원활한 교통 처리를 위하여 진출입차로 확보하기 위해 일부 구간 폭원 확장

7) 그 외 기반시설 : 변경없음

마. 가구 및 획지의 규모와 조성에 관한 결정(변경) : 변경 부문에 한함

1) A1 및 도로

가구번호	면적(㎡)		번호	획지번호		비고
	기정	변경		면적(㎡)		
				기정	변경	
A1	38,806.9	38,559.6	1	1,522.9	1,522.9	어린이공원
			2	26,794.2	26,794.2	공동주택용지
			3	10,489.5	10,242.5	초등학교 → 공공청사
도로	50,157.0	50,404.0	-	50,157.0	50,404.0	일부구간 폭원 확장

2) 그 외 가구 및 획지 : 변경없음

바. 건축물의 용도 및 건폐율, 용적률 및 높이에 관한 결정(변경) : 변경없음

1) 공동주택용지 : 변경

위치	구분	계획내용	
		기정	변경
A1-2, A2, A3-1	건축선	· 중도 2-63호선변 건축한계선 3m · 초등학교변 건축한계선 5m	· 중도 2-63호선변 건축한계선 3m · 공공청사변 건축한계선 5m
	용도, 건폐율, 용적률, 높이, 배치, 형태, 색채	변 경 없 음	

2) 초등학교 용지: 폐지, 공공청사용지: 신설

위치		구분	계획내용	
기정	변경		기정	변경
A1-3 (초등학교 용지)	A1-3 (공공 청사 용지)	용도	· 지정용도: 초등학교 · 불허용도: 학교 및 부속건물 이외의 건축물	· 지정용도: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14호의 업무시설중 공공업무시설 및 부대·편익시설 ※ 부대·편익시설: 도시·군계획시설의 결정·구조 및 설치 기준에 관한 규칙 (2019.8.7.) 제6조의 2 및 제95조제2항의 규정에 따름 · 불허용도: 지정용도 이외의 건축물
		건폐율	· 시 도시계획조례에 따름	· 60% 이하
		용적률	· 시 도시계획조례에 따름	· 220% 이하
		높이	· 최고층수 5층	· 최고층수 5층
		배치	· 부지여건을 고려해 건축물의 향은 남향·동향 배치가 되도록 권장	좌동
		형태	· 건축물의 외벽마감은 미려한 형태로 전면을 구성하고 그 외의 면도 전면과 동일한 기준이 되도록 권장	좌동
		색채	· 원색의 사용을 금하며, 활동적이고 따뜻한 밝은 색조 계열 사용 권장	좌동
건축선	· 관련 법규에 의함	좌동		

3) 그 외 용지 : 변경없음

사. 기타 사항에 관한 결정(변경) 조서 : 변경 부문에 한함

1) 공공 조경에 관한 결정: 변경

구분	위치 (획지번호)	계획내용	비고
기정	A1-3	공공조경 : 3~5m	시설 경계 전체
변경	A1-3	공공조경 : 3~5m	공동주택 접면부(5m), 중로2-63호선변(3m)

2) 그 외 사항 : 변경없음

2. 구산지구 지구단위계획 시행 지침(변경) : 게재 생략

3. 도시관리계획(구산지구 지구단위계획) 결정(변경) 관련 도면 : 게재 생략.

김해도시관리계획(안막지구 지구단위계획) 결정(변경) 및 지형도면 고시

1. 김해도시관리계획(안막지구 지구단위계획) 결정(변경) 사항에 대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0조, 제32조, 「같은 법 시행령」 제25조 및 「토지이용규제기본법」 제8조에 따라 아래와 같이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 및 지형도면을 고시합니다.
2. 관계도서는[지형도면은 토지이용규제정보시스템(<http://uris.mltm.go.kr>)에서 열람가능] 김해시청 도시계획과 (☎ 330-3594)에 비치하고 일반인 및 이해관계인에게 보입니다.

2020. 2. 21.

김 해 시 장

1. 도시관리계획(안막지구 지구단위계획) 결정 (변경) 조서

- 가. 지구단위계획구역 결정(변경) : 변경없음
- 나. 용도지역·용도지구에 관한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 : 변경없음
- 다. 토지이용에 관한 결정(변경) : 변경

구 분	면적(m ²)			구성비 (%)	비고
	기 정	변 경	변경후		
계	242,040	-	242,040	100.0	
주거용지	195,716	감) 900	194,816	80.5	
공공시설용지	46,324	증) 900	47,224	19.5	
주 차 장	4,680	-	4,680	1.9	
공공청사	1,214	증) 900	2,114	0.9	
학 교	11,960	-	11,960	4.9	
도 로	28,470	-	28,470	11.8	

라. 기반시설의 배치와 규모에 관한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 : 변경 부분에 한함

1) 공공·문화체육시설 결정(변경) 조서

가) 공공청사 결정(변경)

구분	도면표시 번호	시설명	시설의 종류		위 치	면 적(m ²)			최초 결정일	비고
			기정	변경		기정	변경	변경후		
기정	29	공공청사	보건지소	변경없음	대동면 초정리 13-483 일원	320	-	320	2002.6.5	
변경	30	공공청사	소방파출소	119 안전센터	대동면 초정리 952-460외 1필지	894	증) 900	1,794	2002.6.5.	

나) 공공청사 결정(변경) 사유서

도면표 시번호	시설명	변경내용	변경사유
30	공공 청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변경 - 위치: 대동면 초정리 952-460 외 1필지 - 면적 : 894㎡ → 1,794㎡, 증) 900㎡ - 시설 종류명 변경: 소방파출소 → 119안전센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급증하는 소방수요 대처 및 원활한 소방 민원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대동 119안전센터 신축하고자 지구단위계획으로 공공청사 변경 결정

2) 그 외 기반시설 : 변경 없음

마. 가구 및 획지의 규모와 조성에 관한 결정(변경) : 변경없음

바. 건축물의 용도 및 건폐율,용적률 및 높이에 관한 결정(변경) : 변경없음

2. 도시관리계획(안락지구 지구단위계획) 결정(변경) 관련 도면 : 게재생략.

김해도시계획시설(울하체육공원) 조성계획 결정(변경) 및 지형도면 고시

김해도시계획시설(울하체육공원)에 대하여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제16조의2,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0조 및 제32조, 「토지이용규제기본법」 제8조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원조성계획을 결정(변경)하고 지형도면을 고시합니다. 관련도서는 김해시 도시계획과(☎055-330-6924)에 비치하여 일반인에게 보입니다.

2020년 02월 21일

김 해 시 장

1. 도시계획시설(공원) 결정조서

구분	도면 표시 번호	공원명	시설의 세분	위 치	면 적(m ²)			최초결정일	비고
					기 정	변 경	변경후		
기정	13	울하 체육공원	체육 공원	관동동 1123-1	34,248.4	-	34,248.4	2004. 01. 02 (경상남도 고시 제2003-372호)	

2. 공원조성계획 결정(변경)

가. 공원조성계획결정(변경)조서

1) 총괄표(변경)

구 분		면 적 (m ²)			비 고
		기 정	변 경	변경 후	
공 원 면 적		34,248.4	-	34,248.4	
시 설 면 적 계		15,399.5	감) 66.4	15,333.1	기정시설율 : 44.96% 변경시설율 : 44.77%
건 축 면 적	바닥면적	1,833.32	증) 27.29	1,860.61	기정 건폐율 : 5.35% 변경 건폐율 : 5.43%
	연면적	2,207.10	증)120.94	2,328.04	기정 용적율 : 6.44% 변경 용적율 : 6.79%

도면 표시 번호	공 원 명	변 경 내 용	변 경 사 유
13	울하체육공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공원조성계획 변경(면적)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시설면적 : 15,399.5m² → 15,333.1m² - 녹지면적 : 18,848.9m² → 18,915.3m² - 바닥면적 : 1,833.32m² → 1,860.61m² - 연 면 적 : 2,207.10m² → 2,328.04m²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울하체육공원 이용자 증가에 따른 수용 증축을 만족시키기 위해 실내체육관을 증축하여 스피닝자전거장을 조성코자 하며, 시공현황 및 건축물대장 반영에 따른 공원시설면적 및 건축면적을 올바르게 정정코자 함.

2) 토지이용계획표(변경)

구분	면적(m ²)			비고
	기정	변경	변경 후	
총계	34,248.4	-	34,248.4	
공원시설	15,399.5	감) 66.4	15,333.1	
도로 및 광장	3,306.8	감) 3.0	3,303.8	
운동시설	9,620.0	감) 63.4	9,556.6	
교양시설	862.4	-	862.4	
편익시설	1,453.6	-	1,453.6	
공원관리시설	156.7	-	156.7	
녹지	18,848.9	증) 66.4	18,915.3	

나. 세부조성계획 변경조서

1) 도로 및 광장(변경)

구분	번호	시설의 세분	위치	부지면적(m ²)	건축규모(m ²)		규모	비고
					바닥면적	연면적		
기정	소계			3,306.8	-	-	-	
변경	소계			3,303.8	-	-	-	
기정	1	도로	관동동 1123-1	1,499.5	-	-	-	
변경	1	도로	관동동 1123-1	1,496.5	-	-	-	면적정정(시공현황 반영)
기정	2	광장-1	관동동 1123-1	1,486.5	-	-	-	
기정	3	광장-2	관동동 1123-1	320.8	-	-	-	

2) 운동시설(변경)

구분	번호	시설의 세분	위치	부지면적(m ²)	건축규모(m ²)		규모	비고
					바닥면적	연면적		
기정	소계			9,620.0	1,631.82	2,005.60	-	
변경	소계			9,556.6	1,631.70	2,126.56	-	
기정	4	족구장	관동동 1123-1	1,380.8	-	-	-	
변경	4	족구장	관동동 1123-1	1,397.4	-	-	-	면적정정(시공현황 반영)
기정	5	풋살경기장	관동동 1123-1	2,325.6	-	-	-	
기정	6	게이트볼장	관동동 1123-1	783.3	-	-	-	
기정	7	베드민턴장	관동동 1123-1	680.1	-	-	-	
기정	8	농구장	관동동 1123-1	1,139.1	-	-	-	
기정	9	체력단련장	관동동 1123-1	640.3	-	-	-	
기정	10	실내체육관	관동동 1123-1	2,590.8	1,631.82	2,005.60	지하1층 지상2층	
변경	10	실내체육관	관동동 1123-1	2,590.8	1,631.70	2,126.56	지하1층 지상2층	실내체육관 증축 및 면적정정 건축물 대장 반영)

3) 교양시설(변경없음)

구분	번호	시설의 세분	위 치	부지 면적 (m ²)	건축규모(m ²)		규모	비고
					바닥면적	연면적		
기정	소 계			862.4	114.00	114.00	-	
기정	11	유적시설1	관동동 1123-1	123.3	-	-	-	
기정	12	유적시설2	관동동 1123-1	80.5	-	-	-	
기정	13	유적시설3	관동동 1123-1	247.3	-	-	-	
기정	14	모형전시관	관동동 1123-1	411.3	114.00	114.00	1동/1층	

4) 편익시설(변경없음)

구분	번호	시설의 세분	위 치	부지 면적 (m ²)	건축규모(m ²)		규모	비고
					바닥면적	연면적		
기정	소 계			1,453.6	-	-	-	
기정	15	주차장-1	관동동 1123-1	953.6	-	-	-	
기정	16	주차장-2	관동동 1123-1	500.0	-	-	-	

5) 공원관리시설(변경)

구분	번호	시설의 세분	위 치	부지 면적 (m ²)	건축규모(m ²)		규모	비고
					바닥면적	연면적		
기정	소 계			156.7	87.5	87.5	-	
변경	소 계			156.7	114.91	87.48	-	
기정	17	관리사무소	관동동 1123-1	156.7	87.5	87.5	2동/1층	
변경	17	관리사무소	관동동 1123-1	156.7	114.91	87.48	2동/1층	면적정정 (건축물대장 반영)

6) 녹지(변경)

구분	번호	시설의 세분	위 치	부지 면적 (m ²)	건축규모(m ²)		규모	비고
					바닥면적	연면적		
기정	18	녹지	전지역	18,848.9	-	-	-	
변경	18	녹지	전지역	18,915.3	-	-	-	

다. 세부도로조서(변경)

1) 도로조서 총괄표

구 분		합 계		소 로	
		연장(m)	면적(m ²)	연장(m)	면적(m ²)
합계	기정	657.0	1,499.5	657.0	1,499.5
	변경	655.5	1,496.5	655.5	1,496.5
1류	기정	-	-	-	-
	변경	-	-	-	-
2류	기정	-	-	-	-
	변경	-	-	-	-
3류	기정	657.0	1,499.5	657.0	1,499.5
	변경	655.5	1,496.5	655.5	1,496.5

2) 소로

구분	등급	류별	번호	폭원	연장(m)	면적(m ²)	기능	기점	종점	비고
기정	소 계				657.0	1,499.5	-	-	-	
변경	소 계				655.5	1,496.5	-	-	-	연장 및 면적정정 (시공현황 반영)
기정	소로	3	1	3	171.0	513.0	진입로	서측경계	북측경계	
기정	소로	3	2	2	50.5	101.0	연결로	서측경계	실내체육관	
기정	소로	3	3	2	60.0	120.0	진입로	서측경계	소로3-1	
기정	소로	3	4	3	14.5	43.5	연결로	소로3-1	모형전시관	
기정	소로	3	5	2	46.0	92.0	연결로	소로3-1	유적시설-1	
기정	소로	3	6	2	126.0	252.0	연결로	소로3-5	풋살경기장	
변경	소로	3	6	2	137.5	275.0	연결로	소로3-5	풋살경기장	
기정	소로	3	7	2	172.5	344.0	연결로	소로3-8	풋살경기장	
변경	소로	3	7	2	170.0	340.0	연결로	소로3-6	풋살경기장	
기정	소로	3	8	2	17.0	34.0	산책로	소로3-6	족구장	
변경	소로	3	8	2	6.0	12.0	연결로	소로3-6	족구장	

3. 관계도면 : 실음생략

김해시 고시 제2020 - 36호

김해율하2지구 택지개발사업 지구지정 변경(4차), 개발계획 변경(7차) 및 실시계획 변경(6차)승인에 따른 지형도면 고시

경상남도 고시 제2019-578호(2019.12.24.)로 지구지정 변경(4차), 개발계획 변경(7차) 및 실시계획 변경(6차) 승인된 김해율하2지구 택지개발사업에 대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2조 및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8조 같은법 시행령 제7조의 규정에 의거 김해율하2지구 택지개발사업 지구지정 변경(4차), 개발계획 변경(7차) 및 실시계획 변경(6차) 승인에 대한 지형도면을 고시합니다. 지형도면 등 이와 관련된 전산자료는 김해시청 도시개발과(☎ 055-330-3613)와 한국토지주택공사 경남지역본부 김해사업단(☎055-329-2773) 및 토지이용 규제정보 서비스(<http://luris.molit.go.kr>)에서 열람 가능합니다.

2020년 2월 21일

김 해 시 장

- 붙 임 : 1. 김해율하2지구 택지개발사업 결정(변경) 조서
2. 김해율하2지구 택지개발사업 결정(변경) 지형도면(게재생략)

붙임 1. 김해율하2지구 택지개발사업 결정(변경) 조서

1. 지역·지구 등의 명칭 : 김해율하2지구 택지개발사업
2. 지역·지구 등의 위치 : 경상남도 김해시 장유동, 율하동 일원
3. 지역·지구 등의 면적 : 1,142,476㎡→1,142,899.1㎡(증. 423.1㎡)
4. 지역·지구 등의 지정(변경)일자 : 경상남도고시 제2019-578호(2019.12.24)
5. 지형도면 등의 고시 예정(공보게재)일 : 2020. 2. 21
6. 지형도면 등 관련자료의 열람방법
 - 지형도면 등 이와 관련된 관계도서는 김해시청 도시개발과(055-330-3613)에 비치하여 일반인에게 보이고 있습니다.
7. 용도지역에 관한 도시관리계획결정(변경)조서
 - 용도지역 결정(변경)조서(변경)

구 분	면 적 (㎡)						구성비(%)		비 고	
	기 정			변 경			기정	변경		
	계	1단계	2단계	계	1단계	2단계				
계	1,142,476.0	917,920.0	224,556	1,142,899.1	917,920.0	224,979.1	100.0	100.0		
주거지역	소 계	787,636.4	663,746.4	123,890	786,219.6	662,412.4	123,807.2	68.9	68.8	
	제1종일반주거지역	227,395.5	218,319.5	9,076	225,333.0	216,307.9	9,025.1	19.9	19.7	
	제2종일반주거지역	42,046.1	29,246.1	12,800	43,059.6	30,306.6	12,753.0	3.7	3.8	
	제3종일반주거지역	518,194.8	416,181.8	102,013	517,827.0	415,797.9	102,029.1	45.3	45.3	
상업지역	소 계	62,598.5	62,598.5	-	63,874.2	63,874.2	-	5.5	5.6	
	일반상업지역	62,598.5	62,598.5	-	63,874.2	63,874.2	-	5.5	5.6	
녹지지역	소 계	292,241.1	191,574.1	100,667	292,805.3	191,633.4	101,171.9	25.6	25.6	
	자연녹지지역	292,241.1	191,574.1	100,667	292,805.3	191,633.4	101,171.9	25.6	25.6	

주) 기정 : 김해시 고시 제2019-346호(2019.12.27) 김해율하2지구 택지개발사업 지구지정변경(3차), 개발계획변경(6차) 및 실시계획 변경(5차) 승인에 따른 지형도면고시

8. 용도지구에 관한 도시관리계획결정(변경)조서

해당사항 없음

9. 도시기반시설의 배치와 규모에 관한 도시관리계획결정(변경)조서

1) 교통시설(변경)

가) 도로(변경)

■ 총괄표

(기정)

유별	합계			1류			2류			3류			
	노선수	연장 (m)	면적 (㎡)	노선수	연장 (m)	면적 (㎡)	노선수	연장 (m)	면적 (㎡)	노선수	연장 (m)	면적 (㎡)	
합계	120	16,797	427,579.9	7	3,001	265,231.1	64	10,153	122,700.2	49	3,643	382,245.6	
	120	(15,952) ¹⁾	(201,868.9)	7	(2,156)	(29,520.1)	-	-	-	-	-	-	
일반 도로	83	14,835	414,031.8	7	3,001	265,241.1	62	10,109	122,157.4	14	1,725	26,633.3	
	83	(13,990)	(188,320.8)	7	(2,156)	(39,530.1)	-	-	-	-	-	-	
	광로	-	-	-	-	-	-	-	-	-	-	-	
	대로	3	2,873	278,945.9	1	1,211	226,579.1	1	982	32,666.7	1	680	17,060
		3	(2,028)	(53,234.9)	1	(366)	(868.1)	-	-	-	-	-	-
	중로	13	3,706	65,917.9	2	1,310	33,522.4	10	2,218	30,202.1	1	178	2,193.4
	소로	67	8,256	69,168.0	4	480	5,139.6	51	6,909	59,288.6	12	867	4,739.8
보행자 전용도로	37	1,962	12,155.1	-	-	-	2	44	542.8	35	1,918	11,612.3	
중로	4	534	6,739.1	-	-	-	1	28	413.2	3	506	6,325.9	
소로	33	1,428	5,416.0	-	-	-	1	16	129.6	32	1,412	5,286.4	
기타 ²⁾	-	-	1,403	-	-	-	-	-	-	-	-	-	

주) 기정 : 김해시 고시 제2019-346호(2019.12.27) 김해울하2지구 택지개발사업 지구지정변경(3차), 개발계획변경(6차) 및 실시계획 변경(5차) 승인에 따른 지형도면고시

1) 도로연장 내용 중 ()는 울하2지구 내 연장 및 면적임

2) 기타는 가각 및 완화차선 면적임

(변경)

유별	합계			1류			2류			3류			
	노선수	연장 (m)	면적 (㎡)	노선수	연장 (m)	면적 (㎡)	노선수	연장 (m)	면적 (㎡)	노선수	연장 (m)	면적 (㎡)	
합계	119	16,909	444,179.7	7	3,001	265,395.5	64	10,168	124,094.2	48	3,740	38,829.7	
	119	(16,064) ¹⁾	(218,468.7)	7	(2,156)	(39,684.5)	-	-	-	-	-	-	
일반 도로	82	14,832	415,693.9	7	3,001	265,395.5	62	10,124	123,551.4	13	1,707	26,747	
	82	(13,987)	(189,982.9)	7	(2,156)	(39,684.5)	-	-	-	-	-	-	
	광로	-	-	-	-	-	-	-	-	-	-	-	
	대로	3	2,873	278,945.9	1	1,211	226,579.1	1	982	32,666.7	1	680	19,700.1
		3	(2,028)	(53,234.9)	1	(366)	(868.1)	-	-	-	-	-	-
	중로	13	3,706	66,050.8	2	1,310	33,571.6	10	2,218	30,285.8	1	178	2,193.4
	소로	66	8,253	70,697.2	4	480	5,244.8	51	6,924	60,598.9	11	849	4,853.5
보행자 전용도로	37	2,077	12,625.5	-	-	-	2	44	542.8	35	2,033	12,082.7	
중로	4	534	6,739.1	-	-	-	1	28	413.2	3	506	6,325.9	
소로	33	1,543	5,886.4	-	-	-	1	16	129.6	32	1,527	5,756.8	
기타 ²⁾	-	-	15,860.3	-	-	-	-	-	-	-	-	-	

1) 도로연장 내용 중 ()는 울하2지구 내 연장 및 면적임

2) 기타는 가각 및 완화차선 면적임

■ 도로 결정(변경)조서(변경)

구분	규모			폭원 (m)	기능	연장 (m)	기점	종점	사용 형태	주요 경과지	최초 결정일	비고
	등급	류별	번호									
기정	대로	1	3-2	35~38	주간선	6,474 (366)	광로2-1-1	대로1-3-4	일반도로	"	"	1단계
기정	대로	2	3-8	30	주간선	982	대로1-3-2	율하2지구구역계	일반도로			1단계
기정	대로	3	3-12	25	주간선	680	대로1-3-2	대로2-3-8	일반도로			1단계
기정	중로	1	43	21	보조간선	1,211	대로2-3-8	대로2-3-8	일반도로			1단계
기정	중로	1	44	23	국지도로	99	중로1-43	소로2-345	일반도로			2단계
기정	중로	2	23	15	보조간선	657	대로3-3-12	대로1-3-2	일반도로			1,2단계
기정	중로	2	24	15	집산도로	184	중로2-23	중로2-33	일반도로			1단계
기정	중로	2	25	15	집산도로	246	중로2-24	중로2-24	일반도로			1단계
기정	중로	2	26	15	집산도로	27	대로3-3-12	중로2-25	일반도로			1단계
기정	중로	2	27	15	집산도로	27	대로3-3-12	중로2-28	일반도로			1단계
기정	중로	2	28	15	집산도로	390	중로2-30	중로2-30	일반도로			1단계
기정	중로	2	29	15	집산도로	120	중로2-30	중로2-28	일반도로			1단계
기정	중로	2	30	15	집산도로	178	대로1-3-2	중로2-28	일반도로			1단계
기정	중로	2	31	15	보조간선	231	중로1-43	소로3-82	일반도로			1단계
기정	중로	2	32	15	집산도로	158	대로2-3-8	중로3-50	일반도로			1단계
기정	중로	2	33	15	보행자도로	28	대로1-3-2	중로2-24	특수도로			1단계
기정	중로	3	49	12	집산도로	178	대로2-3-8	대로2-3-8	일반도로			1단계
기정	중로	3	50	12	보행자도로	130	중로2-32	경관녹지3-58	특수도로			1단계
기정	중로	3	51	12	보행자도로	22	대로2-3-8	중로3-49	특수도로			1단계
기정	중로	3	52	12	보행자도로	354	중로1-43	중로3-49	특수도로			1단계
기정	소로	1	108	10	국지도로	168	중로2-23	소로3-52	일반도로			1단계
기정	소로	1	109	10	국지도로	147	중로1-43	소로2-355	일반도로			1단계
기정	소로	1	110	10	국지도로	70	중로2-23	소로3-80	일반도로			1단계
기정	소로	1	135	10	국지도로	95	소로 2-359	율하2지구구역계	일반도로			2단계
기정	소로	2	313	8	국지도로	97	율하2지구구역계	중로2-23	일반도로			2단계
기정	소로	2	314	8	국지도로	20	중로2-23	소로2-316	일반도로			2단계
기정	소로	2	315	8	국지도로	20	중로2-23	소로2-316	일반도로			1단계
기정	소로	2	316	8	국지도로	297	소로2-317	소로2-313	일반도로			1,2단계
기정	소로	2	317	8	국지도로	99	중로2-23	소로3-49	일반도로			1,2단계
변경	소로	2	317	8	국지도로	114	중로2-23	소로3-49	일반도로			1,2단계
기정	소로	2	318	8	국지도로	16	중로2-23	소로2-319	일반도로			1단계
기정	소로	2	319	8	국지도로	276	소로1-108	소로3-51	일반도로			1단계
기정	소로	2	320	8	국지도로	90	소로2-324	소로2-319	일반도로			1단계
기정	소로	2	321	8	국지도로	97	소로2-324	소로2-319	일반도로			1단계
기정	소로	2	322	8	국지도로	97	소로2-324	소로2-319	일반도로			1단계
기정	소로	2	323	8	국지도로	149	소로1-108	소로2-319	일반도로			1단계
기정	소로	2	324	8	국지도로	152	소로2-319	소로2-323	일반도로			1단계
기정	소로	2	325	8	국지도로	152	소로2-329	소로2-330	일반도로			1단계
기정	소로	2	326	8	국지도로	114	소로2-330	소로2-325	일반도로			1단계
기정	소로	2	327	8	국지도로	114	소로2-330	소로2-325	일반도로			1단계
기정	소로	2	328	8	국지도로	114	소로2-330	소로2-325	일반도로			1단계
기정	소로	2	329	8	국지도로	193	중로2-24	소로1-108	일반도로			1단계

구분	규모			폭원 (m)	기능	연장 (m)	기점	종점	사용 형태	주요 경과지	최초 결정일	비고
	등급	류별	번호									
기정	소로	2	330	8	국지도로	314	소로2-329	소로1-108	일반도로			1단계
기정	소로	2	331	8	국지도로	31	중로2-24	소로2-330	일반도로			1단계
기정	소로	2	332	8	국지도로	173	대로2-3-8	대로2-3-8	일반도로			1단계
기정	소로	2	333	8	국지도로	18	중로2-31	소로2-334	일반도로			1단계
기정	소로	2	334	8	국지도로	182	소로2-343	소로2-343	일반도로			1단계
기정	소로	2	335	8	국지도로	86	소로2-334	소로2-339	일반도로			1단계
기정	소로	2	336	8	국지도로	86	소로2-334	소로2-339	일반도로			1단계
기정	소로	2	337	8	국지도로	86	소로2-334	소로2-339	일반도로			1단계
기정	소로	2	338	8	국지도로	86	소로2-334	소로2-339	일반도로			1단계
기정	소로	2	339	8	국지도로	164	소로2-343	소로2-343	일반도로			1단계
기정	소로	2	340	8	국지도로	65	소로2-339	소로2-343	일반도로			1단계
기정	소로	2	341	8	국지도로	94	소로2-339	소로2-343	일반도로			1단계
기정	소로	2	342	8	국지도로	135	소로2-339	소로2-343	일반도로			1단계
기정	소로	2	343	8	국지도로	616	중로2-31	중로2-31	일반도로			1단계
기정	소로	2	344	8	국지도로	26	대로2-3-8	소로2-343	일반도로			1단계
기정	소로	2	345	9	국지도로	114	중로1-44	소로3-47	일반도로			2단계
기정	소로	2	346	8	국지도로	67	대로2-3-8	울해2지구구역계	일반도로			2단계
기정	소로	2	347	8	국지도로	189	소로1-109	소로2-355	일반도로			1단계
기정	소로	2	348	8	국지도로	145	소로2-350	소로2-355	일반도로			1단계
기정	소로	2	349	8	국지도로	145	소로2-350	소로2-355	일반도로			1단계
기정	소로	2	350	8	국지도로	104	소로2-347	소로2-355	일반도로			1단계
기정	소로	2	351	8	국지도로	96	소로2-354	소로2-355	일반도로			1단계
기정	소로	2	352	8	국지도로	105	소로2-351	소로2-354	일반도로			1단계
기정	소로	2	353	8	국지도로	125	소로2-351	소로2-354	일반도로			1단계
기정	소로	2	354	8	국지도로	224	소로1-109	소로2-355	일반도로			1단계
기정	소로	2	355	8	국지도로	553	소로2-363	소로3-73	일반도로			1단계
기정	소로	2	356	8	국지도로	76	소로2-359	소로3-79	일반도로			1단계
기정	소로	2	357	8	국지도로	105	소로2-359	소로2-356	일반도로			1단계
기정	소로	2	358	8	국지도로	109	소로2-359	소로2-356	일반도로			1단계
기정	소로	2	359	8~10	국지도로	237	소로2-363	중로1-43	일반도로			1단계
기정	소로	2	360	8	국지도로	118	소로1-110	소로2-317	일반도로			1단계
기정	소로	2	361	8	국지도로	134	소로2-360	소로1-110	일반도로			1단계
기정	소로	2	362	8	국지도로	160	소로1-110	소로1-110	일반도로			1단계
기정	소로	2	363	8~10	국지도로	158	중로1-43	소로2-355	일반도로			1단계
기정	소로	2	364	8	보행자도로	16	소로2-332	근린공원3-63	특수도로			1단계
기정	소로	3	46	6	국지도로	18	소로2-317	울해2지구구역계	일반도로			2단계
기정	소로	3	47	6	국지도로	144	울해2지구구역계	울해2지구구역계	일반도로			2단계
변경	소로	3	47	6	국지도로	138	울해2지구구역계	울해2지구구역계	일반도로			2단계
기정	소로	3	48	6	국지도로	11	소로2-346	울해2지구구역계	일반도로			2단계
변경	소로	3	48	6	국지도로	14	소로2-346	울해2지구구역계	일반도로			2단계
폐지	소로	3	49	6	국지도로	15	소로2-317	울해2지구구역계	일반도로			2단계
기정	소로	3	50	6	국지도로	207	소로2-355	울해2지구구역계	일반도로			2단계
기정	소로	3	51	4	보행자도로	21	대로1-3-2	소로2-319	특수도로			2단계
기정	소로	3	52	4	보행자도로	31	대로1-3-2	소로1-108	특수도로			2단계

구분	규모			폭원 (m)	기능	연장 (m)	기점	종점	사용 형태	주요 경과지	최초 결정일	비고
	등급	류별	번호									
기정	소로	3	53	5	보행자도로	28	대로1-3-2	중로2-25	특수도로			1단계
기정	소로	3	54	4	보행자도로	32	소로1-108	소로2-324	특수도로			1단계
기정	소로	3	55	5	보행자도로	46	중로2-25	중로2-24	특수도로			1단계
기정	소로	3	56	4	보행자도로	16	중로2-23	소로2-319	특수도로			1단계
기정	소로	3	57	4	보행자도로	16	중로2-23	소로2-319	특수도로			1단계
기정	소로	3	58	4	보행자도로	16	중로2-23	소로2-330	특수도로			1단계
기정	소로	3	59	4	국지도로	27	중로2-24	소로2-330	일반도로			1단계
기정	소로	3	60	5	보행자도로	30	중로2-23	중로2-25	특수도로			1단계
기정	소로	3	61	4	보행자도로	20	중로2-23	소로2-316	특수도로			1단계
기정	소로	3	62	4	보행자도로	20	중로2-23	소로2-316	특수도로			1단계
기정	소로	3	63	5	보행자도로	27	대로1-3-2	중로2-28	특수도로			1단계
기정	소로	3	64	5	보행자도로	27	대로1-3-2	중로2-28	특수도로			1단계
기정	소로	3	65	5	보행자도로	55	중로2-28	중로2-29	특수도로			1단계
기정	소로	3	66	5	보행자도로	50	중로2-28	중로2-29	특수도로			1단계
기정	소로	3	67	4	보행자도로	7	소로2-332	근린공원3-63	특수도로			1단계
기정	소로	3	68	4	보행자도로	7	소로2-361	경관녹지3-45	특수도로			1단계
기정	소로	3	69	4	보행자도로	26	대로2-3-8	소로2-343	특수도로			1단계
기정	소로	3	70	4	보행자도로	26	대로2-3-8	소로2-343	특수도로			1단계
기정	소로	3	71	6	보행자도로	16	소로2-343	경관녹지3-56	특수도로			1단계
기정	소로	3	72	4	보행자도로	27	대로2-3-8	소로2-355	특수도로			1단계
기정	소로	3	73	4	보행자도로	8	소로2-355	경관녹지3-52	특수도로			1단계
기정	소로	3	74	4	보행자도로	15	소로2-347	경관녹지3-52	특수도로			1단계
기정	소로	3	75	6	보행자도로	15	소로2-347	경관녹지3-52	특수도로			1단계
기정	소로	3	76	6	보행자도로	15	소로2-354	경관녹지3-53	특수도로			1단계
기정	소로	3	77	4	보행자도로	10	소로2-354	경관녹지3-53	특수도로			1단계
기정	소로	3	78	6	보행자도로	17	소로2-354	경관녹지3-53	특수도로			1단계
기정	소로	3	79	4	보행자도로	10	중로1-43	소로2-356	특수도로			1단계
기정	소로	3	80	4	보행자도로	17	소로1-110	경관녹지3-45	특수도로			1단계
기정	소로	3	81	4	보행자도로	19	중로2-23	소로2-362	특수도로			1단계
기정	소로	3	82	3	보행자도로	384	중로2-31	소로2-345	특수도로			2단계
변경	소로	3	82	3	보행자도로	499	중로2-31	소로2-345	특수도로			2단계
기정	소로	3	83	3	보행자도로	358	소로3-47	근린공원3-64	특수도로			2단계
기정	소로	3	357	6	국지도로	222	소로3-47	울하지구역계	일반도로			2단계
기정	소로	3	358	4	국지도로	14	소로2-316	울하지구역계	일반도로			2단계
기정	소로	3	359	4	국지도로	7	소로2-316	울하지구역계	일반도로			2단계
기정	소로	3	360	4	국지도로	2	소로2-316	울하지구역계	일반도로			2단계
기정	소로	3	361	4	국지도로	7	소로2-316	울하지구역계	일반도로			2단계
기정	소로	3	362	4	국지도로	196	울하지구역계	울하지구역계	일반도로			2단계

■ 도로 결정(변경) 사유서(변경)

변경전도로명	변경후도로명	결정(변경)내용	결정(변경)사유
소로2-317	소로2-317	○ 변경 B=8m(변경없음) L=99m→114m(변경)	○ 소로3-49호선 폐지에 따른 중점부 선형연장
소로3-47	소로3-47	○ 변경 B=6m(변경없음) L=144m→138m(변경)	○ 확정측량 결과반영
소로3-48	소로3-48	○ 변경 B=6m(변경없음) L=11m→14m(변경)	○ 지구내외 단차로 인한 지형여건을 반영하기 위한 소로3-48호선 선형변경
소로3-49	-	○ 폐지 B=6m L=15m	○ 확정측량 결과에 따른 연접노선 소로2-317호선과 병합
소로3-82	소로3-82	○ 변경 B=3m(변경없음) L=384m→499m(변경)	○ 완충녹지3-78 신설에 따른 소로3-82호선 연장 변경

2) 주차장(변경)

■ 주차장 결정(변경)조서

구분	도면표시번호	시설명	위 치		면 적(㎡)						최초 결정일	비고
			기정	변경	기정			변경				
					계	1단계	2단계	계	1단계	2단계		
합계			-	-	11,609.8	10,277.8	1,332	11,652.9	10,277.8	1,375.1		
변경	3-33	노외 주차장	울하리 846답 일원	장유동 803번지	1,332.0	-	1,332	1,375.1	-	1,375.1		
변경	3-34	노외 주차장	장유동 815번지 일원	장유동 815번지	898.1	898.1	-	898.1	898.1	-		
변경	3-35	노외 주차장	장유동 830번지 일원	장유동 830번지	1,493.8	1,493.8	-	1,493.8	1,493.8	-		
변경	3-36	노외 주차장	장유동 825-4번지 일원	장유동 825-4번지	1,497.5	1,497.5	-	1,497.5	1,497.5	-		
변경	3-37	노외 주차장	장유동 838번지 일원	장유동 838번지	1,263.5	1,263.5	-	1,263.5	1,263.5	-		
변경	3-38	노외 주차장	장유동 841번지 일원	장유동 841번지	2,003.9	2,003.9	-	2,003.9	2,003.9	-		
변경	3-39	노외 주차장	장유동 853번지 일원	장유동 853번지	897.4	897.4	-	897.4	897.4	-		
변경	3-40	노외 주차장	장유동 865번지 일원	장유동 865번지	1,074.9	1,074.9	-	1,074.9	1,074.9	-		
변경	3-41	노외 주차장	장유동 883번지 일원	장유동 883번지	1,148.7	1,148.7	-	1,148.7	1,148.7	-		

■ 주차장 결정(변경) 사유서

도면표시번호	시설명	변경내용	변경사유																																				
3-33	노외주차장	○ 변경 위치 : 울하리 846답 일원 → 장유동 803번지 일원 면적(㎡) : 1,332.0 → 1,375.1	○ 확정측량 결과반영																																				
3-34 3-35 3-36 3-37 3-38 3-39 3-40 3-41	노외주차장	○ 변경(위치정정) <table border="1" style="width: 100%; border-collapse: collapse;"> <thead> <tr> <th>도면표시번호</th> <th>기정</th> <th></th> <th>변경</th> </tr> </thead> <tbody> <tr> <td>3-34</td> <td>장유동 815번지 일원</td> <td>→</td> <td>장유동 815번지</td> </tr> <tr> <td>3-35</td> <td>장유동 830번지 일원</td> <td>→</td> <td>장유동 830번지</td> </tr> <tr> <td>3-36</td> <td>장유동 825-4번지 일원</td> <td>→</td> <td>장유동 825-4번지</td> </tr> <tr> <td>3-37</td> <td>장유동 838번지 일원</td> <td>→</td> <td>장유동 838번지</td> </tr> <tr> <td>3-38</td> <td>장유동 841번지 일원</td> <td>→</td> <td>장유동 841번지</td> </tr> <tr> <td>3-39</td> <td>장유동 853번지 일원</td> <td>→</td> <td>장유동 853번지</td> </tr> <tr> <td>3-40</td> <td>장유동 865번지 일원</td> <td>→</td> <td>장유동 865번지</td> </tr> <tr> <td>3-41</td> <td>장유동 883번지 일원</td> <td>→</td> <td>장유동 883번지</td> </tr> </tbody> </table>	도면표시번호	기정		변경	3-34	장유동 815번지 일원	→	장유동 815번지	3-35	장유동 830번지 일원	→	장유동 830번지	3-36	장유동 825-4번지 일원	→	장유동 825-4번지	3-37	장유동 838번지 일원	→	장유동 838번지	3-38	장유동 841번지 일원	→	장유동 841번지	3-39	장유동 853번지 일원	→	장유동 853번지	3-40	장유동 865번지 일원	→	장유동 865번지	3-41	장유동 883번지 일원	→	장유동 883번지	○ 기정 위치 기재상 "일원" 삭제
도면표시번호	기정		변경																																				
3-34	장유동 815번지 일원	→	장유동 815번지																																				
3-35	장유동 830번지 일원	→	장유동 830번지																																				
3-36	장유동 825-4번지 일원	→	장유동 825-4번지																																				
3-37	장유동 838번지 일원	→	장유동 838번지																																				
3-38	장유동 841번지 일원	→	장유동 841번지																																				
3-39	장유동 853번지 일원	→	장유동 853번지																																				
3-40	장유동 865번지 일원	→	장유동 865번지																																				
3-41	장유동 883번지 일원	→	장유동 883번지																																				

나. 공간시설

1) 광장(변경없음)

구분	도면 표시 번호	시설명	시설의 종류	위치	면적(㎡)			최초 결정일	비고
					기정	변경	변경후		
기정	0	광장	교통 광장	장유면 장유리 산69-1	69,965	-	69,965	경상남도 고시 제2009-423호 2009.8.20	지구외 (올하 교차로)

2) 녹지(변경)

■ 녹지 결정(변경)조사

구분	도면 표시 번호	시설명	시설의 종류	위 치		면 적(㎡)						비고
				기정	변경	기정			변경			
						계	1단계	2단계	계	1단계	2단계	
합 계				-	-	312,039.5	-	-	295,600.8	-	-	지구외 포함
완충녹지 소계				-	-	111,942.5	40,020.5	71,922	95,503.8	40,020.5	55,483.3	지구내
완충녹지 소계				-	-	67,205.7	14,346.7	52,859	50,736.2	14,346.7	36,389.5	-
기정	3-1	녹지	완충 녹지	장유면 신문리 1102일원 (광로2-1-2호선 주변)	장유면 신문리 1102일원 (광로2-1-2호선 주변)	200,097.0	-	-	200,097.0	-	-	지구외
변경	3-20	녹지	완충 녹지	올하리 843-2답 일원	장유동 1024번지	224.0	-	224	223.6	-	223.6	완1
변경	3-21	녹지	완충 녹지	올하리 827-2답 일원	장유동 1023번지	2,167.0	-	2,167	2,166.8	-	2,166.8	완2
변경	3-22	녹지	완충 녹지	장유리 652-2답 일원	장유동 1022번지	2,905.0	-	2,905	2,913.6	-	2,913.6	완3
변경	3-23	녹지	완충 녹지	장유동 969번지 일원	장유동 969번지	1,071.6	1,071.6	-	1,071.6	1,071.6	-	완4
변경	3-24	녹지	완충 녹지	장유동 970번지 일원	장유동 970번지	1,045.1	1,045.1	-	1,045.1	1,045.1	-	완5
변경	3-25	녹지	완충 녹지	장유동 971번지 일원	장유동 971번지	170.0	170.0	-	170.0	170.0	-	완6
변경	3-26	녹지	완충 녹지	장유동 980번지 일원	장유동 980번지	175.5	175.5	-	175.5	175.5	-	완7
변경	3-27	녹지	완충 녹지	장유동 979번지 일원	장유동 979번지	695.1	695.1	-	695.1	695.1	-	완8
변경	3-28	녹지	완충 녹지	장유동 981번지 일원	장유동 981번지	1,092.5	1,092.5	-	1,092.5	1,092.5	-	완9
변경	3-29	녹지	완충 녹지	장유동 982번지 일원	장유동 982번지	600.0	600.0	-	600.0	600.0	-	완10
변경	3-30	녹지	완충 녹지	장유동 986번지 일원	장유동 986번지	1,480.9	1,480.9	-	1,480.9	1,480.9	-	완11
변경	3-31	녹지	완충 녹지	장유동 978번지 일원	장유동 978번지	2,658.1	2,658.1	-	2,658.1	2,658.1	-	완12
변경	3-32	녹지	완충 녹지	장유동 977번지 일원	장유동 977번지	2,333.2	2,333.2	-	2,333.2	2,333.2	-	완13
변경	3-33	녹지	완충 녹지	장유동 987번지 일원	장유동 987번지	1,655.7	1,655.7	-	1,655.7	1,655.7	-	완14
변경	3-34	녹지	완충 녹지	장유동 976번지 일원	장유동 976번지	270.3	270.3	-	270.3	270.3	-	완15
변경	3-35	녹지	완충 녹지	장유동 990번지 일원	장유동 990번지	664.9	664.9	-	664.9	664.9	-	완16
변경	3-36	녹지	완충 녹지	장유동 991번지 일원	장유동 991번지	433.8	433.8	-	433.8	433.8	-	완17
변경	3-37	녹지	완충 녹지	장유리 산12-3임 일원	장유동 1038번지	5,781.0	-	5,781	6,371.2	-	6,371.2	완18
변경	3-38	녹지	완충 녹지	장유리 138전 일원	장유동 1039번지	1,648.0	-	1,648	907.9	-	907.9	완19

구분	도면 표시 번호	시설명	시설의 종류	위 치		면 적(㎡)						비고
				기정	변경	기정			변경			
						계	1단계	2단계	계	1단계	2단계	
변경	3-39	녹지	완충 녹지	장유리 산51-2입일원	장유동 1043번지	9,994.0	-	9,994	10,134.4	-	10,134.4	완20
변경	3-40	녹지	완충 녹지	장유리 산57-5입 일원	장유동 1044번지	2,103.0	-	2,103	1,778.4	-	1,778.4	완21
변경	3-41	녹지	완충 녹지	장유리 745답 일원	장유동 1047번지	25,700.0	-	25,700	7,999.2	-	7,999.2	완22
변경	3-71	녹지	완충 녹지	장유리 산57-4입 일원	장유동 1045번지	2,337.0	-	2,337	2,486.8	-	2,486.8	완23
신설	3-78	녹지	완충 녹지	-	장유동 1046번지	-	-	-	1,407.6	-	1,407.6	완24
경관녹지 소계						44,736.8	25,673.8	19,063	44,767.6	25,673.8	19,093.8	
변경	3-42	녹지	경관 녹지	올하리 4-5답 일원	장유동 1025번지	3,857.0	-	3,857	3,861.0	-	3,861.0	경1
변경	3-43	녹지	경관 녹지	장유리 10답 일원	장유동 1030번지	1,916.0	-	1,916	1,839.9	-	1,839.9	경2
변경	3-44	녹지	경관 녹지	장유리 554-3도 일원	장유동 1031번지	69.0	-	69	59.9	-	59.9	경3
변경	3-45	녹지	경관 녹지	장유리 3 7-4답 일원	장유동 1032번지	1,294.0	-	1,294	1,671.2	-	1,671.2	경4
변경	3-46	녹지	경관 녹지	장유동 9 75번지 일원	장유동 975번지	7,288.9	7,288.9	-	7,288.9	7,288.9	-	경5
변경	3-47	녹지	경관 녹지	장유리 332-6답 일원	장유동 1035번지	1,816.0	-	1,816	1,698.8	-	1,698.8	경6
변경	3-48	녹지	경관 녹지	장유리 563구 일원	장유동 1036번지	3,032.0	-	3,032	2,999.5	-	2,999.5	경7
변경	3-49	녹지	경관 녹지	장유리 564-4도 일원	장유동 1037번지	307.0	-	307	378.4	-	378.4	경8
폐지	3-50	녹지	경관 녹지	장유리 90-4답 일원	-	106.0	-	106	-	-	-	경9
변경	3-51	녹지	경관 녹지	장유동 988번지 일원	장유동 988번지	1,968.1	1,968.1	-	1,968.1	1,968.1	-	경10
변경	3-52	녹지	경관 녹지	장유동 9 89번지 일원	장유동 989번지	1,275.4	1,275.4	-	1,275.4	1,275.4	-	경11
변경	3-53	녹지	경관 녹지	장유동 9 93번지 일원	장유동 993번지	1,757.6	1,757.6	-	1,757.6	1,757.6	-	경12
변경	3-54	녹지	경관 녹지	장유동 994번지 일원	장유동 994번지	1,509.0	1,509.0	-	1,509.0	1,509.0	-	경13
변경	3-55	녹지	경관 녹지	장유리 6 34전 일원	장유동 1042번지	3,264.0	-	3,264	3,263.2	-	3,263.2	경14
변경	3-56	녹지	경관 녹지	장유동 983번지 일원	장유동 983번지	940.0	940.0	-	940.0	940.0	-	경15
변경	3-57	녹지	경관 녹지	장유동 9 85번지 일원	장유동 985번지	479.5	479.5	-	479.5	479.5	-	경16
변경	3-58	녹지	경관 녹지	장유동 974번지 일원	장유동 974번지	8,015.9	8,015.9	-	8,015.9	8,015.9	-	경17
변경	3-59	녹지	경관 녹지	장유동 972번지 일원	장유동 972번지	2,439.4	2,439.4	-	2,439.4	2,439.4	-	경18
변경	3-60	녹지	경관 녹지	장유리 630-1입 일원	장유동 1041번지	1,543.0	-	1,543	1,529.4	-	1,529.4	경19
변경	3-70	녹지	경관 녹지	장유리 산29입 일원	장유동 1040번지	1,859.0	-	1,859	1,792.5	-	1,792.5	경20

■ 결정(변경)사유서

도면표시 번호	시설명	변경내용	변경사유
3-20	완충녹지	○ 변경 위치 : 옹하리 843-2답 일원→장유동 1024번지 면적(㎡) : 224.0→223.6	○ 확정측량 결과반영
3-21	완충녹지	○ 변경 위치 : 옹하리 827-2답 일원→장유동 1023번지 면적(㎡) : 2,167.0→2,166.8	○ 확정측량 결과반영
3-22	완충녹지	○ 변경 위치 : 장유리 652-2답 일원→장유동 1022번지 면적(㎡) : 2,905.0→2,913.6	○ 확정측량 결과반영
3-37	완충녹지	○ 변경 위치 : 장유리 산12-3임 일원→장유동 1038번지 면적(㎡) : 5,781.0→6,371.2	○ 확정측량 결과반영
3-38	완충녹지	○ 변경 위치 : 장유리 138전 일원→장유동 1039번지 면적(㎡) : 1,648.0→907.9	○ 확정측량 결과반영
3-39	완충녹지	○ 변경 위치 : 장유리 산51-2임일원→장유동 1043번지 면적(㎡) : 9,994.0→10,134.4	○ 확정측량 결과반영
3-40	완충녹지	○ 변경 위치 : 장유리 산57-5임 일원→장유동 1044번지 면적(㎡) : 2,103.0→1,778.4	○ 확정측량 결과반영
3-41	완충녹지	○ 변경 위치 : 장유리 745답 일원→장유동 1047번지 면적(㎡) : 25,700.0→7,999.2	○ 확정측량 결과반영
3-71	완충녹지	○ 변경 위치 : 장유리 산57-4임 일원→장유동 1045번지 면적(㎡) : 2,337.0→2,486.8	○ 확정측량 결과반영
3-78	완충녹지	○ 신설 위치 : 장유동 1046번지 면적(㎡) : 1,407.6	○ 완충녹지3-41 분할 및 면적축소에 따른 완충녹지 3-78신설
3-42	경관녹지	○ 변경 위치 : 옹하리 4-5답 일원→장유동 1025번지 면적(㎡) : 3,857.0→3,861.0	○ 확정측량 결과반영
3-43	경관녹지	○ 변경 위치 : 장유리 10답 일원→장유동 1030번지 면적(㎡) : 1,916.0→1,839.9	○ 확정측량 결과반영
3-44	경관녹지	○ 변경 위치 : 장유리 554-3도 일원→장유동 1031번지 면적(㎡) : 69.0→59.9	○ 확정측량 결과반영
3-45	경관녹지	○ 변경 위치 : 장유리 37-4답 일원→장유동 1032번지 면적(㎡) : 1,294.0→1,671.2	○ 확정측량 결과반영
3-47	경관녹지	○ 변경 위치 : 장유리 332-6답 일원→장유동 1035번지 면적(㎡) : 1,816.0→1,698.8	○ 확정측량 결과반영
3-48	경관녹지	○ 변경 위치 : 장유리 563구 일원→장유동 1036번지 면적(㎡) : 3,032.0→2,999.5	○ 확정측량 결과반영
3-49	경관녹지	○ 변경 위치 : 장유리 564-4도 일원→장유동1037번지 면적(㎡) : 307.0→378.4	○ 확정측량 결과반영
3-50	경관녹지	○ 폐지 위치 : 장유리 90-4답 일원 면적(㎡) : 106.0	○ 확정측량 결과반영
3-55	경관녹지	○ 변경 위치 : 장유리 634전 일원→장유동 1042번지 면적(㎡) : 3,264.0→3,263.2	○ 확정측량 결과반영
3-60	경관녹지	○ 변경 위치 : 장유리 630-1임 일원→장유동 1041번지 면적(㎡) : 1,543.0→1,529.4	○ 확정측량 결과반영
3-70	경관녹지	○ 변경 위치 : 장유리 산29임 일원→장유동 1040번지 면적(㎡) : 1,859.0→1,792.5	○ 확정측량 결과반영

■ 결정(변경)사유서

도면표시 번호	시설명	변경내용				변경사유																																																																																																																								
3-23	완충녹지	○ 변경(위치정정) <table border="1"> <thead> <tr> <th>도면표시 번호</th> <th>시설명</th> <th>기정</th> <th></th> <th>변경</th> </tr> </thead> <tbody> <tr> <td>3-23</td> <td>완충녹지</td> <td>장유동 969번지 일원</td> <td>→</td> <td>장유동 969번지</td> </tr> <tr> <td>3-24</td> <td>완충녹지</td> <td>장유동 970번지 일원</td> <td>→</td> <td>장유동 970번지</td> </tr> <tr> <td>3-25</td> <td>완충녹지</td> <td>장유동 971번지 일원</td> <td>→</td> <td>장유동 971번지</td> </tr> <tr> <td>3-26</td> <td>완충녹지</td> <td>장유동 980번지 일원</td> <td>→</td> <td>장유동 980번지</td> </tr> <tr> <td>3-27</td> <td>완충녹지</td> <td>장유동 979번지 일원</td> <td>→</td> <td>장유동 979번지</td> </tr> <tr> <td>3-28</td> <td>완충녹지</td> <td>장유동 981번지 일원</td> <td>→</td> <td>장유동 981번지</td> </tr> <tr> <td>3-29</td> <td>완충녹지</td> <td>장유동 982번지 일원</td> <td>→</td> <td>장유동 982번지</td> </tr> <tr> <td>3-30</td> <td>완충녹지</td> <td>장유동 986번지 일원</td> <td>→</td> <td>장유동 986번지</td> </tr> <tr> <td>3-31</td> <td>완충녹지</td> <td>장유동 978번지 일원</td> <td>→</td> <td>장유동 978번지</td> </tr> <tr> <td>3-32</td> <td>완충녹지</td> <td>장유동 977번지 일원</td> <td>→</td> <td>장유동 977번지</td> </tr> <tr> <td>3-33</td> <td>완충녹지</td> <td>장유동 987번지 일원</td> <td>→</td> <td>장유동 987번지</td> </tr> <tr> <td>3-34</td> <td>완충녹지</td> <td>장유동 976번지 일원</td> <td>→</td> <td>장유동 976번지</td> </tr> <tr> <td>3-35</td> <td>완충녹지</td> <td>장유동 990번지 일원</td> <td>→</td> <td>장유동 990번지</td> </tr> <tr> <td>3-36</td> <td>완충녹지</td> <td>장유동 991번지 일원</td> <td>→</td> <td>장유동 991번지</td> </tr> <tr> <td>3-46</td> <td>경관녹지</td> <td>장유동 975번지 일원</td> <td>→</td> <td>장유동 975번지</td> </tr> <tr> <td>3-51</td> <td>경관녹지</td> <td>장유동 988번지 일원</td> <td>→</td> <td>장유동 988번지</td> </tr> <tr> <td>3-52</td> <td>경관녹지</td> <td>장유동 989번지 일원</td> <td>→</td> <td>장유동 989번지</td> </tr> <tr> <td>3-53</td> <td>경관녹지</td> <td>장유동 993번지 일원</td> <td>→</td> <td>장유동 993번지</td> </tr> <tr> <td>3-54</td> <td>경관녹지</td> <td>장유동 994번지 일원</td> <td>→</td> <td>장유동 994번지</td> </tr> <tr> <td>3-54</td> <td>경관녹지</td> <td>장유동 983번지 일원</td> <td>→</td> <td>장유동 983번지</td> </tr> <tr> <td>3-56</td> <td>경관녹지</td> <td>장유동 985번지 일원</td> <td>→</td> <td>장유동 985번지</td> </tr> <tr> <td>3-57</td> <td>경관녹지</td> <td>장유동 974번지 일원</td> <td>→</td> <td>장유동 974번지</td> </tr> <tr> <td>3-58</td> <td>경관녹지</td> <td>장유동 972번지 일원</td> <td>→</td> <td>장유동 972번지</td> </tr> </tbody> </table>				도면표시 번호	시설명	기정		변경	3-23	완충녹지	장유동 969번지 일원	→	장유동 969번지	3-24	완충녹지	장유동 970번지 일원	→	장유동 970번지	3-25	완충녹지	장유동 971번지 일원	→	장유동 971번지	3-26	완충녹지	장유동 980번지 일원	→	장유동 980번지	3-27	완충녹지	장유동 979번지 일원	→	장유동 979번지	3-28	완충녹지	장유동 981번지 일원	→	장유동 981번지	3-29	완충녹지	장유동 982번지 일원	→	장유동 982번지	3-30	완충녹지	장유동 986번지 일원	→	장유동 986번지	3-31	완충녹지	장유동 978번지 일원	→	장유동 978번지	3-32	완충녹지	장유동 977번지 일원	→	장유동 977번지	3-33	완충녹지	장유동 987번지 일원	→	장유동 987번지	3-34	완충녹지	장유동 976번지 일원	→	장유동 976번지	3-35	완충녹지	장유동 990번지 일원	→	장유동 990번지	3-36	완충녹지	장유동 991번지 일원	→	장유동 991번지	3-46	경관녹지	장유동 975번지 일원	→	장유동 975번지	3-51	경관녹지	장유동 988번지 일원	→	장유동 988번지	3-52	경관녹지	장유동 989번지 일원	→	장유동 989번지	3-53	경관녹지	장유동 993번지 일원	→	장유동 993번지	3-54	경관녹지	장유동 994번지 일원	→	장유동 994번지	3-54	경관녹지	장유동 983번지 일원	→	장유동 983번지	3-56	경관녹지	장유동 985번지 일원	→	장유동 985번지	3-57	경관녹지	장유동 974번지 일원	→	장유동 974번지	3-58	경관녹지	장유동 972번지 일원	→	장유동 972번지	○ 기정 위치 기재상 “일원” 삭제
도면표시 번호	시설명					기정		변경																																																																																																																						
3-23	완충녹지					장유동 969번지 일원	→	장유동 969번지																																																																																																																						
3-24	완충녹지					장유동 970번지 일원	→	장유동 970번지																																																																																																																						
3-25	완충녹지					장유동 971번지 일원	→	장유동 971번지																																																																																																																						
3-26	완충녹지					장유동 980번지 일원	→	장유동 980번지																																																																																																																						
3-27	완충녹지					장유동 979번지 일원	→	장유동 979번지																																																																																																																						
3-28	완충녹지					장유동 981번지 일원	→	장유동 981번지																																																																																																																						
3-29	완충녹지					장유동 982번지 일원	→	장유동 982번지																																																																																																																						
3-30	완충녹지					장유동 986번지 일원	→	장유동 986번지																																																																																																																						
3-31	완충녹지					장유동 978번지 일원	→	장유동 978번지																																																																																																																						
3-32	완충녹지					장유동 977번지 일원	→	장유동 977번지																																																																																																																						
3-33	완충녹지					장유동 987번지 일원	→	장유동 987번지																																																																																																																						
3-34	완충녹지					장유동 976번지 일원	→	장유동 976번지																																																																																																																						
3-35	완충녹지					장유동 990번지 일원	→	장유동 990번지																																																																																																																						
3-36	완충녹지					장유동 991번지 일원	→	장유동 991번지																																																																																																																						
3-46	경관녹지					장유동 975번지 일원	→	장유동 975번지																																																																																																																						
3-51	경관녹지					장유동 988번지 일원	→	장유동 988번지																																																																																																																						
3-52	경관녹지					장유동 989번지 일원	→	장유동 989번지																																																																																																																						
3-53	경관녹지					장유동 993번지 일원	→	장유동 993번지																																																																																																																						
3-54	경관녹지	장유동 994번지 일원	→	장유동 994번지																																																																																																																										
3-54	경관녹지	장유동 983번지 일원	→	장유동 983번지																																																																																																																										
3-56	경관녹지	장유동 985번지 일원	→	장유동 985번지																																																																																																																										
3-57	경관녹지	장유동 974번지 일원	→	장유동 974번지																																																																																																																										
3-58	경관녹지	장유동 972번지 일원	→	장유동 972번지																																																																																																																										
3-24	완충녹지																																																																																																																													
3-25	완충녹지																																																																																																																													
3-26	완충녹지																																																																																																																													
3-27	완충녹지																																																																																																																													
3-28	완충녹지																																																																																																																													
3-29	완충녹지																																																																																																																													
3-30	완충녹지																																																																																																																													
3-31	완충녹지																																																																																																																													
3-32	완충녹지																																																																																																																													
3-33	완충녹지																																																																																																																													
3-34	완충녹지																																																																																																																													
3-35	완충녹지																																																																																																																													
3-36	완충녹지																																																																																																																													
3-46	경관녹지																																																																																																																													
3-51	경관녹지																																																																																																																													
3-52	경관녹지																																																																																																																													
3-53	경관녹지																																																																																																																													
3-54	경관녹지																																																																																																																													
3-56	경관녹지																																																																																																																													
3-57	경관녹지																																																																																																																													
3-58	경관녹지																																																																																																																													
3-59	경관녹지																																																																																																																													

3) 공원(변경)

■ 공원 결정(변경)조서

구분	도면 표시 번호	공원 명	시설의 종류	위치		면적(㎡)						최초 결정일	비고
				기정	변경	기정			변경				
						계	1단계	2단계	계	1단계	2단계		
합계				-	-	143,650.1 (151,850.1)	134,766.1	8,884 (17,084)	143,419.2 (151,793.2)	134,766.1	8,653.1 (17,027.1)		
변경	3-63	공원	근린 공원	장유동 973번 지 일원	장유동 973 번지	74,358.6	74,358.6	-	74,358.6	74,358.6	-		
변경	3-64	공원	근린 공원	장유동 995번 지 일원	장유동 995 번지	55,772.8	55,772.8	-	55,772.8	55,772.8	-		
변경	3-65	공원	어린이 공원	장유동 968번 지 일원	장유동 968 번지	1,600.4	1,600.4	-	1,600.4	1,600.4	-		
변경	3-66	공원	어린이 공원	장유동 984번 지 일원	장유동 984 번지	1,521.3	1,521.3	-	1,521.3	1,521.3	-		
변경	3-67	공원	어린이 공원	장유동 992번 지 일원	장유동 992 번지	1,513.0	1,513.0	-	1,513.0	1,513.0	-		
변경	3-68	공원	소공원	장유리 41-8답 일원	장유동 1033 번지	568.0	-	568	478.2	-	478.2		
변경	3-69	공원	수변 공원	장유리 35답 일원	장유동 1034 번지	8,316.0	-	8,316	8,174.9	-	8,174.9		
변경	3-86	공원	수변 공원	장유리 37-3답 일원	장유동 1048 번지	(8,200)	-	(8,200)	(8,374.0) ¹⁾	-	(8,374.0)	경남고시 2019-224호 (2019.7.4)	유수지 중복 결정

1) ()는 유수지와 중복결정한 면적임

■ 공원 결정(변경) 사유서

도면표시번호	시설명	변경내용	변경사유
3-63	근린공원	○ 변경(위치정정)	○ 기정 위치 기재상 "일원" 삭제
3-64	근린공원	○ 변경(위치정정)	
3-65	어린이공원	○ 변경(위치정정)	
3-66	어린이공원	○ 변경(위치정정)	
3-67	어린이공원	○ 변경(위치정정)	
		○ 변경(위치정정)	
3-68	소공원	○ 변경 위치 : 장유리 41-8답 일원 → 장유동 1033번지 면적(㎡): 568.0 → 478.2	○ 확정측량 결과반영
3-69	수변공원	○ 변경 위치 : 장유리 679대 일원 → 장유동 984번지 일원 면적(㎡): 8,316.0 → 8,174.9	○ 확정측량 결과반영
3-86	수변공원	○ 변경 위치 : 장유리 107-2전 일원 → 장유동 992번지 일원 면적(㎡): (8,200) → (8,374.0)	○ 확정측량 결과반영

다. 공공·문화체육시설

1) 학교(변경)

■ 학교 결정(변경)조서

구분	도면 표시 번호	시설명	시설의 세분	위치		면적(㎡)			최초 결정일	비고
				기정	변경	계	1단계	2단계		
합계				-	-	37,978.0	37,978.0	-		
변경	3-40	학교	초등 학교	장유동 848번지 일원	장유동 848번지	12,000.0	12,000.0	-		
변경	3-41	학교	초등 학교	장유동 871번지 일원	장유동 871번지	11,980.8	11,980.8	-		
변경	3-42	학교	중학교	장유동 872번지 일원	장유동 872번지	13,997.2	13,997.2	-		

■ 학교 결정(변경) 사유서

도면표시번호	시설명	변경내용	변경사유																				
3-40	학교	○ 변경(위치정정) <table border="1"> <thead> <tr> <th>도면표시번호</th> <th>시설명</th> <th>기정</th> <th></th> <th>변경</th> </tr> </thead> <tbody> <tr> <td>3-40</td> <td>학교</td> <td>장유동 848번지 일원</td> <td>→</td> <td>장유동 848번지</td> </tr> <tr> <td>3-41</td> <td>학교</td> <td>장유동 871번지 일원</td> <td>→</td> <td>장유동 871번지</td> </tr> <tr> <td>3-42</td> <td>학교</td> <td>장유동 872번지 일원</td> <td>→</td> <td>장유동 872번지</td> </tr> </tbody> </table>	도면표시번호	시설명	기정		변경	3-40	학교	장유동 848번지 일원	→	장유동 848번지	3-41	학교	장유동 871번지 일원	→	장유동 871번지	3-42	학교	장유동 872번지 일원	→	장유동 872번지	○ 기정 위치 기재상 “일원” 삭제
도면표시번호	시설명		기정		변경																		
3-40	학교		장유동 848번지 일원	→	장유동 848번지																		
3-41	학교	장유동 871번지 일원	→	장유동 871번지																			
3-42	학교	장유동 872번지 일원	→	장유동 872번지																			
3-41	학교																						
3-42	학교																						

라. 방재시설

1) 하천(변경)

■ 하천 결정(변경)조서

구분	도면표시번호	시설명	시설의 종류	위치			연장(km)	폭원(m)	면적(㎡)						최초 결정일	비고
				기점	종점	주요 경과지			기정			변경				
									계	1단계	2단계	계	1단계	2단계		
합계	-	-	-	-	-	-	-	-	28,499.6 (29,980.3)	15,041.6 (16,454.3)	13,458 (13,526)	28,738.8 (30,225)	15,041.6 (16,454.3)	13,717.2 (13,818.2)		
변경	3-7	하천	소하천	장유동 996번지 일원	장유동 997번지 일원	김해울하 2지구	-	-	14,229.0 (15,079.9)	9,500.0 (10,282.9)	4,729 (4,797)	14,039.6 (14,535)	9,500.0 (10,282.9)	4,569.6 (4,670.6)		뜰천
변경	3-8	하천	소하천	장유동 998번지 일원	장유동 999번지 일원	김해울하 2지구	-	-	14,270.6 (14,900.4)	5,541.6 (6,171.4)	8,729	14,689.2 (15,319.0)	5,541.6 (6,171.4)	9,147.6		장유천

1) ()는 도로와 중복결정한 하천면적을 포함한 면적인

■ 하천 결정(변경) 사유서

도면표시번호	시설명	변경내용	변경사유
3-7	소하천	○ 변경 면적(㎡):14,229.0(15,079.9)→14,069.6(14,953.5)	○ 확정측량 결과반영
3-8	소하천	○ 변경 면적(㎡):14,270.6(14,900.4)→14,689.2(15,319.0)	○ 확정측량 결과반영

2) 유수지(변경)

■ 유수지 결정(변경)조서

구분	도면표시번호	시설명	시설의 종류	위치		면적(㎡)						최초 결정일	비고
				기정	변경	기정			변경				
						계	1단계	2단계	계	1단계	2단계		
변경	3-2	유수지	저류 시설	장유리 37-3답 일원	장유동 1048번지	8,200	-	8,200	8,374	-	8,374		뜰천 장유천 합류부 (수변공원 3-86 중복결정)

■ 유수지 결정(변경) 사유서

도면표시번호	시설명	변경내용	변경사유
3-2	유수지	○ 변경 위치 :장유리 37-3답 일원→장유동 1048번지 면적(㎡):8,200→8,374	○ 확정측량 결과반영

김해 부봉지구 도시개발사업 개발계획(변경)수립 및 실시계획(변경)인가 고시

김해시 고시 제2019-201호(2019. 07. 26.)로 도시개발사업 개발계획(변경)수립 및 실시계획(변경)인가 고시된 김해 부봉지구 도시개발사업에 대하여 「도시개발법」 제4조 및 제17조 규정에 의하여 도시개발사업의 개발계획(변경)수립 및 실시계획(변경)인가하고 같은 법 제9조 및 제18조의 규정에 의하여 고시하오니, 이해관계인은 김해시청(도시개발과)에 비치된 관계서류를 보시기 바랍니다.

2020년 2월 21일

김 해 시 장

- I. 김해 부봉지구 도시개발사업 개발계획(변경)수립 : 붙임
- II. 김해 부봉지구 도시개발사업 실시계획(변경)인가 : 붙임
- III. 관련도면 : 게재 생략

I. 김해 부봉지구 도시개발사업 개발계획(변경)수립

1. 도시개발구역의 명칭 (변경없음)

- 김해 부봉지구 도시개발구역

2. 도시개발구역의 위치 및 면적 (변경없음)

- 위 치 : 경상남도 김해시 부원동, 봉황동 일원
- 면 적 : 135,344.2m²

3. 도시개발사업의 지정목적 (변경없음)

- 장래 도시발전에 대비한 계획적인 개발로 준주거용지 및 도시기반시설용지의 조기 확보를 통한 쾌적한 도시환경 조성 도모

4. 도시개발사업의 시행자와 그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 (변경없음)

- 사업시행자 : 부봉지구 도시개발사업조합
- 주 소 : 경상남도 김해시 봉황동 8블럭 1נות

5. 도시개발사업의 시행기간(변경) 및 시행방법 (변경없음)

- 시행기간 : 2011.07.28. ~ 2020.07.27.(실시계획인가일로부터 9년간)
- 시행방식 : 환지방식

6. 토지이용계획 및 기반시설계획(변경없음)

7. 토지 등의 세목과 그 소유자 및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2조제5호의 규정에 의한 관계인의 성명·주소 (환지방식임으로 해당사항 없음)

8. 도시개발구역 밖의 지역에서 도시개발구역의 이용에 제공되는 기반시설에 관한 사항(해당없음)

9. 실시계획의 인가신청기간(변경없음)

- 개발계획 수립·고시한 날부터 3년이 되는날

10. 기타사항

- 재원조달계획(변경)

구 분	금액(억원)			구성비(%)	비고
	기 정	변 경	변 경 후		
합 계	532.4	증) 44.8	577.2	100.0	
공 사 비	230.6	감) 0.5	230.1	39.9	
보 상 비	61.3	-	61.3	10.6	
농지보전부담금	43.8	-	43.8	7.6	
생태계보전 협력금	0.8	-	0.8	0.1	
광역교통시설부담금	21.8	-	21.8	3.8	
상·하수도 부담금	39.0	-	39.0	6.8	
사 무 비	35.0	감) 0.2	34.8	6.0	
조합운영비	21.0	감) 0.2	20.8	3.6	
감정 및 수수료	10.0	감) 1.3	8.7	1.5	
예 비 비	20.0	감) 3.0	17.0	3.0	
중계펌프장 외 공사비	18.7	-	18.7	3.2	
고속도로 방음벽	12.9	-	12.9	2.2	
지구 외 공사	7.2	-	7.2	1.3	
보완공사 추가 지급분	3.2	감) 0.1	3.1	0.5	
금 전 청 산	7.1	증) 47.1	54.2	9.4	개인, 한국농어촌공사, 국·공유지, 과부족도 정산
조합청산금	-	증) 3.0	3.0	0.5	

11. 관계도서의 열람방법 (변경없음)

- 「도시개발법」 제9조의 규정에 의거 구역 지정 및 개발계획 수립한 사항을 관보 또는 공보에 고시하고, 당해 도시개발구역을 관할하는 김해시장에게 관계서류를 송부하여 일반인에게 공람

12. 도시관리계획의 수립 또는 변경에 관한 사항(변경없음)

II. 김해 부봉지구 도시개발사업 실시계획(변경)인가

1. 사업의 명칭(변경없음)

- 김해 부봉지구 도시개발사업

2. 사업의 목적(변경없음)

- 장래 도시발전에 대비한 계획적인 개발로 준주거용지 및 도시기반시설용지의 조기 확보를 통한 쾌적한 도시환경 조성 도모

3. 도시개발구역의 위치 및 면적(변경없음)

- 위치 : 경상남도 김해시 부원동, 봉황동 일원
- 면적 : 135,344.2m²

4. 시행자(변경없음)

- 사업시행자 : 부봉지구 도시개발사업조합
- 주 소 : 경상남도 김해시 봉황동 8블럭 1노트

5. 시행기간(변경없음)

- 시행기간 : 2011.7.28. ~ 2020.7.27.(실시계획인가일로부터 9년간)

6. 시행방식(변경없음)

- 사업방식 : 환지방식

7. 도시관리계획(지구단위계획 포함)의 결정내용(변경없음)

8. 기타사항

- 재원조달계획(변경)

구 분	금액(억원)			구성비(%)	비고
	기 정	변 경	변 경 후		
합 계	532.4	증) 44.8	577.2	100.0	
공 사 비	230.6	감) 0.5	230.1	39.9	
보 상 비	61.3	-	61.3	10.6	
농지보전부담금	43.8	-	43.8	7.6	
생태계보전 협력금	0.8	-	0.8	0.1	
광역교통시설부담금	21.8	-	21.8	3.8	
상·하수도 부담금	39.0	-	39.0	6.8	
사 무 비	35.0	감) 0.2	34.8	6.0	
조합운영비	21.0	감) 0.2	20.8	3.6	
감정 및 수수료	10.0	감) 1.3	8.7	1.5	
예 비 비	20.0	감) 3.0	17.0	3.0	
중계펌프장 외 공사비	18.7	-	18.7	3.2	
고속도로 방음벽	12.9	-	12.9	2.2	
지구 외 공사	7.2	-	7.2	1.3	
보완공사 추가 지급분	3.2	감) 0.1	3.1	0.5	
금 전 청 산	7.1	증) 47.1	54.2	9.4	개인, 한국농어촌공사, 국·공유지, 과부족도 정산
조합청산금	-	증) 3.0	3.0	0.5	

9. 인가된 실시계획에 관한 도서의 공람기간 및 공람장소

- 도시개발법 제18조의 규정에 따라 인가 사항을 공보에 고시하고, 김해시 도시개발과 (전화 : 055-330-3613)에 관계서류를 비치하여 이해관계인에게 보입니다.

III. 관련도면 : 게재 생략

김해도시계획시설(완충녹지:3-2)사업 시행자(변경) 지정 및 실시계획 변경인가 고시

김해도시계획시설(완충녹지:3-2)사업에 대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86조, 시행령 제96조의 규정에 의거 사업의 시행자 변경 지정 및 같은 법 제88조, 시행령 제97조에 따라 실시계획 변경인가 사항을 같은 법 제91조, 시행령 제100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0년 02월 21일

김 해 시 장

1. 사업시행지의 위치 : 김해시 삼문동 892번지 일원
2. 사업의 종류 및 명칭
 - 사업의 종류 : 김해도시계획시설(완충녹지:3-2)사업
 - 사업의 명칭 : 김해장유지역주택조합아파트 완충녹지 설치공사
3. 사업시행 면적 또는 규모

시설의 종류	도시계획결정(㎡)	금회 시행규모(㎡)	비고
완충녹지 3-2	101,171.9	7,454.9	김고 제2017-339호 (2017.12.28.)

4. 사업시행자의 성명 및 주소
 - 성 명 ▮ 당초 : 김해장유지역주택조합 1단지 대표 김향민, 주식회사 서희건설
 └ 변경 : 김해장유지역주택조합 1단지 대표 김향민, 대우산업개발(주)
 - 주 소 ▮ 당초 : 김해시 계동로 225, 성남시 분당구 수내로46번길 4, 4층
 └ 변경 : 김해시 계동로 225, 인천시 연수구 컨벤시아대로 69, 601호
5. 사업기간
 - 당 초 : 2018. 03. 09. ~ 2021. 04. 19.
 - 변 경 : 2018. 03. 09. ~ 2023. 01. 14.
6. 사용 또는 수용할 토지 또는 건물조서 및 소유권이외의 권리자 조서 : 붙임
7. 실시계획 변경인가 사유
 - 사업시행자 변경
 - 사업기간 연장
8. 관계도면 : 실음생략 【김해시청 도시계획과(☎330-3595)비치】

연번	소재지	지번	지목	지적 (㎡)	편입 면적 (㎡)	토지소유자		소유자 이외의 권리			비고
						성명	주소	성명	주소	권리내용	
1	삼문동	800-2	도	5,384.2	4,465	김해시					
2	삼문동	892	대	19	19	김해장유지역주택조합1단지	경상남도 김해시 변화1로56번길 301-1호(대청동)	19,			
3	삼문동	893	전	65	65	김해장유지역주택조합1단지	경상남도 김해시 변화1로56번길 301-1호(대청동)	19,			
4	삼문동	894	답	88	81	김해장유지역주택조합1단지	경상남도 김해시 변화1로56번길 301-1호(대청동)	19,			
5	삼문동	895-2	답	516	52	김해장유지역주택조합1단지	경상남도 김해시 변화1로56번길 301-1호(대청동)	19,			
6	삼문동	900-3	대	180	93	김해장유지역주택조합1단지	경상남도 김해시 변화1로56번길 301-1호(대청동)	19,			
7	삼문동	907-1	대	737	226	김해장유지역주택조합1단지	경상남도 김해시 변화1로56번길 301-1호(대청동)	19,			
8	삼문동	907-2	대	32	28	김해장유지역주택조합1단지	경상남도 김해시 변화1로56번길 301-1호(대청동)	19,			
9	삼문동	908	대	25	25	김해장유지역주택조합1단지	경상남도 김해시 변화1로56번길 301-1호(대청동)	19,			
10	삼문동	909	전	920	394	김해장유지역주택조합1단지	경상남도 김해시 변화1로56번길 301-1호(대청동)	19,			
11	삼문동	916	대	731	215	김해장유지역주택조합1단지	경상남도 김해시 변화1로56번길 301-1호(대청동)	19,			
12	삼문동	916-2	전	67	61	김해장유지역주택조합1단지	경상남도 김해시 변화1로56번길 301-1호(대청동)	19,			
13	삼문동	916-3	전	212	62	김해장유지역주택조합1단지	경상남도 김해시 변화1로56번길 301-1호(대청동)	19,			
14	삼문동	917	전	40	39	김해장유지역주택조합1단지	경상남도 김해시 변화1로56번길 301-1호(대청동)	19,			
15	삼문동	918	전	55	55	한00 김해장유지역주택조합1단지	군포시 금정동 000 00아파트 000호 경상남도 김해시 변화1로56번길 301-1호(대청동)	19,			
16	삼문동	920-2	전	130	1	김해장유지역주택조합1단지	경상남도 김해시 변화1로56번길 301-1호(대청동)	19,			
17	삼문동	960	전	44	38	김해장유지역주택조합1단지	경상남도 김해시 변화1로56번길 301-1호(대청동)	19,			
18	삼문동	961-4	전	1	1	김해장유지역주택조합1단지	경상남도 김해시 변화1로56번길 301-1호(대청동)	19,			
19	삼문동	962	대	143	143	김해장유지역주택조합1단지	경상남도 김해시 변화1로56번길 301-1호(대청동)	19,			
20	삼문동	962-2	전	221	221	김해장유지역주택조합1단지	경상남도 김해시 변화1로56번길 301-1호(대청동)	19,			
21	삼문동	962-3	도	5	5	김해장유지역주택조합1단지	경상남도 김해시 변화1로56번길 301-1호(대청동)	19,			
22	삼문동	963	전	86	86	김해장유지역주택조합1단지	경상남도 김해시 변화1로56번길 301-1호(대청동)	19,			
23	삼문동	964-2	전	51	51	김해장유지역주택조합1단지	경상남도 김해시 변화1로56번길 301-1호(대청동)	19,			
24	삼문동	966	대	366	11	김해장유지역주택조합1단지	경상남도 김해시 변화1로56번길 301-1호(대청동)	19,			
25	삼문동	966-1	전	36	35	김해장유지역주택조합1단지	경상남도 김해시 변화1로56번길 301-1호(대청동)	19,			
26	삼문동	979	전	638	297	김해장유지역주택조합1단지	경상남도 김해시 변화1로56번길 301-1호(대청동)	19,			
27	삼문동	979-3	전	56	2	김해장유지역주택조합1단지	경상남도 김해시 변화1로56번길 301-1호(대청동)	19,			
28	삼문동	1095-11	임	1	1	김해장유지역주택조합1단지	경상남도 김해시 변화1로56번길 301-1호(대청동)	19,			
29	삼문동	1095-10	답	3	3	김해장유지역주택조합1단지	경상남도 김해시 변화1로56번길 301-1호(대청동)	19,			
30	삼문동	1111	답	266	266	김해장유지역주택조합1단지	경상남도 김해시 변화1로56번길 301-1호(대청동)	19,			
31	삼문동	1112-1	답	54	54	김해장유지역주택조합1단지	경상남도 김해시 변화1로56번길 301-1호(대청동)	19,			
32	삼문동	1191-30	천	111	111	국토교통부					
33	삼문동	1191-31	천	51	7	국토교통부					
34	삼문동	1210-11	구	120	41	국토교통부					
35	삼문동	1210-3	구	162	20	국토교통부					
36	삼문동	1238	도	107	40	국토교통부					
37	삼문동	1239	도	60	55	국토교통부					
38	삼문동	1240	도	29	17	국토교통부					
측량오차정정					68.9						
계				11,812.2	7,454.9						

김해도시계획시설(여래공원) 조성계획 결정(변경)(안) 열람 공고

김해도시계획시설(여래공원) 조성계획 결정(변경)을 위하여 주민의견을 청취하고자 「도시공원 및 녹지등에 관한 법률」 제16조의2 규정에 의거 아래와 같이 입안에 대하여 열람공고 하오니 의견이 있으신 분은 열람기간 내 서면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2020년 02월 21일

김 해 시 장

1. 건 명 : 김해도시계획시설(여래공원) 조성계획 결정(변경)
2. 입안내용
 - 가. 공원조성계획결정(변경)조서
 - 1) 총괄표(변경)

구 분		면 적 (㎡)			비고
		기 정	변 경	변경후	
공원면적		521,595	-	521,595	
시설면적계		73,062	감)2,283	70,779	기정 시설률 14.00% 변경 시설률 13.57%
건축 규모	건축면적	2,405	감)846.03	1,558.97	기정 건폐율 0.46% 변경 건폐율 0.30%
	연 면 적	2,619	감)643.53	1,975.47	기정 용적률 0.50% 변경 용적률 0.38%

도면표시 번호	공원명	변 경 내 용	변 경 사 유
5-1	여래 공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공원시설면적 변경 ▷ 73,062㎡ → 70,779㎡ 감)2,283㎡ ■ 건축면적 변경 ▷ 2,405㎡ → 1,558.97㎡ 감)846.03㎡ ■ 연면적 변경 ▷ 2,619㎡ → 1,975.47㎡ 감)643.53㎡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공원 일몰제를 앞두고 미집행 공원시설 민원해소와 더불어, 여래공원 내 테마공원의 지형을 고려한 시설배치로 자연훼손 최소화 및 부지활용도를 높여 효과적인 체험공간 조성을 위하여 공원조성계획 결정(변경)코자 함.

2) 토지이용계획표(변경)

구분	부지면적(m ²)			건축규모(m ²)						비고
	기정	변경	변경후	건축면적			연면적			
				기정	변경	변경후	기정	변경	변경후	
조성계획면적	521,595	-	521,595	2,405	감)846.03	1,558.97	2,619	감)643.53	1,975.47	
공원시설	73,062	감)2,283	70,779	2,405	감)846.03	1,558.97	2,619	감)643.53	1,975.47	
도로 및 광장	25,468	감)2,769	22,699	-	-	-	-	-	-	
조경시설	2,957	감)344	2,613	-	-	-	-	-	-	
휴양시설	1,117	증)102	1,219	-	-	-	-	-	-	
유희시설	765	-	765	-	-	-	-	-	-	
운동시설	2,949	-	2,949	-	-	-	-	-	-	
교양시설	34,493	증)380	34,873	1,381	증)143.97	1,524.97	1,595	증)346.47	1,941.47	
편익시설	3,578	증)706	4,284	34	-	34	34	-	34	
도시농업 시설	1,735	감)358	1,377	990	감)990	-	990	감)990	-	
녹지	448,533	증)2,283	450,816	-	-	-	-	-	-	

나. 세부조성계획 변경조서

1) 도로 및 광장(변경)

구분	도면 번호	시설의 세분	위 치	부지면적 (m ²)	건축규모(m ²)		규모	비고
					건축면적	연면적		
기정		소계		25,468	-	-	-	
변경		소계		22,699	-	-	-	
기정		도로	-	17,760	-	-	-	
변경		도로	-	16,730	-	-	-	
기정		광장	-	7,708	-	-	-	
변경		광장	-	5,969	-	-	-	
기정	0-1	진입광장	진영읍 신용리 산36-2입	2,426	-	-	-	
기정	0-2	부진입광장	진영읍 본산리 산39입	201	-	-	-	
기정	0-3	프로그램광장	진영읍 여래리 2전	3,163	-	-	-	
변경	0-3	프로그램광장	진영읍 여래리 2전	2,195	-	-	-	면적변경
기정	0-4	테마공원 진입광장1	진영읍 여래리 11답	1,547	-	-	-	
변경	0-4	테마공원 진입광장1	진영읍 여래리 11답	1,147	-	-	-	면적변경
폐지	0-5	테마공원 진입광장2	진영읍 여래리 산5입	325	-	-	-	
폐지	0-6	포켓광장	진영읍 여래리 산5입	46	-	-	-	

2) 조경시설(변경)

구분	도면 번호	시설의 세분	위 치	부지면적 (m ²)	건축규모(m ²)		규모	비고
					건축면적	연면적		
기정	소계			2,957	-	-	-	
변경	소계			2,613	-	-	-	
기정	1-1	잔디밭	진영읍 신용리 471전	1,636	-	-	-	
기정	1-2	화단	진영읍 신용리 466전	170	-	-	-	
기정	1-3	장미정원1	진영읍 여래리 산5임	495	-	-	-	
변경	1-3	장미정원1	진영읍 여래리 산5임	807	-	-	-	면적변경, 위치이동
폐지	1-4	장미정원2	진영읍 여래리 산5임	656	-	-	-	

3) 휴양시설(변경)

구분	도면 번호	시설의 세분	위 치	부지면적 (m ²)	건축규모(m ²)		규모	비고
					건축면적	연면적		
기정	소계			1,117	-	-	-	
변경	소계			1,219	-	-	-	
기정	2-1	쉼터1	진영읍 신용리 468담	43	-	-	-	
기정	2-2	쉼터2	진영읍 신용리 산35임	329	-	-	-	
신설	2-3	쉼터3	진영읍 여래리 산5임	34	-	-	-	
신설	2-4	쉼터4	진영읍 여래리 산5임	68	-	-	-	
기정	2-6	쉼터6	진영읍 본산리 900임	256	-	-	-	
기정	2-7	쉼터7	진영읍 본산리 산41-3임	259	-	-	-	
기정	2-8	쉼터8	진영읍 신용리 산38-3임	83	-	-	-	
기정	2-9	쉼터9	진영읍 신용리 산39-1임	147	-	-	-	

4) 유희시설(변경없음)

구분	도면 번호	시설의 세분	위 치	부지면적 (m ²)	건축규모(m ²)		규모	비고
					건축면적	연면적		
기정	소계			765	-	-	-	
기정	3-1	어린이놀이터	진영읍 신용리 산36-3임	765	-	-	-	

5) 운동시설(변경없음)

구분	도면 번호	시설의 세분	위 치	부지면적 (㎡)	건축규모(㎡)		규모	비고
					건축면적	연면적		
기정	소계			2,949	-	-	-	
기정	4-2	체력단련시설2	진영읍 신용리 산36-1입	168	-	-	-	
기정	4-3	체력단련시설3	진영읍 본산리 890-3과	313	-	-	-	
기정	4-4	체력단련시설4	진영읍 본산리 산49입	144	-	-	-	
기정	4-5	체력단련시설5	진영읍 여래리 산12입	232	-	-	-	
기정	4-6	다목적운동장	진영읍 신용리 468답	1,930	-	-	-	
기정	4-9	배드민턴장	진영읍 본산리 1295-2구	162	-	-	-	

6) 교양시설(변경)

구분	도면 번호	시설의 세분	위 치	부지면적 (㎡)	건축규모(㎡)		규모	비고
					건축면적	연면적		
기정	소계			34,493	1,381	1,595	지상4층	
변경	소계			34,873	1,524.97	1,941.47	지상4층	
기정	5-1	감나무체험장	진영읍 신용리 산36-1입	2,554	-	-	-	
신설	5-2	장군차밭1	진영읍 여래리 산5입	770	-	-	-	
신설	5-3	장군차밭2	진영읍 여래리 산5입	876	-	-	-	
기정	5-7	6차산업관	진영읍 여래리 산5입	943	293	507	지상2층	
변경	5-7	6차산업관	진영읍 여래리 산5입	1,399	383.31	639.65	지상2층	면적변경, 위치이동
기정	5-8	스마트가든	진영읍 여래리 10답	2,240	980	980	지상1층	
변경	5-8	스마트가든	진영읍 여래리 10답	2,512	1,033.66	1,193.82	지상1층	면적변경, 위치이동
기정	5-9	농업위인터널	진영읍 여래리 산5입	479	108	108	지상1층	
변경	5-9	농업위인터널	진영읍 여래리 산5입	297	108	108	지상1층	면적변경
기정	5-10	산딸기농장1	진영읍 여래리 산5입	1,018	-	-	-	
변경	5-10	산딸기농장1	진영읍 여래리 산5입	667	-	-	-	면적변경, 위치이동
기정	5-11	산딸기농장2	진영읍 여래리 1전	991	-	-	-	
변경	5-11	산딸기농장2	진영읍 여래리 산5입	357	-	-	-	면적변경, 위치이동
기정	5-12	단감농장1	진영읍 여래리 산5입	1,590	-	-	-	
변경	5-12	단감농장1	진영읍 여래리 산5입	587	-	-	-	면적변경, 위치이동
기정	5-13	단감농장2	진영읍 여래리 산5입	1,678	-	-	-	
변경	5-13	단감농장2	진영읍 여래리 산5입	452	-	-	-	면적변경, 위치이동
신설	5-14	산딸기농장3	진영읍 여래리 산5입	253	-	-	-	
신설	5-15	단감농장3	진영읍 여래리 산5입	1,149	-	-	-	

7) 편의시설(변경)

구분	도면 번호	시설의 세분	위 치	부지면적 (㎡)	건축규모(㎡)		규모	비고
					건축면적	연면적		
기정	소계			3,578	34	34	지상2층	
변경	소계			4,284	34	34	지상2층	
기정	6-1	전망대1	진영읍 본산리 산49임	154	17	17	지상1층	
기정	6-2	전망대2	진영읍 본산리 산50임	154	17	17	지상1층	
기정	6-3	주차장	진영읍 신용리 466전	812	-	-	-	
변경	6-3	주차장	진영읍 신용리 470전	829	-	-	-	면적변경
기정	6-4	전망대3	진영읍 여래리 산5임	216	-	-	-	
변경	6-4	전망대3	진영읍 여래리 산5임	104	-	-	-	면적변경
기정	6-5	도로판매소	진영읍 여래리 8전	63	-	-	-	
기정	6-6	주차장A	진영읍 여래리 42-1답	454	-	-	-	
변경	6-6	주차장A	진영읍 여래리 42-1답	1,007	-	-	-	면적변경
기정	6-7	주차장B	진영읍 여래리 2전	1,725	-	-	-	
변경	6-7	주차장B	진영읍 여래리 4답	1,973	-	-	-	면적변경

8) 도시농업시설(변경)

구분	도면 번호	시설의 세분	위 치	부지면적 (㎡)	건축규모(㎡)		규모	비고
					건축면적	연면적		
기정	소계			1,735	990	990	지상1층	
변경	소계			1,377	-	-		
기정	7-1	비닐온실	진영읍 여래리 산5임	1,735	990	990	지상1층	
변경	7-1	비닐온실	진영읍 여래리 산5임	1,377	-	-		면적변경, 위치이동

9) 녹지(변경)

구분	도면 번호	시설의 세분	위 치	부지면적 (㎡)	건축규모(㎡)		규모	비고
					건축면적	연면적		
기정	소계			448,533	-	-	-	
변경	소계			450,816	-	-	-	
기정	-	녹지	전지역	448,533	-	-	-	
변경	-	녹지	전지역	450,816	-	-	-	면적변경

다. 도로조서 총괄표(변경)

구분	폭원	노선수(노선)		연장(m)		면적(m ²)		비고
		기정	변경	기정	변경	기정	변경	
합계		42	38	7,542	7,117	17,760	16,730	
세로	1.5	12	11	1,733	1,809	2,599	2,754	
	1.5~2	-	1	-	474	-	874	
	2	21	14	3,764	2,745	7,618	5,491	
	2~3	1	1	345	345	852	852	
	2~3.5	1	1	573	573	1,366	1,366	
	3	3	6	251	362	772	1,150	
	3~6	1	1	252	252	885	885	
소로	3.5	1	-	140	-	256	-	
	4.4	-	1	-	105	-	603	
	5	1	1	200	208	1,090	1,065	
	7	-	1	-	244	-	1,690	
	7~9	1	-	284	-	2,322	-	

라. 세부도로조서(변경)

구분	등급	류별	번호	폭원(m)	연장(m)	면적(m ²)	기능	기점	종점	비고 (도면표시 번호)
기정	합계					17,760	-	-	-	-
변경	합계					16,730	-	-	-	-
기정	세로		1	2	539	1,078	산책로	부진입광장	본산리 923-2대	세로1
기정	세로		2	2	172	343	산책로	산책로1	산책로1	세로2
기정	세로		3	2	186	372	산책로	테마공원진입광장2	주차장	세로3
변경	세로		3	2	121	241	산책로	다목적운동장	주차장	세로3
기정	소로		4	7~9	284	2,322	진입도로	농촌테마공원 남측경계	세로40	소로4
변경	소로		4	7	244	1,690	진입도로	남측경계	주차장A	소로4
폐지	세로		5	2	76	152	산책로	테마공원진입광장2	세로34	세로5
기정	세로		6	2	106	212	산책로	광장	세로7	세로6
기정	세로		7	2	215	430	산책로	세로10	세로38	세로7
변경	세로		7	2	175	350	산책로	세로10	점터4	세로7
기정	세로		8	2	348	696	산책로	세로38	세로17	세로8
변경	세로		8	1.5~2	474	874	산책로	전망대3	세로17	세로8
기정	세로		9	2	149	298	산책로	세로50	세로8	세로9
기정	세로		10	3~6	252	885	산책로	진입광장	신용리 717구	세로10

구분	등급	류별	번호	폭원 (m)	연장 (m)	면적 (m ²)	기능	기점	종점	비고 (도면표시 번호)
기정	세로		11	2~3	345	852	산책로	신용리 717구	진입광장	세로11
기정	세로		12	2~3.5	573	1,366	산책로	신용리 717구	세로20	세로11
기정	세로		13	2	277	555	산책로	북측경계	전망대3	세로13
변경	세로		13	2	279	558	산책로	북측경계	전망대3	세로13
기정	세로		14	2	287	580	산책로	세로13	체력단련시설2	세로14
기정	세로		15	2	14	28	산책로	쉽터7	본산리산41-3임	세로15
기정	세로		16	2	346	692	산책로	본산리890-2과	산책로17	세로16
기정	세로		17	2	356	711	산책로	체력단련시설2	전망대1	세로17
기정	세로		18	2	31	62	산책로	전망대1	체력단련시설4	세로18
기정	세로		19	2	89	177	산책로	체력단련시설4	전망대2	세로19
기정	세로		20	2	81	161	산책로	전망대2	본산리산50임	세로20
기정	세로		21	3	66	197	산책로	신용리38-6도	산책로24	세로21
기정	세로		22	3	88	265	산책로	산책로21	산책로23	세로22
기정	세로		23	1.5	137	205	산책로	산책로22	쉽터8	세로23
기정	세로		24	1.5	140	210	산책로	산책로25	쉽터8	세로24
기정	세로		25	1.5	490	735	산책로	산책로21	산책로27	세로25
기정	세로		26	1.5	21	31	산책로	신용리 산39-1임	산책로25	세로26
기정	세로		27	1.5	189	283	산책로	신용리 산41임	산책로28	세로27
기정	세로		28	1.5	135	202	산책로	쉽터8	체력단련시설5	세로28
기정	세로		29	1.5	340	510	산책로	체력단련시설5	여래리 산13임	세로29
기정	세로		30	1.5	45	67	산책로	여래리 산13임	산책로29	세로30
기정	소로		31	5	200	1,090	진입도로	테마공원진입광장1	소로4	소로31
변경	소로		31	5	208	1,065	진입도로	테마공원진입광장1	소로4	소로31
기정	세로		32	3	97	310	진입도로	테마공원진입광장1	전망대3	세로32
변경	세로		32	3	58	199	진입도로	테마공원진입광장1	소로31	세로32
폐지	세로		33	2	32	64	산책로	세로32	세로34	세로33
폐지	세로		34	2	193	413	산책로	전망대3	소로31	세로34
폐지	세로		35	1.5	28	43	산책로	세로37	세로34	세로35
기정	세로		36	1.5	78	117	산책로	세로7	세로5	세로36
변경	세로		36	3	94	320	산책로	소로31	세로44	세로36
폐지	세로		37	1.5	83	125	산책로	세로8	세로14	세로37
기정	세로		38	1.5	47	71	산책로	세로8	세로34	세로38
변경	세로		38	1.5	82	152	산책로	세로8	세로44	세로38
폐지	세로		39	2	25	50	산책로	세로5	소로31	세로39
폐지	세로		40	2	138	276	보행자도로	농촌테마공원 남측경계	농촌테마공원 북측경계	세로40
기정	소로		41	3.5	140	256	가감속차로	농촌테마공원 남측경계	농촌테마공원 서측경계	소로41
변경	소로		41	4.4	105	603	가감속차로	남측경계	서측경계	소로41
폐지	세로		42	2	104	268	스카이워크	테마공원진입광장1	전망대3	세로42
신설	세로		43	3	18	56	산책로	세로36	비닐온실	세로43
신설	세로		44	3	38	113	산책로	쉽터4	비닐온실	세로44
신설	세로		45	1.5	61	105	산책로	세로8	쉽터3	세로45
신설	세로		46	1.5	169	254	산책로	소로31	전망대3	세로46

3. 열람기간 : 공보게재 익일부터 14일간

4. 관계도서 열람 및 의견제출 장소 : 김해시청 도시계획과

5. 기타 자세한 사항은 김해시청 도시계획과(☎055-330-6924)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도로명주소 변경 의견수렴 공고

「도로명주소법」 제8조, 같은법 시행령 제7조의3 에 따라 도로명주소의 활용도와 편리성을 향상시키기 위하여 다음과 같이 도로명주소 변경(안)에 따른 의견을 수렴코자 하오니, 의견이 있는 분이나 단체는 전화 또는 서면으로 의견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0년 2월 20일

김 해 시 장

1. 도로명주소 변경 조서 및 현황도(안) : 아래참조
2. 의견제출자 범위 : 김해시민(주소 사용자)
3. 의견제출 기간 : 2020. 2. 20. ~ 3. 10.
4. 의견제출처 : 김해시청 토지정보과(새주소팀)
5. 의견제출 방법 : 전화(☎055-330-2481), 서면제출(김해시 김해대로 2401)
6. 도로명주소 변경 절차

도로구간 및 도로명 변경 신청	신청을 받은 날부터 ⇒ 10일 이내	주민 의견 수렴 공고 14일 이상	주민의견 수렴한 날부터 ⇒ 30일 이내	도로명주소 위원회 심의 도로명주소 위원회 개최	심의 마친날부터 ⇒ 10일 이내
주소사용자의 5분의1 신청					

공고 및 신청인 통보	공고한 날부터 ⇒ 30일 이내	서면 동의를 받은 경우	동의 얻은 날로부터 (동의 생략 포함) ⇒ 10일 이내	고시 및 신청인 통보
		주소사용자의 1/2 이상		변경사항 및 변경기준일
심의 결과 내용 및 절차		서면 동의를 못 받은 경우	동의 만료일부 ⇒ 10일 이내	공고 및 신청인 통보
		주소사용자의 1/2 이하		결과 통보

※ 기타 자세한 내용은 김해시청 토지정보과 (055-330-2481)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도로명주소 변경 조서 및 도면

번호	구분	도로명	도로 위계	도로구간		도로연장 (m)	도로 폭 (m)	기초간격 (m)	기초번호	중심선	관할 행정구역
				시작지점	끝지점						
당초	1	김해대로 2272번길	길	봉황동 46-2	화목동 1965	6,478	6	20	1→642		
변경	1	강동로	로	봉황동 46-2	전하동 160-9	1,936	8	20	1→192	도면 참조	칠산 서부 동
	2	화목로	로	화목동 1577-2	화목동 1918-3	3,658	7.6	20	1→366		
	3	강동터실길	길	강동 479	강동 232	699	2.6	20	1→70		
	4	강동마을길	길	강동 379	강동 423-31	544	2.8	20	1→56		

※ **변경사유** : 위치적 대표성을 가진 지역의 자연마을 명칭을 도로명에 부여하여, “강동로”, “화목로”, “강동터실길”, “강동마을길”이라 명명함.

“**화목동**” 어원 <김해지리지>에 보면, 동네 가운데 있는 우물가에 큰 백일홍 고목이 서 있었기 때문에 꽃나무 샘이라 부르고 “화목리”가 됨.

“**강동**” 어원 <경상도속찬지리지>에 등장한다. 강창포에 강창 “강가에 있는 창고”이 있었다. 물류를 배에 실어 나르는 곳이었으나 “죽도”로 창고를 옮겨 1947년 강동으로 개칭.

“**강동터실길**”, “**강동마을길**” 은 자연마을을 지칭하는 명칭.

변경 전



변경 후



○ 도로명주소 변경 조서 및 도면

번호	구분	도로명	도로 위계	도로구간		도로 연장 (m)	도로 폭 (m)	기초 간격 (m)	기초 번호	중심 선	관할 행정 구역
				시작지점	끝지점						
1	당초	서부로 1729번길	길	주촌면 선지리 422-1	주촌면 선지리 377-1	307	3	20	1→30	도면 참조	주촌 면
	변경	서선길	변경사유 : 위치적 대표성을 가진 자연마을 명칭인 “서선마을”의 “서선길”로 명명함.								
2	당초	서부로 1743번길	길	주촌면 선지리 539-1	주촌면 선지리 452-4	613	6	20	1→62	도면 참조	주촌 면
	변경	동선길	변경사유 : 위치적 대표성을 가진 자연마을 명칭인 “동선마을”의 “동선길”로 명명함.								

변경 전



변경 후

